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결정사안】

경남 양산지역에 거주하던 박○식(朴春植, 2다-1371) 등 19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8월경 예비검속되어 경남지구 CIC 소속 군인 및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1950년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7~8월경 경남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양산 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하여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 조사 결과,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희생자는 총 19명이다. 이번 조사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식(朴○植, 2다-1371), 김○도(金○道, 2다-1372) 박○수(朴○銖, 2다-1373), 김○준(金○俊, 2다-1376), 김○철(金○喆, 2다-3588), 강○문(姜○文, 2다-5761), 서○준(徐○俊, 2다-7505), 박○표(朴○杓, 2다-7506), 김○환(金○煥, 2다-7508), 유○줄(劉○茁, 2다-7510), 박○종(朴○鐘, 2다-7511), 박○희(朴○熙, 2다-7512), 박○옥(朴○鉉, 2다-7514), 유○달(劉○達, 2다-7519), 차○달(車○達, 2다-7522), 서○문(徐○汶, 2다-7523), 김○찬(金○贊, 2다-7526), 황○수(黃○壽, 2다-8227), 박○생(朴○生, 2다-10069)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는 2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 경남지구 CIC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5.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6.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2다-1371호 등 19건,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박○일 등 19명

【결정일】 2023. 6. 21.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 목 차 -

I. 조사 개요	228
1. 사건 개요	228
가. 신청 접수와 처리	228
나. 신청 내용	230
2. 국가기관의 기존 조사	230
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	230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230
4. 규명 과제	231
5. 조사 방법	231
가. 기록조사	231
나. 진술조사	234
다. 현장조사	235
II. 조사 결과	236
1. 사건 배경	236
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지역의 상황	236
나.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활동	237
2. 사건 경위	240
가. 예비검속과 구금	240
나. 희생 경위	242
다. 구금 및 희생 장소	270
3. 사건조사 결과	273
가. 희생자 수와 신원	273
나. 희생자의 특징	279
다. 가해 주체	279
라. 가해의 위법성 여부	282
마. 유족의 피해	284
III. 결론과 권고사항	286
1. 결론	286
2. 권고사항	287

- 표 목차 -

〈표 1〉 진실규명신청 현황	228
〈표 2〉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274
〈표 3〉 희생자 거주지(면)별 분포	279
〈표 4〉 희생자 성별 분포	279
〈표 5〉 희생자 연령별 분포	279
〈표 6〉 희생자 직업별 분포	279

- 그림 목차 -

〈그림 1〉 1949년 「형사사건부」	232
〈그림 2〉 현 양산시 지도	236
〈그림 3〉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구금 장소와 희생 장소	270

- 붙임 목차 -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288
〈붙임(표) 2〉 피해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296
〈붙임(표)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피해 관련 신청인 및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307
〈붙임(표) 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311
〈붙임(표) 5〉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찰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314
〈붙임(그림) 6〉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구금 장소와 희생 장소	315

I. 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가. 신청 접수와 처리

신청인 박○일(2다-1371) 등 19명은 2021년 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양산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된 후 희생 또는 실종되었으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총 19건, 신청인 19명, 진실규명대상자 19명).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0차(2021. 8. 4.), 제16차(2021. 10. 28.), 제17차(2021. 11. 09.), 제24차(2022. 2. 15.), 제39차(2022. 8. 30.), 제41차(2022. 9. 27.), 제45차(2022. 11. 21.), 제47차(2023. 1. 10.) 제1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제14차(2021. 8. 12.), 제17차(2021. 11. 9.), 제18차(2021. 11. 23.), 제27차(2022. 2. 22.), 제40차(2022. 8. 30.), 제41차(2022. 10. 4.), 제46차(2022. 11. 29.), 제50차(2023. 1. 17.) 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¹⁾’의 진실규명신청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실규명신청 현황

연번	사건 번호 (2다-)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일자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장소	
양산면												
1	1371	2021. 2. 1.	박○일 (朴○一)	박○식 (朴○植)	남	아버지	1926. 7. 11.	1950. 여름	1968. 9. 13.	양산면 산막동	동면 사배고개 등지	
2	1372	2021. 2. 1.	김○수 (金○守)	김○도 (金○道)	남	아버지	1924. 2. 14.	1950. 여름	1955. 7. 10. 생사불명 기간만료	양산면 산막동	”	
3	1373	2021. 2. 1.	박○홍 (朴○洪)	박○수 (朴○銖)	남	아버지	1914. 2. 6.	1950. 여름	1968. 2. 27.	양산면 호계동	”	

1) 2022년 12월 9일까지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청된 경남 양산지역 사건은 총 79건이며, 이중 조사개시 된 사건은 총 76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 된 76건 중 관련 기록, 진술 등이 확보된 19건을 1차 진실규명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1)’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1)’은 ‘이 사건’이라 한다.

연 번	사건 번호 (2자)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한자명)	성 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일자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장소	
4	1376	2021. 2. 1.	김○수 (金○洙)	김○준 (金○俊)	남	아버지	1924. 11. 11.	1950. 8.	1955. 7. 10. 생사불명 기간만료	양산면 호계동	"	
5	7511	2021. 8. 13.	박○구 (朴○久)	박○종 (朴○鐘)	남	형	1931. 9. 28.	1950. 8. 17.	1955. 7. 생사불명 기간만료	양산면 명곡동	"	
6	7512	2021. 8. 13.	박○권 (朴○權)	박○희 (朴○熙)	남	형	1930. 12. 11.	1950. 8. 17.	1955. 생사불명 기간만료	양산면 명곡동	"	
7	7514	2021. 8. 13.	박○종 (朴○鍾)	박○옥 (朴○鈸)	남	삼촌	1928. 1. 22.	1950. 8. 17.	1955. 7. 생사불명 기간만료	양산면 명곡동	"	
8	8227	2021. 9. 10.	황○자 (黃○子)	황○수 (黃○壽)	남	아버지	1915. 8. 30.	1950. 8. 중순	1954. 7. 5.	양산면 남부동	"	
9	10069	2021. 12. 8.	김○하 (金○河)	박○생 (朴○生)	남	외할아버지	1908. 9. 22.	1950. 7.	1955. 7. 10. 생사불명 기간만료	양산면 남부동	"	

동면

10	3588	2021. 5. 6.	김○삼 (金○三)	김○철 (金○喆)	남	형	1929. 2. 2.	1950. 6~8.	1955. 7. 5. 생사불명 기간만료	동면 석산리	동면 사배 고개 등지	
11	7506	2021. 8. 13.	박○필 (朴○畢)	박○표 (朴○杓)	남	아버지	1922. 12. 13.	1950. 8. 중순	1955. 10. 5.	동면 석산리	"	
12	7508	2021. 8. 13.	김○구 (金○九)	김○환 (金○煥)	남	아버지	1927. 5. 27.	1950. 8. 중순	1955. 7. 5. 생사불명 기간만료	동면 석산리	"	
13	7510	2021. 8. 13.	유○상 (劉○相)	유○줄 (劉○茁)	남	아버지	1909. 1. 21.	1950. 8. 중순	1967. 7. 2.	동면 석산리	"	
14	7519	2021. 8. 13.	유○자 (劉○子)	유○달 (劉○達)	남	아버지	1919. 3. 19.	1950. 8. 중순	1955. 7. 5. 생사불명 기간만료	동면 석산리	"	
15	7526	2021. 8. 13.	김○화 (金○華)	김○찬 (金○贊)	남	아버지	1916. 10. 20.	1950. 8. 중순	1955. 7. 5. 생사불명 기간만료	동면 석산리	"	

상북면

16	5761	2021. 6. 30.	강○근 (姜○根)	강○문 (姜○文)	남	아버지	1924. 1. 4.	1950. 8. 중순	1953. 3. 23.	상북면 석계리	동면 사배 고개 등지	
17	7505	2021. 8. 13.	서○연 (徐○連)	서○준 (徐○俊)	남	아버지	1918. 8. 15.	1950. 8. 중순	1968. 2. 26. 실종선고 확정	상북면 좌삼리	"	
18	7522	2021. 8. 13.	차○순 (車○順)	차○달 (車○達)	남	아버지	1926. 1. 31.	1950. 8. 중순	-	상북면 소토리	"	
19	7523	2021. 8. 13.	서○순 (徐○順)	서○문 (徐○汶)	남	아버지	1917. 11. 15.	1950. 8. 중순	1966. 1. 13.	상북면 좌삼리	"	

나. 신청 내용

신청인 박○일 등 19명은 경남 양산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등이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 및 산하 지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되었으며,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양산시 동면 사배고개, 남락고개 등지로 끌려가 집단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 박○일 등 19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2. 국가기관의 기존 조사

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²⁾에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2009. 9. 8.)으로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이후 경남 양산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등으로 예비 검속되어 희생된 사람 중 진실규명 된 사람은 총 97명(미신청 희생자 36명)이다.³⁾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경남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은 양산경찰서 및 지서 경찰과 경남지구 CIC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한 이후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1950년 8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재,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위령 사업 지원, 역사 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일 출범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으로 같은 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와 구분하여 '1기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칭한다.

3)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67~816쪽.

4. 규명 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제 여부, 발생 배경 및 예비검속과 구금 과정, 진실 규명대상자들의 희생 경위, 희생자의 수와 신원, 가해 주체, 가해의 위법성 여부, 유족의 피해 사실 등을 밝히고자 한다.

5. 조사 방법

가. 기록조사

1)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하여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조사보고서 및 사건기록을 검토·활용하였다. 검토한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진실화해위원회, 「경남지역 적대세력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2) 기초사실조사(1기 진실화해위원회, 2009)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과 2009년에 한국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각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발생 여부, 사건 개요,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피해 유형 등에 대해 사건 관련자, 목격자 등의 증언을 채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을 파악·수집하는 것이었다.⁴⁾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조사사업의 결과로 『기초사실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양산시는 2009년 양산시 관내 5개 읍면⁵⁾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실을 조사하였다. 국민보도연맹원 등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되어 희생되었다는 증언이 있는 희생자는 총 167명이었다. 이 중,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와 7명이 일치한다. 이 조사에서는 『기초사실조사표』를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4)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Ⅰ』, 2010, 122~126쪽.

5) 동면,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등 5개 읍면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동(洞)으로 개편된 옛 양산면과 웅상면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경찰 기록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경우회, 경남지방경찰청이 생산한 경찰 자료를 통해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당시의 경남 양산 지역의 상황과 군경의 활동 및 토벌 활동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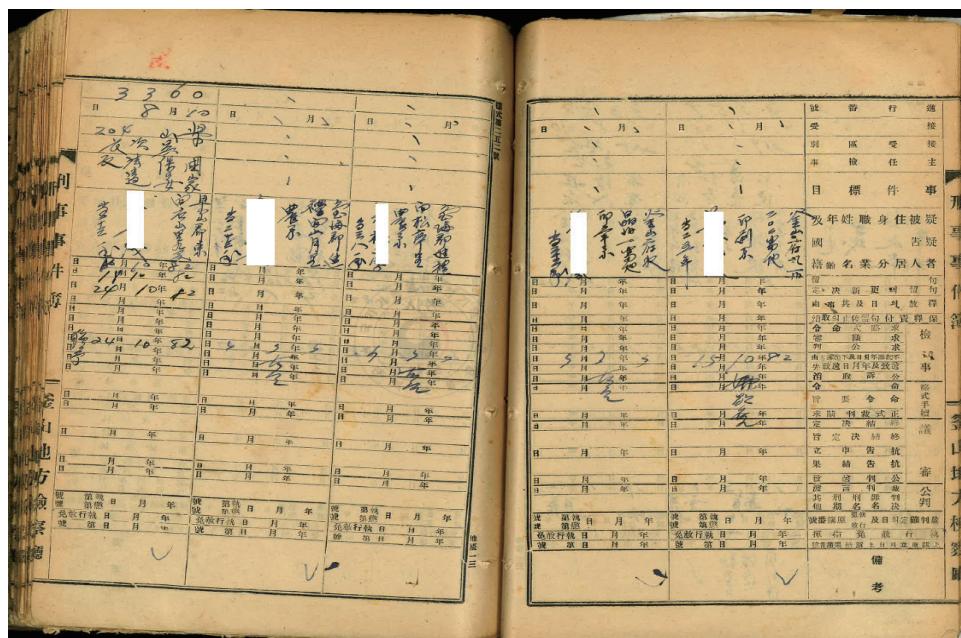
- 경남지방경찰청 경우회, 『경남 경우 45년사』, 1992.
- 경남지방경찰청, 『경남 경찰의 일』, 1996.

4)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48년부터 1951년까지의 부산지방경찰청 등 생산 형사사건부, 판결문 등의 행정 기록을 입수하여 확인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3명에 대해 1건의 재소자 신분장(판결문 포함)과 2건의 형사사건부를 활용하였다.⁶⁾

진실화해위원회는 입수한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형사사건부 중 특히 「국가보안법」, 미군정 시기 「포고령 2호」 등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고 해당 기록을 통해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죄명, 처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실규명대상자들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배경을 확인하는 데 참고되었다.

〈그림 1〉 1949년 『형사사건부』



6)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의 바로검색 서비스로 1건의 재소자 신분장(판결문 포함)을 입수하였다. 2건의 형사사건부는 국가기록원에 요청하여 회신한 기록이다. 나라기록관, 「진실규명 신청사건 관련 형사사건부 기록 제공 요청 회신」, (나라기록관-17020, 2022. 11. 3.)

5) 제적등본

진실규명대상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어 진실규명대상자 가족 대부분은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적등본을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시기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민법」 제27조제1항⁷⁾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 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판례를 준용하여 희생 추정 시기에서 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을 경우, 해당 선고를 희생 여부 및 희생 시기 판단 근거로 활용하였다.

6) 기타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대공신원기록편람 (치안본부, 1984)』⁸⁾, 『행방불명자 명부(내무부 치안국, 1968)』⁹⁾ 등을 검토했으며 특히 연행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생존 가능성 및 이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6·25 당시 월북자 명단(대전 국가기록원, 1950, 1952)』, 『월북자명단(공보처 통계국, 1951)』, 『6·25사변 피살자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를 검토했다. 이 기록에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와 일치하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아래 기록을 참고하였다.

- 『부산일보』, 『민주중보』, 『국제신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항도일보』 등
-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1952.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10년사』, 1958.
- 대검찰청 수사국, 『죄악사건 실록』 1~11권, 1965~1974.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I, II』, 1972.
-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1978.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 양산시지편찬위원회, 『양산시지』, 2004.
- 노영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한 자료 실태와 연구현황」, 『역사와현실』 54, 한국역사 연구회, 2004.

7) 「민법」(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8) 『대공신원기록편람』에는 본적지별로 간첩, 귀순자, 납북귀환자, 납북미귀환자, 정보 사범 등이 등재돼 있다.

9) 『행방불명자명부』는 1960년대 후반까지 행방불명된 인원 2,232명에 대한 죄명, 형(形)명, 출소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5.
- 경찰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007.
- 전갑생,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 경남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 김성우·김용현, 『한국전쟁사』, 진영사, 2008.
-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 상북면지편찬위원회, 『상북면지』, 2009.
- 임영태, 『한국에서의 학살』, 통일뉴스, 2017.

나. 진술조사

1) 신청인 진술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월 12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박훈일(2다-1371) 등 신청인 19명에 대해 신청인 진술조사하였다.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은 <붙임(표) 1>과 같다.

2) 피해 관련 참고인 진술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김태진 등 참고인에 대해 진술 조사하였다.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은 <붙임(표) 2>와 같다.

또한 진실규명대상자의 연행, 구금 및 희생 경위와 관련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과 참고인의 주요 진술 내용을 <붙임(표) 3>으로, 국민보도연맹 및 한국전쟁 발발 전후 상황에 대한 참고인의 주요 진술 내용을 <붙임(표) 4>로 정리하였다.

3) 군경 관련 참고인 진술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이 사건 당시 군경의 가해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군경 관련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경과하여 군경 관련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남 양산지역 군경 관련 참고인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군경 관련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붙임(표) 5>과 같다.

다. 현장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기초사실조사표』 등을 검토하여 당시 구금 장소였던 양산경찰서, 목화창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주요 집단 희생 장소인 양산군 동면 사배고개, 남락고개에 대해 현장조사하였다.

주요 구금 장소 및 희생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구금 장소 : 1) 양산경찰서(양산시 북부동 331-2. 현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2) 목화창고(양산시 북부동 318-3. 현 세종빌딩)
- 희생 장소 : 1) 사배고개(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56 일대),
2) 남락고개(양산시 동면 여락리 304-1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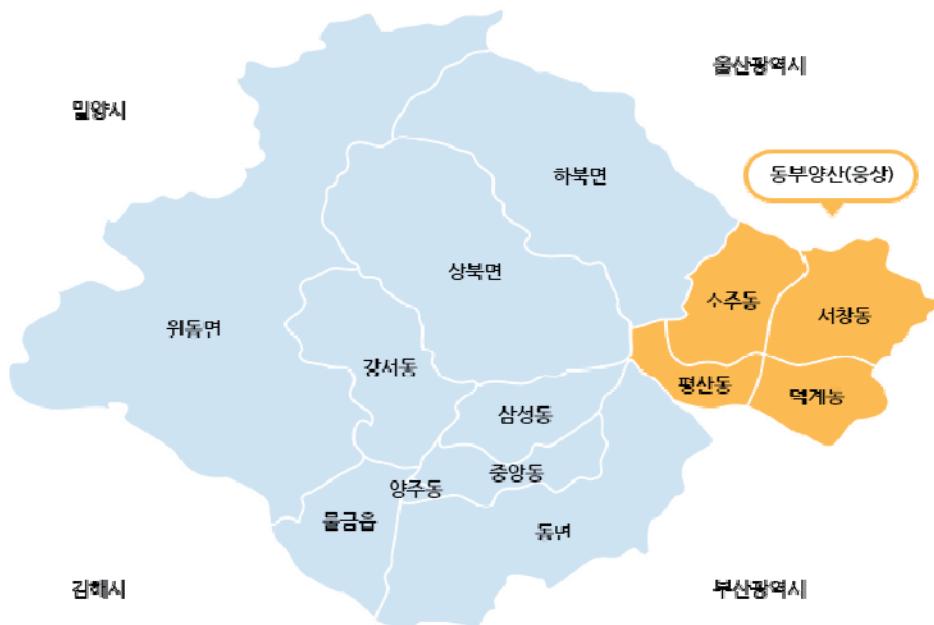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사건 배경

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지역의 상황

양산시는 경상남도 동부에 위치하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 밀양시, 김해시와 접하고 있다. 현재 양산시에는 물금읍과 4개 면, 8개 동¹⁰⁾이 있으며, 그 중 원동면에는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신불산이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군은 양산면·동면·물금면¹¹⁾·원동면·상북면·하북면·옹상면 7개 면(面) 58개 동(洞)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2〉 현 양산시 지도



1945년 해방 이후, 양산의 항일운동가들과 청년들은 1945년 8월 18일 건국준비위원회 양산지부를 결성했다. 건국준비위원회 양산지부는 행정, 치안,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 일제로부터 행정 업무를 인수하기 시작했다.¹²⁾

10) 4개 면은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이고, 8개 동은 강서동, 양주동, 삼성동, 중앙동,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이다. 1996년에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물금면이 물금읍으로 승격되었고, 양산읍은 3개동(중앙·삼성·강서)으로 분동되었다. 양주동은 2010. 2. 1. 중앙동에서 분동되었다. 1950년 당시 물금읍은 물금면이었고, 3개동(중앙·삼성·강서)은 양산면이었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7쪽, 266쪽, 566쪽.

11) 1807년에서 1936년까지는 양산군 상서면(上西面)이었고, 1936년부터 물금면이 되었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388쪽.

12) 양산시지편찬위원회, 『양산시지 (上)』, 2004, 483~484쪽.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사건은 경북과 경남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양산 지역에서도 10월 8일 대규모 군중 투쟁이 발생하였다. 10월 사건으로 좌익계 검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자, 좌익세력은 신불산, 천성산, 영축산, 토곡산, 금정산, 대운산을 거점으로 야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남로당 빨치산들이 각 면 단위 지역유지들을 살해하고 관공서를 기습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육군 제23연대 연대장 김○○(金○○)¹³⁾은 당시 경남지역의 빨치산 출몰이 심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작전지구로 정하여 1949년 초부터 토벌을 실시하였다.¹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 빠르게 남하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양산은 전국에서 후퇴해온 피난민과 군인들을 전 읍면에 배치해 숙식을 제공해야 했다. 이후 양산지역은 유엔군과 군경의 반격 기지로 기능하였다.¹⁵⁾

정부는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표하였다. 이어 1950년 7월 22일 대통령령(긴급 명령 제7호)으로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발표하였다. 만 14세 이상의 국민이 마을 자위대를 조직하여 공산 세력을 방어하고, 각자 마을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양산의 각 마을에도 전투경찰대가 조직되고 한 사람의 책임 경찰관 아래 7~8명의 대원이 조직되었다.¹⁶⁾ 경남 양산은 한국전쟁 발발 전에는 좌우의 간 대립 및 빨치산 토벌로,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피난민 유입 및 공산 세력 방어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나.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활동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상 전향을 유도하거나 좌익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결성한 반공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공화국 정권을 반대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배척한다는 내용을 주된 강령으로 삼아 1949년 6월 5일 서울중앙본부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결성되었다.¹⁷⁾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아들인다.”¹⁸⁾는 목적을 표방하고 결성되었다. 결성의 대외적인 명목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좌익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에서 조직의 이름도 ‘보호하여 지도한다’라는 뜻의 보도(保導)연맹이라고 하였다.¹⁹⁾ 1949년 6월 5일 서울시공관(市公館)에서 ‘국민보도연맹중앙본부선포대

13) 김○○(金宗元, 1921. 7. 8.生)은 제23연대장(1949. 11. 18.~1950. 4. 16., 1950. 7. 7.~1950. 8. 15.), 육군헌병사령부부사령관(1950. 8. 16.~1950. 8. 28.), 경남지구계엄사령관 대행관(1950. 8. 29.~1950. 9. 15.) 등으로 재직하였다. 육군본부,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김종*)(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18906, 2022. 11. 25.)

14)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48쪽.

15)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53쪽.

16)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54쪽.

17)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321쪽;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경상남도사』 제5권, 2020, 187~188쪽.

18) 『동아일보』, 1949. 4. 23.

19) 경남대학교박물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해매장지 현황조사용역 보고』, 2012, 9쪽.

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의 창설이 선포되었다.²⁰⁾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9월 20일부터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였는데 지방지부는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 검경 당국은 1949년 10월 25일부터 1949년 11월 30일까지 남로당원 자수 주간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자수·전향 작업을 진행하였다.²¹⁾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은 1949년 11월 20일 부산 남일국민학교 강당에서 '결성선포대회'를 개최하였고²²⁾, 이후 경상남도 산하 각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가 결성되었다.²³⁾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일자 및 조직 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²⁴⁾ 다만,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토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경남 양산지역의 국민보도연맹 결성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49년 6월경 양산경찰서장과 군내 유지인 최○○ 등이 군내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을 모아놓고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권유하는 연설을 하고 다녔다. 연설 내용은 "모든 주민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외부 여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10리 밖을 나갈 수가 없다."이었다.²⁵⁾

1949년 말경에는 조직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경찰이 없는 지역은 경찰서 사찰 주임이 이사장직을 맡고 간사장은 전향자 중 사상성이 온건한 자를 임명하였다고 한다.²⁶⁾

이러한 점은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은 "양산경찰서장과 양산지방 유지인 최○○가 동면 삼산국민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연설하면서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권유했다. 면사무소에 국민보도연맹을 담당하는 직원이 다니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을 가입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²⁷⁾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정○○은 "유산리 구장이던 박○○가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국민보도연맹 가입 도장을 찍으라고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²⁸⁾

국민보도연맹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좌익전향자'였다.²⁹⁾ 하지만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좌익 전력자의 친인척, 생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게 식량 등의 물품을 제공했던 사람,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이 어떠한 단체인지도 모르고 주변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가입한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20)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343쪽.

21)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94쪽.

22) 『자유민보』, 1949. 11. 20.

23)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94쪽.

24)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94쪽.

25) 『항도일보』, 1990. 1. 15;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56~263쪽.

26)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56~263쪽.

2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8. 13.)

2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5. 11.)

29) 『동아일보』, 1949. 4. 23; 『조선일보』, 1949. 11. 10;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95쪽.

30)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97쪽.

이러한 점은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차○애는 좌익활동을 하던 큰오빠 차○○ 때문에 동생 차○○과 신청인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고 하였다.³¹⁾ 신청인 황○자는 “아버지(황○수)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할 때 분노를 표시하였고, 공무원이 공출할 때 부정행위 하는 것을 보고 신문사에 투고하는 등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좌익으로 찍혔고, 그 경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라고 진술하였다.³²⁾ 신청인 유○자는 “아버지(유○달)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는데 그 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³³⁾ 신청인 김○수는 “(아버지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군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³⁴⁾ 신청인 박○권은 “형(박○희)이 마을 청년들과 만세삼창을 한 일로 도장을 찍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³⁵⁾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였다.³⁶⁾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장○○은 자신의 아버지 장○○가 국민보도연맹 간부(직책 미상)였고, 당시 양산경찰서 옆에 있는 목화창고에서 사무를 보며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교육했다고 진술하였다.³⁷⁾

국민보도연맹원들은 부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신청인 김○진은 도로 공사 등의 부역에 동면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자주 동원되었다고 진술하였다.³⁸⁾ 참고인 김○○는 “한국전쟁 발발 전 (물금면) 석산리 길가에서 아침 일찍 마을 청년들이 ‘빛나는 보도연맹~’이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⁹⁾

이상 종합하면, 한국전쟁 발발 이전 경남 양산지역 주민들은 좌익활동에 관여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 또한,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중에는 좌익활동과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의 지침에 따라 사상개조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 차○애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오빠 차○록과 동생 차○인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하였다.(다-9560) 차○애는 결혼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가 동생 차○인이 예비검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집에 찾아왔다가 물금지서로 연행되었다. 그제야 자신이 양산군 국민보도연맹 물금지부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차○애 진술조사(2007. 8. 23.)

32) 신청인 황○자 진술조사(2022. 4. 6.)

33) 유○자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후 마을(윌리마을)에 빨치산들이 총을 들고 내려와 밥을 달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신청인 유○자 진술조사(2022. 7. 14.)

34) 신청인 김○수 진술조사(2022. 7. 25.)

35) 신청인 박○권 진술조사(2022. 4. 4.)

36)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356쪽.

3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장○○ 진술조사 (2008. 12. 10.)

3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사(2008. 8. 1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진 진술조사(2008. 8. 13.)

39)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9. 29.)

2. 사건의 경위

가. 예비검속과 구금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查 제 1799호)이라는 제목의 비상 통첩을 전국 도 경찰국에 경찰 무선전보로 보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이다. 인원수용 관계를 고려하여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 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 연령, 주소를 명기하여 보고 할 것’을 아울러 지시하였다.⁴⁰⁾

이어 치안국은 1950년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하였다.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하여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것이다. 7월 11일에는 치안국장 명의로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 하여 전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⁴¹⁾

치안국의 통첩에 따라 7월 14일 경남 경찰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불순분자 일제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불순분자를 일제히 검거하도록 지시하였다. 7월 15일에는 「불순분자 처리의 건」을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①(대상자 누락) 구속할 것 ② 훈련을 실시하는 등 거처를 명백히 파악, 엄중 감시하고 소집에 불참하는 자는 계속 검거할 것, ③ 현병대에서 신병 인계를 요구할 시 인도할 것 등이었다. 7월 24일 경남 경찰국은 ‘구속 중의 불순분자 처리 상 긴급 필요’하므로 구속 중인 불순분자(맹원, 비맹원 전원)의 명부를 25일 오후 5시까지 특사 편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관할 경찰서에 하달하였다.⁴²⁾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중순에서 말까지 경찰의 소집 통보를 받고 각 면 단위 지서 또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거나 자택 등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관할지서로 출두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양산경찰서와 목화창고로 이송되었다.

신청인 유○자는 “아버지(유○달)가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어머니가 수소문하여 아버지가 옛 양산군청 옆에 있는 목화창고에 갇힌 걸 알았다고 한다. 그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밥을 지어 목화창고에 보름 정도 가져다주었는데 음력 1950년 6월 23일(양력 1950년 8월 6일)에 목화창고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아버지는 안 보였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⁴³⁾

40)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99쪽;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9, 816~819쪽.

41)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1950. 8. 6.);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168, 1950. 8. 7.). 치안국장이 하달한 통첩 원문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위 보고에서 “‘同件에 관하여는 據 6월 25일 치안국장 통첩(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통첩(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통첩(불순분자 구속 처리의 건), 7월 11일 치안국장 통첩(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고”라고 되어 있어 내무부 치안국 및 치안국장 명의로 통첩이 하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391~392쪽.

42)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99~800쪽.

43) 신청인 유○자 진술조사(2022. 7. 14.)

또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홍○줄은 “나는 1950년 음력 6월 12일생(양력 7월 26일)인데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잡혀가셨고, 내가 태어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⁴⁾

양산 각 읍면 국민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8월 초순부터 관할 지서 단위로 소집되었다가 양산경찰서 유치장, 양산경찰서 인근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26일 이전에 예비검속된 사례도 확인된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은 활동 정도에 따라 A·B·C(혹은 갑·을·병)급으로 분류되었고 A급(혹은 갑)은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B·C급(혹은 을·병)은 목화창고에 나뉘어 구금되었다.⁴⁵⁾

당시 동산국민학교에 근무하던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는 “예비검속하기 전, 학교에 있을 때 경찰들이 와서 국민보도연맹원을 활동 정도에 따라 갑·을·병으로 분류 심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⁶⁾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경찰서, 양산군청, 목화창고는 각 100m 내의 거리에 있었으며,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자 인근 목화창고에 예비검속된 사람들과 국민보도연맹원을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⁴⁷⁾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동은 “(아버지는) 처음에는 상복지서로 출두했는데, 어느 날 양산경찰서로 이송되었고, 후에 양산경찰서 부근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목화창고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 어진 약 30~40평 정도 되는 나무창고이다. 양산경찰서와 목화창고는 약 50m 정도 거리이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⁸⁾ 또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안○원은 “죄가 많은 사람은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죄가 경미한 사람들은 목화창고에 있었다. 양산경찰서 유치장이 좁으니까 나누어서 가두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⁹⁾

일부 가족들은 목화창고에 찾아가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들과 면회하고 사식을 넣어주기도 했다.⁵⁰⁾

참고인 서○○은 “어머니가 작은아버지(서○준)가 목화창고에 갇혀있으니 밥을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도시락을 가지고 목화창고에 가니 앞에 문지기가 두 명이 있었다. 문지기가 왜 왔냐고 물어 ‘작은아버지 밥을 가져다주려고 왔다’라고 하였고, 작은아버지 이름을 말하니 문지기가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이름을 불렀고 작은아버지가 밥을 받으러 나오려고 하니 문지기가 못 나오게 하였다. 자기한테 밥을 주고 가라고 하여 문지기에게 밥을 주고 돌아왔다. 다음날 다 먹은 도시

4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홍○줄 진술조사(2008. 8. 13.)

45)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800~801쪽.

46)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사(2009. 5. 12.)

47)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한 번에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인원은 약 200~300명으로 추정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장○화 진술조사(2008. 6.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사(2008. 6. 12.);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9. 27.)

4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동 진술조사(2008. 4. 29.)

4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안○원 진술조사(2008. 8. 12.)

50) 신청인 박○홍 진술조사(2022. 1. 13.); 참고인 안○○ 진술조사(2022. 9. 29.); 신청인 박○구 진술조사(2022. 4. 4.); 신청인 김○하 진술조사(2022. 5. 19.); 신청인 박○필 진술조사(2022. 7. 1.); 신청인 유○상 진술조사(2022. 5. 19.)

락을 집으로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다.⁵¹⁾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면 경남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치안국의 명령을 받은 경찰에 의해 1950년 7월~8월경 예비검속되어, 각 면의 지서를 거쳐 양산경찰서, 목화창고 등에 구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희생 경위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8월경 양산경찰서에 의해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양산경찰서, 목화창고 등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 초에서 8월 말 사이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지에서 희생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의 가족들은 진실규명대상자가 연행된 날, 지서 또는 경찰서로 출두한 날 또는 목화창고에서 사라진 날을 기준으로 제삿날을 정하였다.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같은 마을 사람이라도 제삿날이 다른 경우가 있다.⁵²⁾

참고인 김○○은 “목화창고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없어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몇 명씩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석산리 국민보도연맹원들 제삿날도 조금씩 다르다. 창고 안에 있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나눠서 총살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사람들을 싣고 가서 총살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⁵³⁾

희생 장소에서 대한청년단 등을 시켜 미리 구덩이를 파게 하거나 끌려간 국민보도연맹원이 직접 구덩이를 파기도 했다.⁵⁴⁾ 양산 경찰은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1950년 8월 경 약 2주에 걸쳐 여러 차례 군용 트럭(GMC)에 실어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지에서 총살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은 당시 부산 팔송고개에서 살아 돌아온 전○○과 양산경찰서 통신계에 근무했던 경찰 양○○에게 들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보도연맹원 다섯 명 혹은 세 명씩 손을 묶어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한다. 당시 사망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경찰과 전투대원들이 입산을 금지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으러 갈 수도 없었다.”⁵⁵⁾

참고인 김○○ 또한 “희생지(사배마을, 남락마을, 녹동마을) 인근 주민들이 고개에서 총소리가 많이 나 확인하러 가니 경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다가오면 쏜다고 위협을 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⁵⁶⁾ 이와 같은 경찰의 희생 현장 통제로,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51) 참고인 서○○ 진술조사(2022. 10. 1.)

52) 신청인 유○○자 진술조사(2022. 7. 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홍○○줄 진술조사(2008. 8. 13.) 등.

53)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9. 27.)

54)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802쪽.

5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사(2009. 5. 28.)

56)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9. 27.)

유골을 발굴하여 유골 약 700구를 수습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 시체를 알아볼 수도, 신원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⁵⁷⁾ 양산경찰서에서 화장용 기름을 제공해주어 유골을 화장하였고, 유해를 관 다섯 개에 나누어 춘추원에 매장한 후 비석을 세워 관리하였으나 이때 조성된 합동묘 봉분과 비석은 5·16군사쿠데타 이후 훼손되었다.⁵⁸⁾

1) 양산면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군은 양산면⁵⁹⁾·동면·물금면·원동면·상북면·하북면·옹상면의 7개 면 5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8년 양산면은 다방동, 남부동, 중부동, 북부동, 신기동, 북정동, 산막동, 호계동, 명곡동으로 이루어졌다.⁶⁰⁾ 양산면 북부동에는 이 사건의 주요 구금 장소인 양산 경찰서, 목화창고가 있었다.

양산면에서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는 박○식(2다-1371), 김○도(2다-1372), 박○수(2다-1373), 김○준(2다-1376), 박○종(2다-7511), 박○희(2다-7512), 박○옥(2다-7514), 황○수(2다-8227), 박○생(2다-10069)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과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진실규명대상자의 족보 및 제적등본, 『기초사실조사표』, 지역 향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가) 진실규명대상자 박○식(2다-1371, 신청인 박○일)

진실규명대상자 박○식(朴○植, 1926生, 기타⁶¹⁾)은 양산군 양산면 산막동 영동마을에 거주하던 중 양산경찰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일(1949生, 아들⁶²⁾)에 따르면, 1950년경 동네에 국민보도연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박○식이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피신해 있었다. 모내기 철이 되어 일손이 필요해지자 박○식이 집으로 돌아왔다. 박○식이 아침에 일하고 도량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경찰이 박○식을 연행했다. 박○식이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하여 박○○(박○식의 처)이 신청인을 업고 목화창고에 면회하러 갔다. 박○식은 박○○에게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 자식을 잘 키워라.”라고 하였다. 박○식이 목화창고에 갇혀있을 때 지인(성명불상)에게 “쌀 한 가마니 돈만 있으면 내가 나갈 수 있다. 내 부모님에게 말을

57) 『향도일보』 1990. 1. 15.

58)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09쪽;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8. 8.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 전화조사 약식조서(2009. 7. 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양○○ 진술조서(2009. 5. 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배○갑 진술조서(2008. 9. 11.)

59) 1918년 읍내면이 양산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법정동은 다방동, 남부동, 중부동, 북부동, 신기동, 명곡동, 북정동, 산막동, 호계동이었다. 양산면은 1979년 양산읍으로 승격되었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66~267쪽.

60)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66쪽.

61) 신청인과 참고인은 박○식이 양산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산국민학교에 재직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양산초등학교, 「교원 인사 기록 조회 의뢰(박○○)」(양산초등학교-12267, 2022. 11. 7.)

62) 박○일은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의 아들이다. 이하 진실규명대상자와 신청인, 참고인의 관계는 진실규명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전해달라”라고 하였다. 지인이 이를 박○○(박○식의 아버지)에게 전달하였으나 박순학이 그런 돈이 어딨냐며 거절하였다. 이후 박○식의 가족들은 박○식이 사배고개로 끌려가 총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식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⁶³⁾

사건 당시 상북면 소토리⁶⁴⁾에 거주한 참고인 류○○(1931生, 이웃)에 따르면, 박○식은 이웃 마을 주민이었으며, 한국전쟁 발발 즈음 국민보도연맹 관련으로 양산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로 끌려가 총살되었다고 들었다.⁶⁵⁾

제적등본에 박○식의 사망 일자가 1968년 9월 13일로, 족보에는 박○식의 사망 일자가 1950년 7월 3일로 기재되어 있다.⁶⁶⁾ 박○식의 제삿날은 사망일 전날인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박○식의 연행과정 및 구금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박○식의 제삿날이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하며 족보에도 박○식의 사망 일자가 1950년 7월 3일로 기재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식(2다-1371)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⁶⁷⁾

나) 진실규명대상자 김○도(2다-1372, 신청인 김○수)

진실규명대상자 김○도(金○道, 1924生, 농업)는 양산군 양산면 산막동 영동마을⁶⁸⁾에 거주하던 중 양산경찰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수(1948生, 아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얼마 후 경찰이 김○도를 연행해 갔다. 그 후 김○도는 목화창고에 갇혀 있다가 사배고개에서 총살되었다. 신청인은 친구인 김○○의 아버지, 박○홍의 아버지(박○수, 2다-1373 진실규명대상자)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도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⁶⁹⁾

63) 신청인 박○일 진술조사(2022. 1. 12.)

64) 참고인 류○○은 효충리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효충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토리에 편입되었으므로 본문에 ‘소토리’로 기재하였다. 상북면지편찬위원회, 『상북면지』, 2009, 166쪽. 지리상 상북면 소토리의 남쪽에 양산면 산막동이 접해있다.

65) 참고인 류○○ 진술조사(2022. 11. 17.)

66) 『밀양 박씨 밀직부원군파 세보』, 2013. 8. 30. 발행.

67) 제적등본 사망일은 상이하나 족보와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박○식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6일(음력 7. 3.)로 판단하였다.

68) 신청인 김○수는 진실규명대상자 김○도가 양산면 호계리 147번지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발발 당시 회기마을에서 거주했다고 하였으나, 참고인 김○○은 “김○도는 양산면 호계동에서 태어나서 한국전쟁 당시에는 양산면 산막동 산막마을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류○○은 “김○도는 영동마을에 살던 이웃이고, 효충리(소토리)에서 도량하나만 건너면 영동마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김○도의 거주지에 대한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당시 3세경이었던 신청인보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따르면, 영동마을과 산막마을은 같은 마을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 진실규명대상자 김○도는 양산면 산막동(영동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11. 14.); 참고인 류○○ 진술조사(2022. 11. 17.); 디지털양산문화대전, yangsan.grandculture.net.

6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오○준 진술조사 확인 결과, 김○해의 아버지는 김○준(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7837)으로 확인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오○준 진술조사(2008. 8. 13.); 신청인 김○수 진술조사(2022. 1. 13.)

사건 당시 상북면 소토리에 거주한 참고인 류○○(1931生, 이웃)에 따르면, 김○도는 이웃 마을주민이었으며, 한국전쟁 발발 즈음 김○도가 국민보도연맹 관련으로 양산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잡혀갔다. 그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로 끌려가 총살되었다고 들었다.⁷⁰⁾

사건 당시 상북면 소석리에 거주한 참고인 김○○(1936生, 친척)에 따르면, 김○도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하여 옛 양산군청 인근 목화창고에 갇혀있었다. 그 후 어느 골짜기 구덩이에서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살됐다고 들었다.⁷¹⁾

제적등본에 김○도에 대해 1955년 7월 10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8년 3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과 참고인 류○○, 김○○이 김○도의 연행 및 구금 정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김○도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 10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도(2다-1372)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⁷²⁾

다) 진실규명대상자 박○수(2다-1373, 신청인 박○홍)

진실규명대상자 박○수(朴○銖, 이명 : ○수(○銖), 1914生, 농업)는 양산면 호계동 음지마을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홍(1948生, 아들)에 따르면, 박○수는 1950년 여름 경찰에 연행되었다. 박○수가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하여 김○○(박○수의 처)가 목화창고에 있는 박○수에게 얼마간 밥을 가져다주었다. 어느 날 박○수가 “내가 아무래도 집에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였다. 김○○가 목화창고에 갈 때마다 창고 안에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음력 6월 27일(1950년 양력 8월 10일)에 목화창고에 가니 창고가 비어있었다. 박○수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⁷³⁾

신청인은 당시 같은 마을에서 황○수, 강○길의 아버지(강○수, 2다-14953 진실규명대상자), 김○해의 아버지, 박○택의 아버지(박○득, 2다-975 진실규명대상자)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박○수와 함께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⁷⁴⁾

사건 당시 하북면 용연리에 거주한 참고인 김○○(1930生, 조카)에 따르면, 박○수는 한국전쟁 발발 후 순사(경찰)에 의해 잡혀갔고, 이후 김○○가 밥을 고모부에게 몇 번 가져다줬다. 어느 날

70) 참고인 류○○ 진술조서(2022. 11. 17.)

7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11. 14.)

72) 제적등본을 근거로 하여 김○도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23일(음력 7. 10.)로 판단하였다.

73)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 발굴을 할 때 김○○가 동면 사배고개에 갔으나 유골이 서로 뒤엉켜 있어 박○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신청인 박○홍 진술조서(2022. 1. 13.)

74)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검토 결과, 황○수의 아버지는 황○조(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8027)로 확인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770쪽; 신청인 박○홍 진술조서(2022. 1. 13.)

김○○가 그 장소에 가니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⁷⁵⁾

참고인 박○○(1944生, 딸)에 따르면, 박○수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누군가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찍었고,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날 목화창고에 간혔다. 김○○가 밥을 싸서 매일 아침 목화창고에 박○수를 보러 갔고, 김○○가 목화창고에 다녀오면 항상 울었다. 김○○에 따르면, 박○수 외에도 황○조, 김○준, 강○수가 목화창고에 갇혀있었다.⁷⁶⁾

박○수의 사망 일자가 제적등본에는 1968년 2월 27일로, 족보에는 1950년 6월 27일로 기재되어 있다.⁷⁷⁾ 박○수의 제삿날은 박○수가 목화창고에서 사라진 날인 음력 6월 27일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박○홍이 박○수의 연행 과정 및 구금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박○수의 제삿날이 음력 6월 27일(1950년 양력 8월 10일)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하며 족보에도 박○수의 사망 일자가 1950년 6월 27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수(2다-1373)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⁷⁸⁾

라) 진실규명대상자 김○준 (2다-1376, 신청인 김○수)

진실규명대상자 김○준(金○俊, 1924生, 근로자)은 양산면 호계동 양지마을에 거주하던 중 양산 경찰서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수(1950生, 아들)에 따르면, 김○준은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와 부산에 있는 과자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군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김○○(김○준의 아버지)이 김○준을 양산으로 불렀고, 김○준이 양산으로 돌아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1950년 음력 6월 18일(1950년 양력 8월 1일)경 김○준은 양산군청 인근에 있던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이후 김○준의 가족들은 목화창고에 구금됐던 사람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에서 사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준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⁷⁹⁾

신청인은 당시 같은 마을에서 강○길의 아버지(강○수, 2다-14953 진실규명대상자)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김○준과 함께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⁸⁰⁾

75)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11. 16.)

76) 참고인 박○○ 진술조사(2022. 11. 16.)

77) 『밀양 박씨 밀직부원군파 대동보』, 1986. 5. 발행.

78) 제적등본 사망일은 상이하나 족보와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박○수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0일(음력 6. 27.)로 판단하였다.

79)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 발굴을 할 때 지○○(김○준의 어머니)이 유골을 발굴하려 갔다. 발굴한 유골들로 춘추원(양산시 교동 산55-1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현재 춘추공원이라 불린다. 충훈탑 등이 세워져 있다.)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지○○이 몇 년간 춘추원에 김○준의 제사를 지내려 갔다. 신청인 김○수 진술조사(2022. 1. 13.)

80) 신청인 김○수 진술조사(2022. 1. 13.)

사건 당시 목화창고에 구금된 김○준을 목격한 참고인 안○○(1935生, 매부⁸¹⁾, 당시 물금면 교리 신주마을 거주)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김○준은 자형의 친구여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음력 6월 김○○(김○준의 아버지)이 양산경찰서로 가지 않으면 집을 풍비박산을 낸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김○준에게 양산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김○준이 부산에서 올라와 1950년 음력 6월 18일경 양산경찰서로 갔다고 한다.⁸²⁾ 당시 나의 형(안○원)도 목화창고에 갇혀있었다. 형에게 밥을 가져다주러 가니 김○준이 거기 있었다. 밥을 가져가면 형이 ‘○준 씨 이리 와 보소’라고 하며 김○준을 불러 밥을 같이 먹었다. 1950년 음력 7월 3일(1950년 양력 8월 16일)에 목화창고가 비었고 동네 주민들이 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고 한다.⁸³⁾

제적등본에는 김○준에 대하여 1955년 7월 10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8년 7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족보에는 김○준이 1955년 7월 10일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⁸⁴⁾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김○준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및 출두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안○○이 김○준의 출두 및 구금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구금 장소인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김○준을 목격한 점, (3) 김○준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 10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고 족보에도 1955년 7월 10일에 행방불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4) 김○준의 제삿날이 음력 6월 18일(양력 1950년 8월 1일)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준(2다-1376)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양산경찰서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⁸⁵⁾

**마) 진실규명대상자 박○종 (2다-7511, 신청인 박○구), 진실규명대상자 박○희
(2다-7512, 신청인 박○권), 진실규명대상자 박○옥 (2다-7514, 신청인 박○종)**

진실규명대상자 박○종(朴○鐘, 이명 : ○이, 1931生, 농업), 박○희(朴○熙, 1930生, 농업), 박○옥(朴○鉉, 1928生, 농업)은 친척이며, 양산면 명곡동 양지마을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거나 경찰서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구(1942生, 박○종의 동생)에 따르면, 1950년 7월~8월경 양산경찰서 사찰계 형사조○○⁸⁶⁾가 박○종을 연행했고 이를 신청인이 목격하였다. 박○종이 목화창고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81) 김○준이 희생 된 후 안○○은 김○준의 동생인 김○○와 혼인하여 김○○의 고모부가 되었다. 참고인 안○○ 진술조사(2022. 9. 29.)

82) 당시 김○준과 김○○가 집을 같이 나와서 김○○는 양산국민학교에 갔고 김○준은 양산경찰서로 가서 날짜를 기억한다.

83) 안○○은 이 사건 당시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자신의 형 안○원(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2727)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면서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다른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안○○ 진술조사(2022. 9. 29.)

84) 『김영김씨 좌승지공파보』, 1999. 5. 30. 발행.

85) 김○준의 제삿날은 김○준이 목화창고로 나간 날인 음력 6월 18일이다. 제적등본, 족보를 근거로 하여 김○준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23일(음력 7. 10.)로 판단하였다.

듣고 이○○(박○종의 어머니)이 신청인에게 박○종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양산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어⁸⁷⁾ 학교 가는 길에 목화창고를 지나갔다. 신청인은 박○○(박○종의 누나)과 함께 3~4차례 초배기(대나무 도시락)⁸⁸⁾에 밥을 싸서 목화창고에 있는 박○종과 박○옥에게 전달했다. 목화창고 안에는 청년 100~200여 명이 있었고 그 중 박○종, 박○옥, 박○희를 목격하였다. 얼굴이 초췌했고 불안해 보였다. 창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삼베옷을 입고 있어 창고 안이 하얗게 보였다. 어느 날, 박○종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러 가니 목화창고는 이미 텅 비어있었다. 박○종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⁸⁹⁾

신청인 박○권(1935生, 박○희의 동생)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명곡동 음지마을 사람이 마을 청년들을 당산나무에 앞에 모이라고 한 후 만세삼창을 시켜서 박○희도 그 자리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왔다. 누군가 이를 신고했고 경찰서에서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모두 소환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그 일로 박○희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신청인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박○희가 보이지 않아 이웃에게 박○희의 행방을 물으니 박○희가 명곡동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갔다고 했다.

신청인은 당시 양산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⁹⁰⁾ 양산중학교가 목화창고 위에 있어 목화창고를 지나 학교에 갔다. 신청인은 당시 목화창고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 박○희가 구금되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어느 날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 박○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⁹¹⁾

신청인 박○종(1961生, 박○옥의 조카)에 따르면, 박○옥은 한국전쟁 발발 즈음 누군가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박○옥은 얼마 후 양산경찰서 인근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박○옥이 목화창고에 갇혀있을 때 박○○(박○종의 누나)이 박○구(2다-7511 신청인)와 함께 박○옥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었다. 박○옥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⁹²⁾

신청인들은 후에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양지마을에서 김○○⁹³⁾, 김○○⁹⁴⁾, 박○종, 박○희, 박○옥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고 이 중

86) 조○○(曹○○)에 대한 인사기록을 양산경찰서에 요청하여 1946년 작성 양산경찰서 사령원부를 회신하였는바, '1946년 1월 13일 보안계 보근에 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사기록 자료」(양산경찰서 경무과-11271, 2022. 12. 15.)

87) 당시 양산국민학교는 지금의 위치(양산시 북부동 269번지)가 아니라 현 양산호텔이 있는 위치(양산시 북부동 169-9)에 있었다. 참고인 박○○ 진술조사(2022. 11. 13.); 참고인 박○○ 진술조사(2022. 11. 15.); 박○○의 학적 기록을 확인한바, 박○○는 1950. 3. 7.(4283. 3. 7.)에 양산국민학교에 입학하여 1955. 3. 19.(4288. 3. 19.)에 졸업하였다. 양산초등학교, 「학적 기록 조회 결과」(양산초등학교-12203, 2022. 11. 4.)

88) 신청인 박○구는 '어머니가 도시락에 보리밥을 조금 섞은 쌀밥을 싸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박○구 진술조사(2022. 11. 16.)

89) 신청인 박○구 진술조사(2022. 4. 4.); 참고인 박○○ 진술조사(2022. 11. 16.)

90) 양산중학교의 당시 명칭은 양산공립초급중학교였다. 박○구의 학적 기록을 확인한바, 박○권은 1950. 6. 5.(4283. 6. 5.)에 양산중학교에 입학하여 1953. 3. 20.(4286. 3. 20.)에 졸업하였다. 양산중학교, 「학적 기록 회신」(양산중학교-11167, 2022. 11. 4.)

91) 신청인 박○권 진술조사(2022. 4. 4.)

92) 신청인 박○종 진술조사(2022. 7. 26.)

93) 김○○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김○○의 생사, 주소 및 연락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이번 조사에서 추가 조사하지 못했다.

94)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10588.

김○○을 제외하고는 모두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⁹⁵⁾

사건 당시 목화창고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구금된 광경을 목격한 참고인 박○○(1936生, 친척, 당시 양산면 명곡동 양지마을 거주)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박○종, 박○희, 박○옥은 한국전쟁 발발 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발발 후 여름 양산경찰서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모이라고 하여 박○종, 박○희, 박○옥이 양산경찰서로 갔고, 목화창고에 갇혔다. 양산중학교에 통학하며 박○종, 박○희, 박○옥이 목화창고 안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트럭 몇 대에 태워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구덩이를 파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⁹⁶⁾

사건 당시 양산면 명곡동 양지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27生, 이웃)에 따르면, 명곡동 양지마을에서 박○옥이 국민보도연맹으로 끌려가 죽었다.⁹⁷⁾

제적등본에 박○종에 대하여 1955년 7월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7년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종의 제삿날은 음력 7월 4일(양력 1950년 8월 17일)이다.

제적등본에 박○희에 대하여 1955년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7년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희의 제사는 음력 7월에 지냈다.

제적등본에 박○옥에 대하여 1955년 7월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7년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옥의 가족들은 박○옥의 사망일을 정확하게 몰라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들이 박○종, 박○희, 박○옥의 연행 및 구금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신청인 박○구, 참고인 박○○이 이 사건의 구금 장소인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박○종, 박○희, 박○옥을 목격한 점, (3) 박○종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이고, 박○희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이며, 박○옥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이어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4) 박○종의 제삿날이 음력 7월 4일(1950년 양력 8월 17일), 박○희의 제사 월이 음력 7월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종(2다-7511), 박○희(2다-7512), 박○옥(2다-7514)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경찰서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⁹⁸⁾

95) 신청인 박○구 진술조서(2022. 4. 4.); 신청인 박○권 진술조서(2022. 4. 4.); 신청인 박○종 진술조서(2022. 7. 26.)

9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2. 11. 15.)

9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철 진술조서(2009. 7. 6.)

98) 제적등본과 제삿날 등을 근거로 하여 박○종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7일(음력 7. 4.)로, 박○희, 박○옥이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진실규명대상자 황○수 (2다-8227, 신청인 황○자)

진실규명대상자 황○수(黃○壽, 1915生, 농업)은 양산면 남부동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황○자(1942生, 딸)에 따르면, 황○수는 땅을 사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고, 미싱, 새끼 꼬는 기계를 구매하여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등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였다.⁹⁹⁾ 또한, 김구 선생이 암살당할 때 분노를 표시하고,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신문사에 투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좌익으로 몰렸고, 그로 인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 1950년 8월 어느 밤 총을 찬 경찰관 2명이 황○수의 집에 왔다. 성○○(황○수의 어머니)가 일어나 불을 켰고 신청인도 같이 일어났다. 경찰관이 ‘황○수 어디 갔어’라고 했고, 당시 황○수가 마을에서 경비를 서고 있어 그 장소를 성○○가 경찰에게 알려줬다. 경찰관들이 황○수를 찾으러 갔고 그날 이후 황○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 후에 황○수가 목화창고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황○수의 치)가 밥을 가져다주었다. 1950년 음력 7월 15일(1950년 양력 8월 28일)경 황○수가 트럭에 실려 가며 집 앞에서 ‘어머니’라고 세 번을 외쳤다고 이웃 주민이 안○○에게 알려주었다.

황○수가 희생당한 날 총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황○수를 아는 사람이 황○수 시신에 표시를 해놓으니 가 보라고 황○수의 가족에게 알려주었다. 그날 바로 안○○와 신청인의 외삼촌과 친척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에 가서 황○수의 시신을 찾아 멀지 않은 곳에 따로 묻었다. 3일 후 안○○가 급하게 묘를 만들어 신청인의 큰언니, 큰오빠, 신청인을 데리고 가서 제를 지냈다.¹⁰⁰⁾

사건 당시 양산면 남부동에 거주한 참고인 박○○(1943生, 이웃)에 따르면, 황○수는 농촌 계몽을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고,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날 황○수가 국민보도연맹으로 누군가에게 잡혀가 어느 골짜기에서 총살되었다.¹⁰¹⁾

제적등본에 황○수의 사망 일자가 1954년 7월 5일로 기재되어 있다.¹⁰²⁾ 황○수의 제삿날은 음력 7월 14일(1950년 양력 8월 27일)이다. 신청인이 제출한 황○수의 묘비 사진에는 ‘1914年 7月 7日 生 1950年 7月 15日 卒’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⁰³⁾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황○수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경위와 연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황○수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황○수의 제삿날이 음력 7월 14일(1950년 양력 8월 27일)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하며, 황○수의 묘비에

99) 양산읍사에 따르면, 황○수는 1947. 10. 14.부터 1947. 11. 9. 까지 남부동(현 남부마을) 이장이었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 읍사』, 2009, 290쪽.

100) 신청인 황○자 진술조서(2022. 4. 6.)

101)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11. 13.)

102)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 시기가 이처럼 신고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황○자 진술조서(2022. 4. 6.)

103) 신청인 황○자는 황○수의 묘비 사진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다-8227호 진실규명대상자 황○수 관련 자료 입수 보고」(조사3과-1648, 2022. 10. 27.)

1914年 7月 7日 生 1950年 7月 15日 卒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황○수(2다-8227)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동면 사배고개에서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⁰⁴⁾

사) 진실규명대상자 박○생 (2다-10069, 신청인 김○하)

진실규명대상자 박○생(朴○生, 1908生, 농업)은 양산면 남부동에 거주하던 중 양산경찰서로 출두하였고,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하(1965生, 외손녀)에 따르면, 박○생은 양산 남부동의 구장이었다.¹⁰⁵⁾ 박○생은 해방 이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음력 1950년 7월경 양산경찰서에서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박○○(1938生, 박○생의 딸, 신청인 김○하의 어머니)은 박○생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박○○은 박○생이 마을 청년들 몇과 함께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들었다. 박○○이 목화창고에 갔더니 박○생이 “나는 곧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박○○이 약 일주일간 밥을 해서 목화창고에 아침, 저녁으로 전달했다. 어느 날 목화창고에 갔더니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 후 박○생의 가족들은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을 트럭 3대로 실어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50년 9월경 소식을 듣고 전○○(박○생의 치)과 박○생의 남동생 세 명이 동면 사배고개에 갔다. 전○○이 박○생의 때운 이와 모시 바지가 접힌 모습을 보고 시신을 수습하여 희락원¹⁰⁶⁾ 인근에 매장하였다.¹⁰⁷⁾

참고인 안○○(1934生, 박○생의 첫째 며느리)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하여 누군가 시아버지를 불러내서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그 후 시아버지가 사망한 장소에서 구덩이를 팠던 사람이 ‘끝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시아버지의 시신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시아버지의 동생 3명과 시어머니가 그 장소에 가서 땅을 팠고 옷 입은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 시신을 수습하여 양산 희락원 인근에 묻었다고 한다. 남편(박○○, 박○생의 장남)이 짚었을 때는 산소에 가서 성묘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있다.¹⁰⁸⁾

참고인 이○○(1951生, 박○생의 둘째 며느리)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04) 황○수의 제삿날과 묘비에 기재된 사망일을 근거로 하여 황○수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28일(음력 7. 15.)로 판단하였다.

105) 제적등본에 따르면, 박○생의 일본식 이름은 신천○생(新川○生)이었다. 신천○생은 1941. 4. 1.~1942. 3. 5., 1942. 9. 1.~1944. 4. 3.까지 남부동 남부1마을의 이장이었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89쪽~290쪽.

106) 희락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964-1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양산과 부산의 경계인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인근에 있다.

107) 박○생의 장남 박○○은 신청인 김○하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매년 박○생의 묘에 가서 성묘하였다. 「통화 보고」(조사3과-1786, 2022. 11. 14.); 신청인 김○하 진술조서(2022. 5. 19.)

108)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2. 11. 16.)

시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후 여름 삼베 남방을 입고 집에서 나갔다고 한다. 그 후 시누(박○○)가 시아버지가 어떤 창고에 갇혀있는 걸 알고는 밥을 해서 서너 번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 갔더니 창고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시아버지 형제들과 시어머니가 양산 어딘가에서 시아버지가 입은 삼베옷을 보고 시신을 찾아 희락원 인근 언덕에 묘를 만들었다고 한다.¹⁰⁹⁾

제적등본에 박○생에 대하여 1955년 7월 10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9년 1월 5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생의 제삿날은 음력 7월 15일(1950년 양력 8월 28일)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박○생의 출두 경위, 구금 정황, 시신 수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박○생의 제삿날이 음력 7월 15일(1950년 양력 8월 28일)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3) 박○생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 10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생(2다-10069)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양산경찰서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¹⁰⁾

2) 동면

동면은 양산시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1914년 행정구역 변경 때 지금의 동면인 가산동, 금산동, 석산동, 내송동, 사송동, 여락동, 법대동, 개곡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동면은 개곡리, 법기리, 여락리, 사송리, 내송리,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 등 8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다.¹¹¹⁾

동면의 사송리 사배고개와 여락리 남락고개는 이 사건의 희생 장소이다. 사배고개는 남쪽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녹동마을과 인접하고 있다.¹¹²⁾ 남락고개는 사배고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남쪽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두구동과 인접하고 있다.

동면에서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는 김○철(2다-3588), 박○표(2다-7506), 김○환(2다-7508), 유○줄(2다-7510), 유○달(2다-7519), 김○찬(2다-7526)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과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진실규명대상자의 족보 및 제적등본, 『기초사실조사표』, 지역 향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10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 11. 16.)

110) 제적등본과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박○생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23일(음력 7. 10.)경으로 판단하였다.

111)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43쪽.

112) 사배고개가 속한 사배마을은 2007년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신도시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사배 마을 원주민들은 모두 이주하고 없는 실정이다.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90쪽.

가) 진실규명대상자 김○철 (2다-3588, 신청인 김○삼)

진실규명대상자 김○철(金○喆, 1929生, 농업)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삼(1944生, 동생)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날 경찰 두세 명이 집에 찾아왔다. 경찰들이 집에 있던 김○철을 같은 번지에 살고 있던 김○○(친척)의 집으로 데려가 구타했다. 신청인이 그 집 마당에 따라가 김○철이 맞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날 이후로 김○철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김○철이 집에 오지 않자, 박○○(김○철의 어머니)이 수소문하여 김○철이 목화창고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김○철의 가족들은 목화창고에 갇혔던 사람들을 묶은 후 줄을 세워 사송리 사배고개로 데려가 사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철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다.

신청인은 당시 같은 마을에서 김○규¹¹³⁾, 김○복¹¹⁴⁾, 월리마을 김○○의 큰아버지(이름 미상)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¹¹⁵⁾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이 김○철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 김○○(1933生, 이웃, 당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 거주)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김○철은 우리 바로 윗집에 살았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온 무렵, 마을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연행했다. 형사들이 김○철을 잡으러 갈 때 우리 집을 지나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그 후에 형사들이 김○철을 연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무렵 연행된 마을 사람들이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가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¹¹⁶⁾

동면 석산리 월리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1927生, 이웃)에 따르면 석산리 지당마을에서 김○철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다가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등지에서 희생되었다.¹¹⁷⁾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42生, 이웃)에 따르면, 지당마을에서 김○철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¹¹⁸⁾

제적등본에 김○철에 대하여 1955년 7월 5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8년 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죽보에 김○철에 대하여 1955년 7월 5일 생사불명, 1968년 2월 14일 부산지방법원 실종선고로 기재되어 있다.¹¹⁹⁾ 김○철의 제삿날은 음력 9월 9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철과 관련하여 『기초사실조사표』를 확인하였다.

113)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15) 신청인 김○삼 진술조서(2022. 7. 14.)

1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9.)

11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7. 7.)

11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7.)

119) 제적등본에 기재된 실종선고 내용을 죽보에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도 김씨 대동보』, 2016. 12. 발행.

- 『기초사실조사표』(2009)에는 김○철에 대해 ‘피해 형태: 총살, 피해 유형: 보도연맹, 사건 내용: 보도연맹사건으로 북부동 목화창고에 감금되어 사배골짜기에서 총살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언자 : 김○삼)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김○철의 연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확보된 점, (2) 참고인 김○○가 김○철의 연행 정황을 목격한 점, (3) 김○철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 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고 족보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4) 『기초사실조사표』의 내용이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철(2다-3588)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²⁰⁾

나) 진실규명대상자 박○표 (2다-7506, 신청인 박○필)

진실규명대상자 박○표(朴○杓, 1922生, 근로자¹²¹⁾)는 양산군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필(1946生, 딸)에 따르면, 박○표는 한국전쟁 발발 후 동네 청년들 몇 명과 함께 누군가에게 끌려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박○표가 집에 오지 않자, 오○○(박○표의 어머니)이 수소문하여 박○표가 목화창고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화창고에 구금된 박○표에게 밥을 서너 번 가져다주었다. 어느 날 오○○이 밥을 해서 목화창고에 가져갔더니 박○표가 없었다. 그 후 박○표의 가족들은 박○표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동면 지경고개(사배고개) 구덩이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표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¹²²⁾

신청인은 당시 같은 마을에서 김○민¹²³⁾, 김○찬¹²⁴⁾, 이○○의 아버지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¹²⁵⁾

이 사건 당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33生, 이웃)와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42生, 이웃)에 따르면, 박○표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¹²⁶⁾

120) 제적등본, 족보를 근거로 하여 김○철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8일(음력 7. 5.)경으로 판단하였다.

121) 신청인 박○필은 진실규명대상자 박○표가 농사를 짓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참고인 박○○은 진실규명대상자 박○표가 소방차 조수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좌의사건 실록 6』에는 박○표가 자동차 조수일에 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박○필 진술조서(2022. 7. 1.);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11. 13.); 대검찰청 수사국, 『좌의사건 실록 6』, 1971, 225~227쪽.

122) 신청인 박○필의 동생 박태선에 따르면,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 발굴을 할 때 박○○(박○표의 아버지)이 참여했다. 유골들 속에서 박○표의 금니를 보고 박○표가 죽은 것을 확인하였다. 발굴한 유골로 양산 춘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고 박○○이 합동위령제에 다녀왔다. 「통화 보고(2다-7506호)」(조사3과-1900, 2022. 11. 30.)

123) 김○규,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24) 김○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25) 신청인 박○필 진술조서(2022. 7. 1.)

12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9.)

당시 동면 석산리 월리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1927生, 이웃)에 따르면, 당시 석산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40명 이상이며,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목화창고에 간 힌 후 1950년 음력 7월 초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등지에서 총살되었다. 박○표도 이때 같이 희생되었다.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23生, 이웃)에 따르면, 석산리 사람들이 빨치산들이 연설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지당마을 박○표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¹²⁷⁾

참고인 박○○(1956生, 조카)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큰아버지(박○표)는 부산 초량역 인근에서 소방차 조수 일을 했다고 한다. 1950년 음력 6월 27일(1950년 양력 8월 10일)경 아침에 할머니(오○○, 박○표의 어머니)가 밥상을 가지고 가는데 경찰 2~3명이 와서 큰아버지를 막무가내로 끌고 갔다고 한다. 큰아버지가 목화창고에 갇혀 있다고 하여 할머니가 목화창고에 밥을 몇 번 가져다주었는데 어느 날 밥을 해서 가니 목화창고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트럭에 태우고 녹동고개¹²⁸⁾ 어느 골짜기에서 총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¹²⁹⁾

제적등본에 박○표의 사망 일자가 1955년 10월 5일로 기재되어 있다. 박○표의 제삿날은 박○표가 연행된 날인 음력 6월 27일(1950년 양력 8월 10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박○표와 관련하여 『좌의사건 실록』, 판결문 등을 확인하였다.

박○표(朴○杓)는 (중략) 자동차 조수로 취직하여 현재에 이르는 자이다. (중략) 1948년 2월 2일경 석산부락 성명불상 장소에서 (중략) 동일 오후 11시경에 전시인들과 동면 내송리와 다방리 사이의 자동차 도로를 파괴하는 순간 양산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하 생략). 피의자 박○표(朴○杓)에게 1949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¹³⁰⁾

○ 『좌의사건 실록 6』에 박○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부산지방법원 단기4282년형공제492호 판결문에는 박○표(본적 :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석산리 742번지)가 1949년 6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¹⁾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박○표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2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안○○의 진술과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2009. 9. 8. 진실규명 결정) 등에는 박○표의 이름이 '박○포'로 기재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박○포'의 거주지 등을 근거로 '박○포'는 박○표의 오기로 확인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사(2009. 5.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 진술조사(2009. 7. 7.)

128)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녹동마을에 있는 고개로,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와 인접한 곳이다.

129) 참고인 박○○ 진술조사(2022. 11. 13.)

130) 대검찰청 수사국, 『좌의사건 실록 6』, 1971, 225~227쪽.

131) 부산지방법원 1949. 6. 1. 선고 단기4282년형공제492호 판결.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A00399377)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박○표의 연행 및 구금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박○표의 제삿날이 음력 6월 27일(1950년 양력 8월 10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3) 판결문과 『좌익사건 실록』에 따르면 박○표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표(2다-7506)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³²⁾

다) 진실규명대상자 김○환 (2다-7508, 신청인 김○구)

진실규명대상자 김○환(金○煥, 1927生, 농업)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양산경찰서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구(1949生, 아들)에 따르면, 김○환은 빨치산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주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고, 그 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이 되었다.¹³³⁾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날 김○환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양산경찰서에 구금되었다.¹³⁴⁾

최○○(김○환의 처)과 김○○(김○환의 여동생)이 양산경찰서에 면회 갔다. 최○○이 김○환의 면회를 하러 가면서 동네 주민을 만났고 ‘아기 아빠(김○환) 면회 간다’라고 말했더니 주민이 ‘면회 갈 필요 없다. 내가 국계 다리¹³⁵⁾에서 2~3명이 총살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에 김○환이 있었다. 김○환은 총을 여러 번 맞고 죽었다’라고 하였다. 김○환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¹³⁶⁾

당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23生, 이웃), 동면 석산리 월리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1927生, 이웃)과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박○○(1942生, 이웃)에 따르면, 김○환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¹³⁷⁾

당시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43生, 이웃)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관련으로 마을 청년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그중에 김○환도 있었다. 잡혀간 청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락고개에서 총살당했다.¹³⁸⁾

132) 제적등본 사망일은 상이하나 박○표의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박○표의 희생일을 1950년 8월경으로 판단하였다.

133) 진실규명신청서(신청인 김○구)

134) 김○구가 6살 무렵 어머니 최○○이 재가하여 김○구는 6살부터 19살까지 고아원에서 생활하였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 김○환의 사망에 대해 자세하게 몰랐다. 신청인 김○구 진술조사(2022. 1. 25.)

135) 신청인 김○구는 ‘국회다리’라고 진술하며, 이는 ‘춘추원(현 춘추공원)앞에 있는 다리’라고 하였다. 김○○이 말하는 ‘국회다리’는 ‘국계다리’로 보인다. 국계다리는 현 영대교를 말한다. 신청인 김○구 진술조사(2022. 1. 25.); 양산시지편찬위원회, 『양산시지(上)』, 2004, 1310쪽.

136) 김○환의 제사는 음력 1월 7일에 지내고 있다. 신청인에 따르면, 이는 김○○(김○환의 동생)이 지내오던 날짜이다. 이유는 듣지 못했으나 돌아가신 날을 몰라 문종에서 정해준 날짜인 것 같다고 한다. 신청인 김○구 진술조사(2022. 1. 25.); 「통화 보고(2다-7508호)」(조사3과-61, 2023. 1. 5.)

13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사(2009. 5.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 진술조사(2009. 7. 7.); 박○○ 전화조사 약식조사(2009. 7. 15.)

138)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11. 14.)

제적등본에 김○환에 대하여 1955년 7월 5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8년 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환의 제삿날은 음력 1월 7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환과 관련하여 형사사건부, 『좌익사건 실록』, 『기초사실조사표』 등을 확인하였다.

- 부산지방검찰청의 1949년 형사사건부에는 ‘양산군 동면 석산리 김○환(金○煥, 23세, 농업)’ 등 13명 국가보안법 위반(불기소 일 : 4282년(1949년) 10월 24일¹³⁹⁾)‘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⁴⁰⁾

1949년 8월 20일 오후 8시경 남로당원 유○달(柳明達)¹⁴¹⁾, 최○식(崔瑀植)¹⁴²⁾ 등 및 동면 세포책 흥○희(洪善熹)¹⁴³⁾ 등과 무허가 집회한 자리에서 ①국내외정세 문제 ② 인민공화국 수립 문제 ③ 당원의 분대조직 문제 ④ 미국산 비료 사용 반대 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동년 8월 30일 정오 12시경 (중략) 무허가집회를 하였고, 동년 9월 5일 밤 12시경 (중략) 무허가집회를 하였다.¹⁴⁴⁾

- 『좌익사건 실록 7』에 김○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김○환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초사실조사표』에 김○환에 대해 ‘피해 형태: 총살, 피해 유형: 보도연맹, 사건 내용: 보도연맹 관계으로 모이라고 한 뒤 폭화창고에 감금되어 사배골짜기에서 총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언자 : 김○○¹⁴⁵⁾)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환이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으로 인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¹⁴⁶⁾, (2) 김○환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 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3) 『기초사실조사표』의 내용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4) 형사사건부, 『좌익사건 실록』으로 보아 김○환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환(2다-7508)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양산경찰서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⁴⁷⁾

139) 형사사건부 불기소란에 ‘終了(종료)’라고 기재되어 있어 어떤 사유로 불기소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40)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과, 『형사사건부』, 1949.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D0097832)

141) 2다-7519호 진실규명대상자(신청인 : 유○자)

142)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7672.

143)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10587.

144)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 실록 7』, 1971, 236~243쪽.

145) 김○○는 진실규명대상자 김○환의 조카이다.

146) 김○구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부 상이하나, 김○구는 오랜 시간 고아로 살아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어 신청인의 진술보다는 참고인 진술과 기타 문서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47) 김○구가 전문으로 들은 희생 장소와 참고인 진술에서의 희생 장소가 상이하여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제적등본을 근거로 하여 김○환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8일(음력 7. 5.)로 판단하였다.

라) 진실규명대상자 유○줄 (2다-7510, 신청인 유○상)

진실규명대상자 유○줄(劉○茁, 1909生, 농업)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하던 중 양산경찰서로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유○상(1950生, 아들)에 따르면,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장부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유○줄이 도장을 찍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 한국전쟁 발발 얼마 후 양산경찰서에서 석산리에 살고 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한 곳으로 오라고 하여 유○줄이 출두하였고 그 후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당시 마을 청년들이 유○줄과 같은 경위로 나간 후 돌아오지 못했던 터라 성○○(유○줄의 처)는 유○줄에게 잠시 피해 있을 것을 권하였으나 유○줄은 ‘내가 죄지었나’라고 하며 거부하였다. 당시 석산리에서 30~40명 정도의 청년들이 유○줄과 비슷한 경위로 사라진 후 목화창고에 갇혔다고 소문이 났다.

성○○는 유○줄이 출두한 후 약 5~6일간 도시락을 싸서 목화창고에 면회하러 갔다. 김○찬¹⁴⁸⁾, 유○달¹⁴⁹⁾ 등도 창고에 갇혀있었다. 어느 날 성○○가 목화창고에 갔더니 유○줄은 내일 나갈 거라고 했다. 다음 날 성○○가 도시락을 싸서 목화창고에 갔으나 창고가 비어있었다. 그때가 1950년 음력 7월 3일이었다. 그 후 소문에 동면 사배고개에 구덩이를 파서 끌려간 마을 청년들을 모두 총살했다고 했다. 유○줄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¹⁵⁰⁾

이 사건 당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23生, 이웃),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1943生, 이웃),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1950生, 이웃)에 따르면, 지당마을 유○줄은 석산리 국민보도연맹원 중 한 명이었다. 1950년 7월경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¹⁵¹⁾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33生, 이웃)에 따르면, 유○줄은 김○○의 집보다 조금 위쪽에 살았던 이웃이며, 유○줄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관련으로 경찰에 잡혀가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¹⁵²⁾

당시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42生, 이웃)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유○줄은 100m가량 떨어져 살았던 이웃이다. 내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두 집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두 집 자녀들 나이가 비슷해서 (유○줄이) 사망한 사정은 잘 알았다. 곡리마을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목화창고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채○원(2다-2193-36 진실규명대상자), 김○찬(2다-7526 진실규명대상자), 유○줄의 아내가 목화창고

148) 김○화의 아버지, 2다-7526 진실규명대상자.

149) 유○자의 아버지, 2다-7519 진실규명대상자.

150)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 발굴을 할 때 성○○가 참여했다. 신청인 유○상 진술조서(2022. 5. 19.)

151)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사(2009. 5.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 전화조사 약식조사(2009. 7. 14.); 이○○ 전화조사 약식조사(2009. 7. 13.)

152)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9. 29.)

에 밥을 주려 갔다. 희생자들의 부인들이 목화창고에 다녀온 날이면 ‘잘 있고 그렇더라. 일도 안 시키고 그리고 있더라.’라고 말을 주고받았다.¹⁵³⁾

제적등본에는 유○줄의 사망 일자가 1967년 7월 2일로 기재되어 있다.¹⁵⁴⁾ 유○줄의 제삿날은 창고가 비기 전날인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유○줄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출두 및 구금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유○줄의 제삿날이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며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도 이와 같은 점¹⁵⁵⁾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유○줄(2다-7510)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양산경찰서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⁵⁶⁾

마) 진실규명대상자 유○달 (2다-7519, 신청인 유○자)

진실규명대상자 유○달(劉○達, 1919生, 농업)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월리마을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유○자(1946生, 딸)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빨치산들이 산에서 총을 들고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에게 밥을 달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유○달이 이들에게 밥을 준 적이 있고, 이를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에 김해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외삼촌이 유○달에게 김해에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하였는데, 유○달이 “아버지(유○달의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어디로 피하겠느냐.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 후 경찰들이 집으로 와서 유○달을 연행했다.

유○○(유○달의 처)가 수소문하여 유○달이 양산군청 옆에 있는 목화창고에 갇혀있다는 걸 알게 됐고, 잡혀간 이후부터 밥을 지어 목화창고에 가져다주었다. 밥을 가져가면 경찰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부르고 사람이 있으면 밥을 전해주는 식이었다. 보름 정도 밥을 해서 주었는데 어느 날 유○달이 없어서 밥을 도로 가져왔다. 그날이 1950년 음력 6월 23일(1950년 양력 8월 6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목화창고에 있었다. 그 후 유○달이 양산과 부산 경계인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고 들었다. 유○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¹⁵⁷⁾

153) 김○○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 자신의 아버지 김○영, 속부 김○영, 김○영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하였고(다-8347), 모두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7.)

154)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이 이처럼 신고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유○상 진술조서(2022. 5. 19.)

155) 제적등본에는 1967년 7월 2일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1988년 4월 6일 성○○ 신고)으로 기재 되어있다. 그러나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유○줄은 1950년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경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156) 제적등본 사망일과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유○줄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5일(음력 7. 2.)로 판단하였다.

157)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 발굴을 한 후, 발굴한 유골들이 집채만 했다고 하였다. 신청인 유○자 진술조서(2022. 7. 14.)

신청인은 당시 석산리에서 유○상의 아버지(유○줄, 2다-7510 진실규명대상자), 김○화의 아버지(김○찬, 2다-7526 진실규명대상자)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¹⁵⁸⁾

이 사건 당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23生, 이웃)에 따르면 1950년 7월 말경 석산리 월리마을에서 유○달이 경찰에 연행되어 희생되었다. 동면 석산리 월리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박○○(1942生, 이웃)에 따르면, 석산리 월리마을 유○○의 아버지(유○달)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목화창고에 갇혀있다가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¹⁵⁹⁾

당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42生, 이웃)에 따르면, 이웃 마을 사람 유○달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 동면 석산리 월리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37生, 이웃)에 따르면, 유○달은 김용곤의 바로 뒷집에 살던 사람이며, 면사무소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가입 얼마 후 양산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목화창고에 갇혀 있다가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¹⁶⁰⁾

제적등본에 유○달에 대하여 1955년 7월 5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8년 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유○달의 제삿날은 유명달이 목화창고에서 사라지기 전날인 음력 6월 22일(1950년 양력 8월 5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유○달과 관련하여 형사사건부, 『좌의사건 실록』을 확인하였다.

- 부산지방검찰청의 1949년 형사사건부에는 ‘양산군 동면 석산리 유○달(劉○達, 31세, 농업)’ 등 13명 국가보안법 위반(불기소 일 : 4282년(1949년) 10월 24일)’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⁶¹⁾
- 『좌의사건 실록 7』에 유○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유○달(劉○達)은 1949년 8월 30일 오후 1시경 (중략) 제 1피의자 김○환(金○煥)¹⁶²⁾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동일한 활동을 하였다.¹⁶³⁾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유○달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유○달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경위, 구금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유○달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 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3) 유○달의 제삿날이

158) 신청인 유○자 진술조서(2022. 7. 14.)

15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박○○ 진화조사 약식조서(2009. 7. 15.)

16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7.)

161)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과, 『형사사건부』, 1949.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BD0097832)

162) 2다-7508 진실규명대상자.

163) 대검찰청 수사국, 『좌의사건 실록 7』, 1971, 236~243쪽.

음력 6월 22일(1950년 양력 8월 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4) 위 언급된 형사사건 부, 『좌익사건 실록』으로 보아 유○달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유○달(2다-7519)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⁶⁴⁾

바) 진실규명대상자 김○찬 (2다-7526, 신청인 김○화)

진실규명대상자 김○찬(金○瓚, 1916生, 농업)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하던 중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화(1946生, 아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후 곡리마을 뒤 대밭에서 빨치산들이 총을 들고 내려와 밥을 달라고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번은 신청인의 집에 빨치산들이 찾아왔다. 그 후 마을 구장이 빨치산을 만난 주민들을 모아서 ‘빨치산을 만난 사람들은 일할 수 없다. 도장을 찍으면 일하러 갈 수 있다.’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그때 모인 김○○의 아버지(성명 미상), 유○상의 아버지(유○줄, 2다-7510 진실규명대상자) 등이 도장을 찍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어느 날 마을 구장이 일을 시켜준다고 하며 도장을 찍은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하였다.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김○찬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다.

그 후 김○찬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김○찬의 처)이 구장에게 물으니 김○찬이 목화창고에 있다고 했다. 이○○과 곡리마을 국민보도연맹원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서 목화창고에 3일 정도 갔다. 밥을 가져가면 앞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의 이름, 마을 이름을 불러 목화창고 안에 해당 사람이 있으면 밥을 전달해 주었다.

1950년 음력 7월 3일(1950년 양력 8월 16일)경 목화창고에 갔는데 창고가 비어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동면 사송고개(사배고개)에 구덩이를 파서 사람들을 일렬로 세운 후 총살했다고 했다. 김○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¹⁶⁵⁾

신청인은 당시 석산리 곡리마을에서 유○줄(유○상의 아버지, 2다-7510 진실규명대상자), 김○○의 아버지(성명 미상)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¹⁶⁶⁾

이 사건 당시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23生, 이웃)에 따르면, 석산리 곡리마을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김○찬이 1950년 7월 말경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¹⁶⁷⁾

164) 제적등본 실종기간 기산점과 제삿날이 상이하나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유○달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5일(음력 6. 22.)로 판단하였다.

165)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양산 춘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이○○, 김○○(김○찬의 장남, 신청인의 형), 신청인이 같이 가서 김○찬의 이름이 호명되면 절을 했다. 신청인 김○화 진술조서(2002. 7. 14.)

166) 신청인 김○화 진술조서(2002. 7. 14.)

16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12.)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1943生, 이웃)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석산리에서 50명 넘는 사람들이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다. 동네 도로 공사한다고 삽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사람들이 나갔다. 이때 곡리마을 보도연맹원인 김○찬이 나갔고 보도연맹원들은 목화창고에 간혔다. 1950년 8월 17일(음력 7월 4일)에 나의 누나가 목화창고에 가 보니 창고가 비어있었다고 한다.¹⁶⁸⁾

당시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한 참고인 김○○(1942生, 이웃)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김○찬은 300m 미만 거리에 살던 이웃이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목화창고에 간혔었다. 목화창고에 간힌 채○원, 김○찬, 유○줄의 아내들이 모여 목화창고에 밥을 가져다주러 가는 것을 봤다.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몇 명씩 없어졌다고 한다. 석산리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제삿날도 조금씩 다르다.¹⁶⁹⁾

당시 김○찬이 양산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 김○○(1937生, 이웃, 동면 석산리 월리마을 거주)에 따르면, 김○찬은 1950년 음력 6월 말경 경찰에 의해 양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 후 연행된 사람들이 목화창고에 갇혀있다가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¹⁷⁰⁾

제적등본에 김○찬에 대하여 1955년 7월 5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8년 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종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족보에는 김○찬의 사망 일자가 1955년 7월 5일로 기재되어 있다.¹⁷¹⁾ 김○찬의 제삿날은 목화창고가 비워지기 전날인 음력 7월 2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찬과 관련하여 제적등본, 족보, 『기초사실조사표』를 확인하였다.

○ 『기초사실조사표』에 김○찬에 대해 ‘피해 형태: 총살, 피해 유형: 보도연맹, 사건 내용: 마을에 구장이 찾아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게 보도연맹에 가입이 되어 북부동 목화창고에 감금되어 사배골짜기에서 총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언자 : 김○○¹⁷²⁾)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김○찬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및 출두 경위와 구금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들이 김○찬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및 연행, 구금 정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참고인 김○○이 김○찬이 연행·구금되는 광경을 목격한 점, (3) 김○찬의 실종선고 판결에서 실종기간 기산점이 1950년 7월 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고, 족보

168) 홍○○의 아버지 홍○희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신청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홍기훈 전화조사 약식조서(2009. 7. 14.)

169)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9. 27.)

170) 참고인 김○○은 김○찬을 포함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일렬로 세워서 양산경찰서로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 또한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김○○은 목화창고에 있는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서 김○찬을 목격하였다. 김○○의 아버지는 후에 목화창고에서 동면자서로 이송되었고 후에 풀려났다. 참고인 김○○ 진술조사(2022. 9. 27.)

171) 제적등본에 기재된 실종선고 내용을 족보에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도 김씨 세보』, 1985. 5. 발행.

172) 김○○은 진실규명대상자 김○찬의 아들, 신청인 김○희의 형이다.

또한 이와 같게 기재되어 있는 점, (4) 김○찬의 제삿날이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5) 이 사건 발생 『기초사실조사표』의 내용이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찬(2다-7526)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⁷³⁾

3) 상북면

상북면은 남쪽으로 삼성동과 강서동, 북쪽으로 하북면, 동쪽으로 용상지역, 서쪽으로 원동면 등과 인접하고 있다. 상북면은 석계리, 대석리, 소토리, 소석리, 상삼리, 좌삼리, 내석리, 외석리, 신전리 등 9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다.¹⁷⁴⁾

상북면에서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는 강○문(2다-5761), 서○준(2다-7505), 서○문(2다-7523), 차○달(2다-7522)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과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진실규명대상자의 족보, 제적등본, 『기초사실조사표』, 지역 향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가) 진실규명대상자 강○문 (2다-5761, 신청인 강○근)

진실규명대상자 강○문(姜○文, 1924生, 농업)은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에 거주하던 중 경찰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강○근(1946生, 아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강○문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 그 후 1950년 음력 7월 3일(1950년 양력 8월 16일)경 같은 마을에 살던 김○률¹⁷⁵⁾과 같은 날 양산경찰서 상북지서의 소집을 받고 출두하였다. 강○문이 김○률과 함께 상북지서로 가는 모습을 김○○(강○문의 어머니), 김○○(강○문의 처), 김○률의 아내가 보았다.

이후 가족들은 강○문과 김○률이 양산경찰서로 이송되어 양산군청 옆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동(김○률의 장남,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9024 신청인)이 목화창고에 있던 김○률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는데, 김○동이 목화창고에 두 번째 갔을 때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¹⁷⁶⁾

173) 제적등본, 족보, 제삿날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김○찬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5일(음력 7. 2.)로 판단하였다.

174) 상북면지편찬위원회, 『상북면지』, 2009, 116쪽.

175)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9024.

176)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을 발굴하였는데 김○○이 3일 동안 참여했다. 유골 발굴 작업 즈음해서 집마다 참여할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장에 작성하였는데 신청인은 그 대장을 김○률의 집에 전달하였다. 유골 수습 후 유족회의 주관으로 춘추원에 합동 묘가 조성되었다. 위령비를 세워 합동위령제를 지냈고, 신청인과 김○○이 참석하였다. 유족들이 비석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 비석을 붙잡고 울었다. 신청인 강○근 진술조사(2022. 7. 26.)

이후 강○문의 가족들은 강○문을 포함하여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

5·16군사쿠데타가 있고 얼마 후 신청인이 양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무렵, 수업 중에 양산경찰서 사찰계에 가서 조사받았다. 경찰서에는 이미 김○동, 황○○¹⁷⁷⁾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¹⁷⁸⁾ 신청인은 당시 석계리 구소석마을에서 김○률¹⁷⁹⁾, 김○한¹⁸⁰⁾, 황○룡¹⁸¹⁾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¹⁸²⁾

이 사건 당시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 덕대골¹⁸³⁾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36生, 이웃)¹⁸⁴⁾은 구소석마을(덕대골) 국민보도연맹원 가입 및 구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맨 먼저 아버지(김○률)와 황○룡이 잡혀갔고, 하루 이틀 사이로 김○한, 강○문 등 덕대골에서 총 4명이 잡혀갔다. 처음에는 상북지서로 갔다가 양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 후 양산경찰서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밥을 전하러 갔다.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출두한 복장 그대로 삼베옷을 입고 있었다.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1950년 음력 7월 3일 새벽에 양산과 부산의 경계인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 1950년 음력 7월 2일까지 목화창고에 밥을 가져갔는데 7월 3일 목화창고에 가니 창고 안에 사람들이 없었다.¹⁸⁵⁾

또한 당시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 덕대골에 거주한 참고인 김○○¹⁸⁶⁾(1942生, 이웃)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강○문은 한국전쟁 빌빌 전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1950년 음력 7월 2일경 아버지(김○률)와 황○룡이 상북지서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하였고, 강○문은 1950년 음력 7월 3일경 김○한과 함께 상북지서에 출두하였다고 한다. 이후 출두한 사람들이 옛 양산군청 옆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하여 형(김○동)이 아버지에게 목화창고에 도시락을 가져다줬다고 한다.¹⁸⁷⁾

177) 2다-2614 진실규명대상자 황○룡의 동생.

178) 김○동, 황○○은 모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황○○의 형 황○룡, 김○동의 아버지 김○률이 보도연맹사건으로 강○문과 같이 희생되었다. 신청인 강○근 진술조서(2022. 7. 26.)

179)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9024.

180)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7829.

181) 2다-2614 진실규명대상자.

182) 신청인 강○근 진술조서(2022. 7. 26.)

183) 덕대골마을은 구소석마을 안에서도 약간 떨어진 곳으로 6~7가구가 살았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3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30.) 상북면지에서는 ‘덕대골’을 ‘구소석마을 내 지명’에서 소개하고 있고 ‘위천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뒤에 덕대골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북면지편찬위원회, 『상북면지』, 2009, 149쪽.

184) 김○동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9024(진실규명대상자 김○률)의 신청인이며, 김○률은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8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동 진술조서(2008. 4. 29.)

186) 김○○은 김○률의 아들이자, 김○동의 동생이다.

18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30.)

사건 당시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 덕대골에 거주한 참고인 김○○(1941生, 이웃)¹⁸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강○문은 바로 앞집에 살았던 사람이며, 김○○(김○○의 형)과 친구였다. 구소석마을 덕대골에서 김○률, 황○룡, 강○문, 김○한, 김○호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김○한의 경우 1950년 음력 7월 3일 점심 먹을 무렵 형사들 두 명 정도가 집에 와서 연행했다. 덕대골 국민보도연맹원들도 이와 비슷하게 연행되었을 것이다. 그 후 소문에 잡혀간 사람들이 목화창고에 갇혔다고 하였다. 목화창고에 갇힌 사람들은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¹⁸⁹⁾

사건 당시 상북면 석계리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26生, 이웃)에 따르면, 김○한, 김○률, 황○룡, 강○문이 국민보도연맹으로 연행되었다. 그 후 부산과 양산 사이 골짜기에서 희생되었다.¹⁹⁰⁾

제적등본에는 강○문의 사망 일자가 1953년 3월 23일로 기재되어 있다.¹⁹¹⁾ 강○문의 제삿날은 강○문이 경찰서로 출두한 음력 7월 3일(1950년 양력 8월 16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강○문과 관련하여 『기초사실조사표』를 확인하였다.

○ 『기초사실조사표』에 강○문에 대해 ‘피해 형태: 행방불명, 피해 유형: 보도연맹, 사건 내용: 보도연맹으로 가입되었다고 하여 끌려가서 행방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언자 : 정○○¹⁹²⁾)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강○문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출두와 구금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¹⁹³⁾, (2) 강○문의 제삿날이 음력 7월 3일(1950년 양력 8월 16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3) 『기초사실조사표』의 내용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강○문(2다-5761)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 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¹⁹⁴⁾

188) 김○○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7829(진실규명대상자 김○한)의 신청인이며, 김○한은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18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30.)

19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전화조사 약식조서(2009. 5. 8.)

191)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 시기가 이처럼 신고된 이유에 대해서 신청인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봄 뒤늦게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강○근 진술조서(2022. 7. 26.)

192) 정○○은 진실규명대상자 강○문의 이웃이다.

193) 구소석마을 덕대골의 국민보도연맹원 연행일이 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조금씩 상이하나, 신청인 강○근, 참고인 김○○ 등은 사건 당시 나이가 어렸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아니기에 참고인 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94) 제적등본 사망일이 상이하나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강○문이 1950년 8월 하순경 희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나) 진실규명대상자 서○준 (2다-7505, 신청인 서○연),
진실규명대상자 서○문 (2다-7523, 신청인 서○순)

진실규명대상자 서○준(徐○俊, 이명 : ○준, 1918生, 농업)과 서○문(徐○汶, 1917生, 농업)은 이웃이며, 양산군 상북면 좌삼리에 거주하던 중 양산경찰서 상북지서로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서○연(1948生, 서○준의 딸), 서○준(1948生, 서○문의 딸)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후, 좌삼리에 빨치산들이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경비를 섰다. 서○준과 서○문은 함께 경비를 서다가 빨치산들을 만났고 그다음 날 상북지서에 신고했다. 그 후부터 상북지서 경찰들은 서○준과 서○문이 빨치산과 접촉하였다고 의심하여 상북지서로 수시로 불렀다. 그 후 상북지서에서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안 불려 다닌다. 도장만 주면 조사받으려 안 와도 된다.’라고 하여 서○준과 서○문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여름날 서○준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연행되었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다. 주변 친인척들이 서○준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였는데 서○준은 ‘나는 빨치산도 아니고 죄를 짓지도 않았으니 숨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숨지 않았다. 서○준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 서○준을 연행하여 목화창고에 구금하였다. 목화창고 부근에 살고 있던 서○○(서○준의 조카)이 도시락을 목화창고에 전달했다. 서○문 또한 비슷한 시기에 양산경찰서 경찰에게 잡혀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신○○(서○문의 어머니)이 주먹밥을 해서 서○문을 면회하였다. 어느 날 신○○이 목화창고에 갔더니 창고가 비어있었다.

이후 서○준과 서○문의 가족들은 양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동면 사배고개 등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준과 서○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¹⁹⁵⁾

당시 목화창고에 갇혀있는 서○준에게 도시락을 전달한 참고인 서○○(1937生, 서○준의 조카, 당시 양산면 북부동 거주)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옛 양산군청(현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살고 있었다. 내가 양산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어느 여름날, 어머니가 작은아버지(서○준)가 목화창고에 갇혀있으니 밥을 가져다주라 하여 삼베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가져다주었다. 구운 두부조림, 오이무침 등 3가지의 반찬이 든 도시락이었다. 도시락을 가져가니, 문지기가 두 명 있었다. 목화창고 밖을 서성거리고 있으니 문지기가 왜 왔냐고 물었고 작은아버지 밥 가져다주러 왔다고 하니 이름을 물었다. ‘서○준’이라고 하니 문지기가 서○준(서○준)을 불렀다. 서○준이 밥을 받으러 나오려고 하니 문지기가 서○준에게 들어가라고 하였고, 밥을 두고 가라고 해서 문지기에게 밥을 주고 돌아왔다. 다음 날 다 먹은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두 번 정도 밥을 전달했다.¹⁹⁶⁾

195)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양산 춘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나○○(서○준의 처)과 김○○(서○문의 처)가 함께 다녀왔다. 신청인 서○연 진술조서(2022. 7. 26.); 신청인 서○준 진술조서(2022. 4. 4.)

196) 참고인 서○○ 진술조서(2022. 10. 1.)

사건 당시 상북면 좌삼리에 거주한 참고인 서○○(1943生, 서○준의 친척)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서○준은 30~50m 떨어진 곳에 살았고, 서○준이 돌아가신 후 그 집 농사를 도와주면서 서○준의 처에게 서○준이 사망한 얘기를 종종 들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마을 사람들이 빨치산에게 짐꾼으로 잡혀가기도 했는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안 끌려가도 된다고 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한다.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위해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도 서○준의 처가 찍은 거라고 하였다. 이웃인 서○문의 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서○준, 서○문은 동면 사배고개, 남락고개에서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¹⁹⁷⁾

이 사건 당시 상북면 좌삼리에 거주한 참고인 서○○(1938生, 서○문의 동생)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후 서○문이 뒷집에 사는 서○준과 경비를 섰다. 그 후 상북지서에서 서○문과 서○준을 불러, 두 사람이 지서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1950년 음력 7월 2일경 여느 때처럼 지서에 두 사람이 갔다. 서○문이 집에 오지 않아 부모님이 지서에 갔더니 지서 경찰이 자기들은 모르고 ‘보도연맹으로 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후 사배고개에서 서○문, 서○준을 비롯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¹⁹⁸⁾

제적등본에 서○준에 대하여 ‘1968. 2. 26. 실종선고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문의 사망 일자는 1966년 1월 13일로 기재되어 있다.¹⁹⁹⁾ 죽보에는 서○준이 1950년 사망한 것으로, 서○문은 1950년 7월 2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⁰⁰⁾ 서○준과 서○문의 제삿날은 두 사람이 경찰서로 출두한 1950년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준, 서○문과 관련하여 『기초사실조사표』를 확인하였다.

- 『기초사실조사표』에 서○준에 대해 ‘피해 형태: 행방불명, 피해 유형: 보도연맹, 사건 내용: 보도연맹으로 가입되었다고 하여 끌려가서 행방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언자 : 서○○²⁰¹⁾)
- 『기초사실조사표』에 서○문에 대해 ‘피해 형태: 행방불명, 피해 유형: 보도연맹, 사건 내용: 보도연맹으로 가입되었다고 하여 끌려가서 행방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언자 : 서○○²⁰²⁾)

197) 참고인 서○○ 진술조서(2022. 10. 1.)

198) 신청인 서○준 진술조서(2022. 4. 4.)

199) 신청인 서○연은 서○준의 사망 시기가 이처럼 신고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서○준은 할아버지가 뒤늦게 서○문의 사망에 대해 신고하였는데 신고된 서○문의 사망 시기가 실제 사망 시기와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서○연 진술조서(2022. 7. 26.); 신청인 서○준 진술조서(2022. 4. 4.)

200) 모두 『달성 서씨 감공파보』, 2018. 10. 20. 발행.

201) 서○○는 진실규명대상자 서○준의 이웃이다.

202) 서○○는 진실규명대상자 서○문의 이웃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들이 서○준, 서○문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연행 및 구금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참고인 진술이 확보된 점, (2) 참고인 서○○이 이 사건의 구금 장소인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서○준을 목격한 점, (3) 서○준, 서○문의 제삿날이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며, 족보에도 서○준의 사망 연도가 1950년, 서○문의 사망일이 1950년 7월 2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4) 『기초사실조사표』의 내용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서○준(2다-7505)과 서○문(2다-7523)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²⁰³⁾

다) 진실규명대상자 차○달 (2다-7522, 신청인 차○순)

진실규명대상자 차○달(車○達, 이명 : ○서, 1926生, 농업)은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감결마을에 거주하던 중 양산경찰서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한 뒤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희생되었다.

신청인 차○순(1950生, 딸)에 따르면, 차○달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후 차○달이 목화창고에 갇히게 됐고 황○○(차○달의 어머니)이 면회를 몇 번 하였다. 차○달이 목화창고에 갇혀있을 때 돈을 조금만 쓰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최○○(차○달의 처)이 이를 황○○에게 전달하였다. 황○○이 차○달에게 돈을 쓰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하니 차○달은 ‘죄도 없는데 그럴 필요 있나?’라고 하며 거절하였다. 그 후 어느 날 창고에 가니 사람들이 없었다. 황○○은 그때 차○달을 못 빼낸 게 한이 된다고 하였다.

이후 차○달의 가족들은 차○달을 포함한 양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차○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²⁰⁴⁾

차○달의 사촌 여동생 차○○의 아들 강○○(1955生, 5촌 조카)는 차○○, 차○○(차○달의 사촌, 차○○의 오빠), 차○○(차○달의 여동생)에게 들은 얘기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얼마 후, 해 질 무렵 집에 짊은 사람들 몇이 와서 차○달에게 잠깐 보자고 했다. 차○달은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사라졌다. 잠깐 나갈 거라고 신발도 허술하게 신고 나갔다고 한다. 그 후 차○○은 차○달의 행방을 수소문하였고, 차○달이 어느 창고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았다. 차○○이 먹을 것을 가지고 차○달이 있는 창고에 가니 창고 앞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창고 안에 사람이 여럿 있었다. 차○○은 차○달을 불러내어 도망가라고 하였다. 차○달은 ‘내일 아침 되면 다 보내준단다. 지금 가면 내가 진짜 죄인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하며 거절하였다. 차○○이 다음날 다시 창고에 가 보니 창고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203) 제적등본 사망일이 상이하나 족보와 제삿날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서○준과 서○문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5일(음력 7. 2.)로 판단하였다.

204)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양산 춘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여기에 황○○이 참여했다. 신청인 차○순 진술조사(2022. 4. 4.)

그 무렵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소리가 여러 번 났다는 소문이 났다. 차○○, 차○○, 차○○가 모이기 만 하면 차○달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차○달의 여동생 차○○는 차○○에게 그때 왜 더 적극적으로 빼내지 못 했냐고 하소연했다.²⁰⁵⁾

사건 당시 상북면 소토리 감결부락에 거주한 차○○의 딸 참고인 차○○(1949生, 5촌 조카)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차○달은 국민보도연맹 관련으로 누군가에게 잡혀서 창고에 갇혔다고 한다. 아버지(차○○, 차○달의 사촌)가 달밤에 창고에 찾아가 차○달을 불러내 숨어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내일이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더라. 지금 도망가자.’라고 하였고 차○달은 ‘내일이면 보내 준단다. 여태 내가 여기서 고생한 시간이 있는데 그냥 나가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그다음 날 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 총살당했다고 한다.²⁰⁶⁾

이 사건 당시 상북면 소토리에 거주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1925生, 이웃)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마을에) 빨치산이 와서 차○달 외 몇 명의 이름을 적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경찰에 잡혀 가 죽었다고 들었다. 차○달은 당시 결혼해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 이름이 차○○²⁰⁷⁾이었다. 끌려간 사람들은 면 창고에 갇혀있었다고 한다. 잡혀간 사람들 어머니들이 밥을 해서 며칠간 날랐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있었다고 한다.²⁰⁸⁾

차○달의 제삿날은 차○달이 집에서 나간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차○달과 관련하여 『기초사실조사표』를 확인하였다.

- 『기초사실조사표』에 차○달에 대해 ‘피해 형태: 행방불명, 피해 유형: 보도연맹, 사건 내용: 보도연맹으로 가입되었다고 하여 끌려가서 행방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언자 : 지○○²⁰⁹⁾)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차○달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및 구금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된 점, (2) 차○달의 제삿날이 음력 7월 2일(1950년 양력 8월 15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3) 『기초사실조사표』의 내용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차○달(2다-7522)은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양산경찰서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하여 목화창고에 구금된 후 1950년 8월경 동면 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²¹⁰⁾

205) 참고인 강○○ 진술조서(2022. 9. 28.)

206) 참고인 차○○ 진술조서(2022. 11. 15.)

207) ‘차○○’은 차○○의 이명이다. 참고인 차○○ 진술조서(2022. 11. 15.)

20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14.)

209) 지○○은 진실규명대상자 차○달의 이웃이다.

210) 제삿날을 근거로 하여 차○달의 희생일을 1950년 8월 15일(음력 7. 2.)으로 판단하였다.

다. 구금 및 희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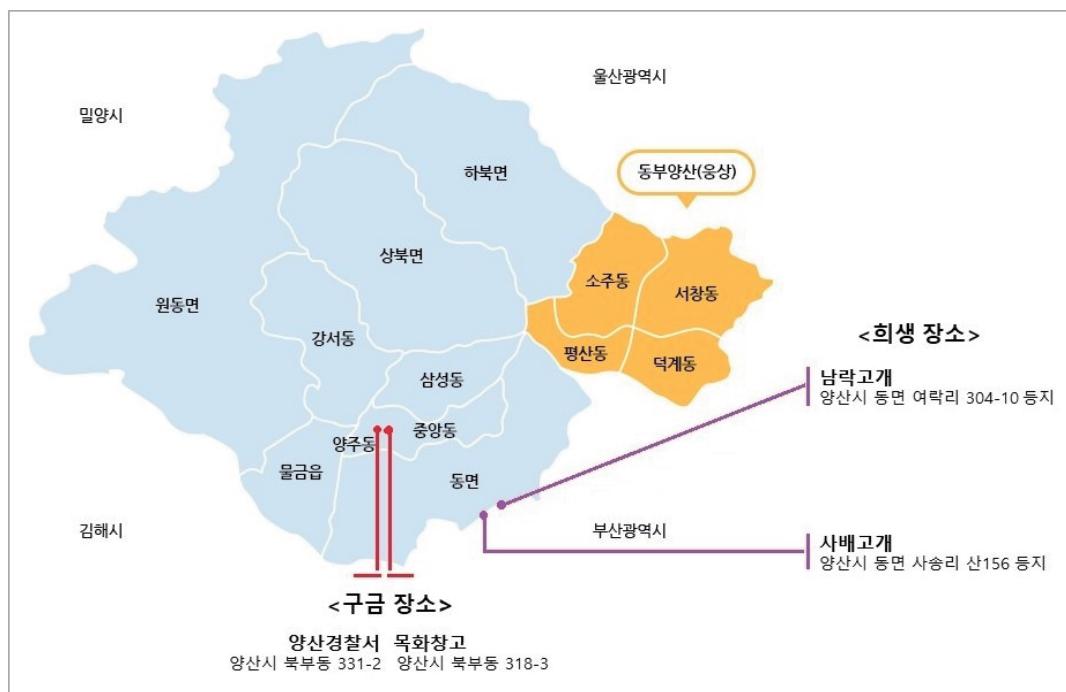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참고인 진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기초사실조사표』 등을 검토하여 (1) 양산경찰서(양산시 북부동 331-2. 현,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2) 목화창고(양산시 북부동 318-3, 현 세종빌딩) 등 총 2곳을 이 사건의 주요 구금장소로, (1) 사배고개(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56 등지), (2) 남락고개(양산시 동면 여락리 304-10 등지) 등 총 2곳을 이 사건의 주요 구금 및 희생 장소로 판단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중 양산경찰서, 목화창고, 사배고개, 남락고개에 대해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 현장조사를 하였다.

참고인 김○○은 “주요 희생 장소로 거론되는 양산군 동면 사배고개, 남락고개, 부산 녹동고개(부산 금정구 노포동 일대) 일대는 양산 사람들은 엄격하게 나누어 구분하지 않는 장소이며, 지금은 그 일대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학살지도 많이 훼손되었다. 사배마을, 남락마을, 녹동마을 인근 주민들이 해당 고개에서 총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²¹¹⁾

당시 양산경찰서, 목화창고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상업건물로 이용되고 있고, 사배고개, 남락고개 등지는 재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지형지물의 변화가 심하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거나 현장을 잘 아는 참고인을 파악하지 못해 현장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구금 장소 및 희생 장소의 위치는 <그림 3>과 같다. 현장 위성사진 등은 <붙임 (그림) 6>과 같다.

<그림 3>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구금 장소와 희생 장소



21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9. 27.)

1) 구금 장소

① 양산경찰서

1950년 당시 양산경찰서는 현재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자리(양산시 북부동 331-2)에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구금 장소 및 희생 장소에 대하여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 현장조사를 하였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양산경찰서를 이 사건의 구금 장소로 판단했다.

일부를 제외하면 양산 각 읍면 국민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8월 초순부터 관할 지서 단위로 소집되었다가 이송되어 양산경찰서 유치장, 양산경찰서 인근 목화창고에 나뉘어 구금되었다.²¹²⁾ 국민보도연맹원들은 활동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고, A급(혹은 갑)은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B·C급(혹은 을·병)은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²¹³⁾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차경애 진술에 따르면, 양산경찰서에는 유치장이 4개 있었다. 처음에는 3곳에 남자들이, 1곳에 여자들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치장 4곳에 모두 남자들이 수용되었고 여자들은 경찰서 목욕탕에 수용되었다.²¹⁴⁾

② 목화창고

1950년 당시 목화창고는 현재 상업건물이 있는 자리(세종빌딩, 양산시 북부동 318-3)에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양산경찰서에 대해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 현장조사를 하였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목화창고를 이 사건의 구금 장소로 판단했다.

목화창고는 일본 강점기에 공출된 목화를 일본으로 이출하기 전까지 모아놓던 함석지붕의 목조건물로,²¹⁵⁾ 2개의 건물이 도로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가 있었다.²¹⁶⁾ 목화창고에는 철조망도 없이 새끼줄이 쳐져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총을 든 경찰 2명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²¹⁷⁾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1950년 8월 초순부터 예비검속된 사람이 백 명 단위를 넘어감에 따라 연행되거나 소집된 연맹원들을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지자, 양산경찰서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목화창고에 나누어 구금한 것으로 확인된다.²¹⁸⁾

양산중학교, 양산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목화창고를 지나 학교로 이어진 길('희망고개'라고 불

212)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800쪽.

21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정○○ 진술조사(2009. 5. 11.);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사(2009. 5. 12.)

2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차○애 진술조사(2007. 8. 23.)

21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동 진술조사(2008. 4. 29.)

216) 참고인 박○○ 진술조사(2022. 11. 16.)

217) 참고인 안○○ 진술조사(2022. 9. 29.)

21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안○원 진술조사(2008. 8.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장○화 진술조사(2008. 6.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이○윤 진술조사(2008. 6. 12.)

림)을 따라 등교하였기 때문에 목화창고에 사람들이 구금된 것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²¹⁹⁾

2) 희생 장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1950년 7월부터 1950년 8월까지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양산 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중하순경 여러 차례에 나뉘어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와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지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60년 신문 자료에 따르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와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외에도 춘추원 경찰 사격장, 상북면 석래리 지푸네 골짜기 등이 희생 장소로 거론²²⁰⁾되었으나 이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²²¹⁾

양산 유족회는 1960년 7월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 발굴에 나서 총 712구를 수습하였고, 춘추원 합동묘 앞에 희생자 6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웠다.²²²⁾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거 하였다.²²³⁾

신청인, 참고인 진술, 『기초사실조사표』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주요 희생 장소는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양산군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이다.²²⁴⁾

①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²²⁵⁾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56 일대를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참고인 진술, 『기초사실조사표』의 증언 등을 통해 사배고개를 이 사건의 희생장소로 판단하였다.²²⁶⁾

사배고개가 있는 사배마을은 남쪽으로는 계명산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녹동마을과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동면 외송마을과 접하고 있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신도시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 사배마을 원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여 없고,²²⁷⁾ 현장에서 시신을

219) 신청인 박○권 진술조서(2022. 4. 4.); 신청인 박○구 진술조서(2022. 4. 4.); 신청인 박○구 진술조서(2022. 11. 1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11. 15.)

220) 『국제신보』, 1960. 5. 28.

221)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802쪽.

222)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경상남도사』 5권, 경남신문, 2020, 273쪽.

223)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09쪽.

224) 다만, 양산읍사에서는 희생 장소를 동면 사배고개, 동면 여락고개(남락고개) 및 동면의 호포 뒷산과 양산의 교리 화승신발공장 서편 50여m 떨어진 산 등으로 추정하고 있고, 동면지에서는 동면 사배고개·금산·석산·호포·교리 뒷산, 내원사 입구 등지를 집단 희생 장소라고 추정하였으나 사배고개, 남락고개 외의 희생 장소에 대한 진술과 증언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58쪽;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09쪽.

225) 사배고개는 지경고개, 사배재, 당고개라고 불리며 사배마을 남동쪽에서 부산광역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95쪽.

226)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2. 11. 1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 11. 16.)

227)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90쪽.

수습한 참고인이 파악되지 않아 사배고개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양○만은 당시 양산경찰서 트럭 운전을 하던 양성구가 1950년 음력 7월 7일 국민보도연맹원을 싣고 사배고개로 가는 트럭을 운전하였으며, 그 트럭에는 양○식²²⁸⁾, 양○구의 친형도 타고 있었다는 것을 양○구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²²⁹⁾

『기초사실조사표』에서도 양산 주민들이 이 사건 당시 사배고개(사배골짜기로 기재)로 끌려가 희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²³⁰⁾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는 양산시 동면 여락리 304-10 일대를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남락고개를 이 사건의 희생 장소로 판단하였다.

남락고개는 사배고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사배고개와 남락고개 사이를 경부고속도로와 1077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고, 사배고개, 남락고개 일대에 신도시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 과거의 지형은 현재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남락고개에서 시신을 수습한 참고인이 파악되지 않아 남락고개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건조사 결과

가. 희생자 수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신문 기사와 도서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당시 사배고개와 남락고개 등지에서 약 7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 『부산일보』는 “양산군 동면, 원동면, 물금면, 용상면, 북면, 양산면, 하북면 7개 면에도 83년(1950년) 8월 24일 주민 700여 명이 빨치산 토벌을 하기 위하여 주둔했던 육군 제23연대와 김○○이 지휘하는 부대와 현지 경찰 등에 의하여 빨치산으로 몰려 총살되었음이 밝혀졌다.”라고 보도하였다.²³¹⁾ 또한, 1960년 『국제신보』에 따르면 양산군 주민 750여 양민이 빨치산으로 몰려 죽었다고 하였다.²³²⁾

1960년 합동위령제에 참여했던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배○갑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28)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2398.

22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양○만 진술조사(2009. 5. 14.)

230) 남락고개는 동면 내송리 동쪽에서 여락리의 남락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로, 남락마을은 남으로는 부산광역시 노포동·두구동과 경계를 이루며, 북으로는 산지 마을과 이웃해 있다.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77쪽, 209쪽.

231) 『부산일보』, 1960. 5. 21;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2002, 135쪽.

232) 『국제신보』, 1960. 5. 28.

1960년 가을에 국민보도연맹 유가족들이 모여서 지금의 경부고속도로 양산과 부산의 경계 지점 부근에서 600여 구의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하고 분골 일부를 양산 교리 춘추원에 봉안하였다. 법당 뒤에는 희생자 6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웠고 제사도 지냈다. 그런데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뒤 군사정권에서 국민보도연맹 유가족단체를 해산시키고 위령비를 파손하였다.²³³⁾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적등본과 족보 등 관련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이 사건의 희생자 총 19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자 신원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사실조사표』, 제적등본 등의 공적 기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일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 (2) 위와 같은 기록이 없는 경우, 족보, 제삿날, 시신 수습 여부, 행형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이 사건의 희생자 19명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성명 (한자, 성별, 출생 연도)	당 시 거 주 지	직 업	1기 진실화해 위원회 기초사실 (2009)	제적 등본 (사망 /실종)	족보	행형 기록	기타	목격	전문	시신 수습	제사	기타	
양산면 (9명)															
1	1371	박○식 (朴○植, 남, 1926)	산 막 동	기 타			1950. 7. 3. 사망				류○○ (1931, 이웃)		7.2. (음)		희생 확인
2	1372	김○도 (金○道, 남, 1924)	산 막 동	농 업		1955. 7. 10. 실종기간 만료 1968. 선고				류○○ (1931, 이웃)	김○○ (1936, 친척)				희생 확인
3	1373	박○수 (朴○銖, 남, 1914)	호 계 동	농 업			1950. 6. 27. 사망			김○○ (1930, 조카)		6.27. (음)	2다- 1372 신청인 김○수 진술 (전문)		희생 확인

23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배○갑 진술조서(2008. 9. 11.)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 진술					
		성명 (한자, 성별, 출생 연도)	당 시 거 주 지	직 업	1기 진실화해 위원회 기초사실 (2009)	제적 등본 (사망 /실종)	족보	행형 기록	기타	목격	전문	시신 수습	제사	기타	
4	1376	김○준 (金○俊, 남, 1924)	호 계 동	근 로 자		1955. 7. 10. 실종기간 만료 1968. 선고	1955. 7. 10. 사망			안○○ (1935, 매부)			6.18. (음)		희생 확인
5	7511	박○종 (朴○鐘, 남, 1931)	명 곡 동	농 업		1955. 7. 실종기간 만료 1967. 선고				박○○ (1936, 친척)			7.4. (음)	신청인 구금 목격	희생 확인
														2다- 7512 신청인 박○권 진술 (전문)	
														2다- 7514 신청인 박○종 진술 (전문)	
6	7512	박○희 (朴○熙, 남, 1930)	명 곡 동	농 업		1955. 실종기간 만료 1967. 선고				박○○ (1936, 친척)			7. (음) 불상 일	신청인 구금 목격	희생 확인
														2다- 7511 신청인 박○구 (전문)	
														2다- 7514 신청인 박○종 진술 (전문)	
7	7514	박○옥 (朴○鉉, 남, 1928)	명 곡 동	농 업		1955. 7. 실종기간 만료 1967. 선고				박○○ (1936, 친척)	1기 김○○ (1927, 이웃)		9.9. (음)	2다- 7511 신청인 박○구 (목격)	희생 확인
														2다- 7512 신청인 박○권 진술 (전문)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제사	기타	
		성명 (한자, 성별, 출생 연도)	당 시 거 주 지	직 업	1기 진실화해 위원회 기초사실 (2009)	제적 등본 (사망 /실종)	족보	행형 기록	기타	목격	전문			
8	8227	황○수 (黃○壽, 남, 1915)	남부동	농업 등		1954. 7. 5. 사망				박○○ (1943, 이웃)	○	7.14. (음)	묘비 기재 사망일 1950. 7.15.	희생 확인
9	10069	박○생 (朴○生, 남, 1908)	남부동	농업		1955. 7. 10. 실종기간 만료 1969. 선고				이○○ (1951, 며느리) 안○○ (1934, 며느리)	○	7.15. (음)		희생 확인
동면 (6명)														
10	3588	김○철 (金○喆, 남, 1929)	석산리	농업	○ (김○삼, 신청인)	1955. 7. 5. 실종기간 만료 1968. 선고	1955. 7. 5. 생사 불명			김○○ (1933, 이웃)	1기 안○○ (1928, 이웃) 김○○ (1942, 이웃)	9.9. (음)	신청인 연행 목격	희생 확인
11	7506	박○표 (朴○杓, 남, 1922)	석산리	근로자				판결문 (1949. 6.1.)	좌익 사건 실록 (6권) 기재	김○○ (1933, 이웃) 김○○ (1942, 이웃) 1기 안○○ (1928, 이웃) 1기 김○○ (1923, 이웃) 박○○ (1956, 조카)	○ 196. 유골 수습	6.27. (음)		희생 확인
12	7508	김○환 (金○煥, 남, 1927)	석산리	농업	○ (김○○, 조카)	1955. 7. 5. 실종기간 만료 1968. 선고	형사 사건부 (1949. 10. 24. 불기소)	좌익 사건 실록 (7권) 기재	1기 김○○ (1923, 이웃) 1기 안○○ (1928, 이웃) 1기 박○○ (1942, 이웃) 김○○ (1943, 이웃)				희생 확인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제사	기타		
		성명 (한자, 성별, 출생 연도)	당 시 거 주 지	직 업	1기 진실화해 위원회 기초사실 (2009)	제적 등본 (사망 /실종)	족보	행형 기록	기타	목격	전문				
상북면 (4명)															
16	5761	강○문 (姜○文, 남, 1924)	석 계 리	농 업	○ (정○○, 이웃)							1기 김○○ (1936, 이웃)	7.3. (음)	희생 확인	
												1기 김○○ (1926, 이웃)			
												김○○ (1941, 이웃)			
												김○○ (1942, 이웃)			
17	7505	서○준 (徐○俊, 남, 1918)	좌 삼 리	농 업	○ (서○○, 이웃)		1950. 사망	서○○ (1937, 조카)	서○○ (1943, 친척)			7.2. (음)	2다- 7523 신청인 서○준 진술 (전문)	희생 확인	
18	7522	차○달 (車○達, 남, 1926)	소 토 리	농 업	○ (지○○, 이웃)	-						1기 이○○ (1925, 이웃)	7.2. (음)	희생 확인	
												강○○ (1955, 조카)			
												차○○ (1949, 조카)			
19	7523	서○문 (徐○汶, 남, 1917)	좌 삼 리	농 업	○ (서○○, 이웃)		1950. 7. 2. 사망					서○○ (1938, 동생)	7.2. (음)	2다- 7505 신청인 서○연 진술 (전문)	희생 확인

나. 희생자의 특징

조사 결과, 희생자의 나이는 대부분 20대(11명, 57.9%)와 30대(6명, 31.6%)였고, 전원 남성이었다.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다수(16명, 84.2%)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의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19명의 거주지,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희생자 거주지(면)별 분포

거주지	양산면	동면	상북면	합계
희생자 수(명)	9	6	4	19
비율(%)	47.4	31.6	21.0	100

〈표 4〉 희생자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합계
희생자 수(명)	19	0	19
비율(%)	100	0	100

〈표 5〉 희생자 연령별 분포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희생자 수(명)	0	11	6	2	0	19
비율(%)	0	57.9	31.6	10.5	0	100

〈표 6〉 희생자 직업별 분포

직업	농업	공무원	기타 ²³⁴⁾	합계
희생자 수(명)	16	0	3	19
비율(%)	84.2	0	15.8	100

다. 가해 주체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가해 주체를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 경남지구 CIC 소속 군인으로 확인하였다.²³⁵⁾

1) 양산 경찰

신청인 대부분은 이 사건의 가해 기관으로 양산 경찰을 지목하였다.

234) 근로자, 운전사, 국민학교교사.

235)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812쪽.

한국전쟁 발발 전 양산 일부 지역에는 빨치산들의 활동이 잦았다. 빨치산들은 밤에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을 총으로 위협하며 곡식이나 가축을 빼앗아 갔고, 주민들은 양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양식을 빼앗긴 주민들은 그 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²³⁶⁾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빨치산들에게 쌀이나 먹을거리를 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자진 신고한 사람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절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다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중략)...} 어느 날 밤 눈에 물을 대러 나갔는데 경찰이 황○○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다. 경찰이 나도 따라오라고 하였고, 경찰차를 타고 양산경찰서로 갔다.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는 밖에 있었고 황○○는 경찰서 끌려 들어갔는데, 안에서 취조받으며 지르는 비명이 들렸다. 나는 당시 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1950년 읍력 7월 17일 얼마 전, 청년단 사무실(양산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대라도 건물 2층²³⁷⁾)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새벽에 양산경찰서에서 사람을 가득 실은 트럭 몇 대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트럭에는 총을 든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다. 아침에 트럭이 빈 채로 돌아왔으며 그 뒤로 목화창고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2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은 “경찰들이 사람들을 모아 그 중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양산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조금 있다 보내준다고 했다. 그 후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양산경찰서 옆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 양산경찰서 사찰계 형사 조○○가 국민보도연맹원을 죽이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시 양산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찰 소○○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²³⁸⁾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은 “당시 양산경찰서 통신계에 있던 경찰 양○○에게 들키로,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칼빈 총과 오쓰리 기관총을 사용하여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죽였으며, 양산경찰서 경찰들도 자신이 한 일에 충격을 받아 약 보름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²³⁹⁾

236)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6.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2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28.)

237) 대라도 건물(일본인 건물) 2층은 대한청년단 양산단부의 본부 사무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대라도 건물은 현 영보사(양산시 북부동 428-8)가 있는 건물이다. 대한청년단 양산단부는 각 면 단위 조직과 함께 자연마을까지 조직이 강화되어 양산국민학교에 소집하여 훈련받고, 경찰서와 지서 등 경비 근무를 하면서 경찰 업무를 돋고, 빨치산 토벌 작전에 동원되었다. 대한청년단 양산단부는 1946년 10월 이○○을 주축으로 조직되었으며 단장은 서○○, 부단장은 신○○, 박○○, 정○○이었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26~227쪽. 1기 참고인 진실화해위원회 이○○은 진술 당시 자신이 어떤 청년단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 했지만, 대한청년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3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6. 12.)

23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28.)

양산경찰서 9대 서장인 이○○(李○○)는 1949년 6월 9일부터 1950년 5월 10일까지 근무하며²⁴⁰⁾, 당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양산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가입과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²⁴¹⁾ 이후 10대 서장인 채○○(蔡○○)²⁴²⁾은 1950년 5월 10일부터 1950년 11월 5일까지 근무하며²⁴³⁾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대상자에 대한 소집 또는 연행하여 구금한 뒤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에 대한 살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2) CIC 경남지구 소속 군인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와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경남지구 CIC 소속 군인들도 이 사건의 가해 주체로 확인되었다.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경찰서 옆에 있던 통도 병원 건물 2층에 CIC가 주둔하고 있었다.²⁴⁴⁾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정진화는 양산경찰서 옆 통도 병원 2층에 CIC 2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양산경찰서 사찰계와 합동으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에 관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시 양산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했던 유○○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²⁴⁵⁾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차○애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950년 7월 하순 무렵, 차○○과 차○○이²⁴⁶⁾ 보도연맹으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난 젖먹이 아들을 업고 친정에 갔는데, 그날 밤 경찰이 찾아와 (물금)지서로 연행했다. 물금지서 경찰은 잠도 안 재우고 나에게 빨치산 활동을 했는지 물었고, 배후 조직을 말하라고 하며 고문했다. 그리고 나서 물금국민학교 교실로 옮겨져서는 참나무 목도 5개가 부러지도록 맞았다. 그때 나를 고문한 사람은 물금지서 경찰들이 아니라 CIC 대원들이었다. 나중에 CIC 본부에 끌려갔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물금국민학교에서 하루 낮 동안 조사를 받고 쓰리퀴터 트럭에 실려 양산 CIC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240)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Ⅱ』, 1972, 1399쪽.

241) 이는 경상남도사(2020)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1949년 12월 20일부터 양산경찰서장 이○○(李○○)를 비롯한 양산 치안 심판관 고문 최○○(崔○○), 동 간부 등은 군내 각 면 마을을 순회하는 계몽선전대를 조직하고 계몽 연설과 선전공작을 펼쳤다. 이 지역은 좌의 단체 활동가,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각 부문의 단체 회원, 빨치산에게 물품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자들까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경상남도사』 5권, 2020, 272쪽.

242) 『한국경찰사』, 『양산읍사』에는 제10대 양산경찰서장이 채○○(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경찰10년사 및 1950년 양산경찰서 사령원부에는 채○○(蔡○○)이 1950년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양산경찰서장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제10대 양산경찰서장의 성명을 채○○(蔡○○)으로 표기하였다. 「인사기록 자료」(양산경찰서 경무과-11271, 2022. 12. 15.)

243)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Ⅱ』, 1972, 1399쪽.

24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사(2009. 5. 11.); 신청인 박○구 진술조사(2022. 11. 16.)

24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정○○ 진술조사(2009. 5. 11.)

246) 차○애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자신의 오빠 차○록과 동생 차○인(다-9560)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당시 양산 CIC는 사무실로 양산군 통도병원을 쓰고 있었다. CIC 양산 사무실에서 CIC 부관인 고○○²⁴⁷⁾을 확인했다. 계급은 중위였고 내가 본 CIC 대원 중에 유일하게 계급장이 있었던 사람이다. CIC 대장은 대위였는데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에 바로 양산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20일 정도 유치장에 수감 되어있다가 새벽 2시경에 출감했다. 다시 CIC 사무실에 가니 여성들을 잔인하게 전기고문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좌익조직이나 좌익활동가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했다. 나는 자술서를 썼고, 살기 위해 양산군 교리에서 월북한 좌익활동가 유○○의 사촌(이름 미상)을 썼다.

[신청인 차○애 진술조서(2007. 8. 23.)]

『양산읍사』에도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1950년 7월경 양산경찰서에 육군 CIC 요원 3명이 양산경찰서와 연접한 손○○ 가의 2층에 사무실²⁴⁸⁾을 두고 경찰서 사찰계와 양산 보도연맹원에 관해 계속 협의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⁴⁹⁾ 당시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에서 양산경찰서 주변에서 야간 경비 근무를 하며 치안유지에 협조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방위대에 근무한 안○○(당시 79세, 상북면 소석리 거주)는 “하루는 CIC에서 청년단과 함께 사배고개에 방공호를 파러 가자고 하여 약 30여 명과 함께 긴 방공호를 파고 왔는데 후에 듣기로 국민보도연맹원을 그곳에서 사살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⁵⁰⁾

3) 소결

조사 결과,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가해 주체는 양산경찰서 경찰과 경남지구 CIC 소속 군인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CIC 경남지구의 지휘에 따라 CIC 경남지구와 양산경찰서 사찰계에 의해 합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라. 가해의 위법성 여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요시찰 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查 제1799호)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보냈다. 통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7)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위 고○○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자력표를 요청('자료협조 요청', 조사2팀-688, 2009년 7월 31일)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2010, 812쪽.

248)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손○○ 가의 2층은 통도 병원 2층과 동일 장소로 보인다.

249)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유모 씨의 구술에 따른 내용이다.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57쪽.

250)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57~258쪽.

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이었다. 치안국은 추신을 통해 인원과 수용관계를 고려하여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연령·주소를 명기하고 보고할 것’을 아울러 지시하였다.²⁵¹⁾

이어서 치안국은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하였다. 이 중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하달하여 전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²⁵²⁾ 이와 같은 일련의 치안국장 명의의 통첩을 근거로 경남 양산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한 것은 당시 계엄법이나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당시 계엄법²⁵³⁾ 제13조는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송요찬 현병사령관은 1950년 7월 12일, 계엄사령관 정일권의 명령에 의해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조치령이 예비검속의 근거가 되었다. 이후 이 계엄은 7월 21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²⁵⁴⁾

그러나 전시하 계엄법상 체포·구금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전시에 현행법이 아닌 자를 미래의 범죄 위험 가능성만으로 현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제28조²⁵⁵⁾에 규정된 최소피해의 원칙을 포함한 비례의 원칙²⁵⁶⁾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⁵⁷⁾ 또한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예방구금에 관한 「체포·구금특별조치령」 관련 규정에는 그 조건을 ‘군사상 필요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방구금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설사 전쟁 발발 직후 군사상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²⁵⁸⁾

당시 좌익활동혐의자, 부역혐의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령으로는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51)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391~392쪽.

252)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391~392쪽.

253) 「계엄법」(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254)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394, 518~519쪽.

255)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제28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56)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민간인의 희생을 동반하는 공격을 할 경우 군사적 이익에 비해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피해가 과도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521쪽.

257) 1953년 헌법위원회는 계엄법 제13조의 위헌여부 결정 제청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에 수반할 계엄사령관의 공포 또는 포고 중 계엄지구에 있어서는 체포·구금·수색에 관하여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분과 검찰청이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체포·구금·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계엄법 제13조의 법의를 억측곡해함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됨이 명료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위원회 1953. 10. 8. 4286헌위제2호 결정;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소 10년사』, 1998, 75쪽.

258)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10, 521~522쪽.

군사법원에서, 「(구) 형법」, 「국가보안법」, 「비상시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다.²⁵⁹⁾

따라서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²⁶⁰⁾

마. 유족의 피해

1960년 4월 희생자의 유족들 100여 명은 양산 중부동 공회당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희생자 유족회를 구성하였다.²⁶¹⁾ 1960년 7월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총 712구를 수습하였다.²⁶²⁾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 시체를 알아볼 수도, 신원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²⁶³⁾ 시신 발굴 때 양산군수와 양산경찰서장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었고, 유가족들이 유골을 들고 양산군수를 위협한다는 소동이 있었다. 양산경찰서에서 화장용 기름을 제공해주어 유해를 관 다섯 개에 나누어 넣고 춘추월에 매장한 후 비석을 세워 관리해 왔다. 이때 조성된 합동묘봉분과 비석은 5·16군사쿠데타 이후 훼손되었다.²⁶⁴⁾ 희생자의 유족들은 5·16군사쿠데타 직후 체포·구속되어 재판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²⁶⁵⁾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 유족들은 ‘좌의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가족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고통은 당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은 20대~30대 남성으로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한 집안의 가장이 부재하게 되면서 희생자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직업 선택의 한계 또는 제한으로 이어졌다. 또한 남편

259) 1952년 9월 9일 헌법위원회는 ‘특별조치령’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 제76조 제2항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또한 그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되 일케 함이 헌법 제22조 및 제76조 제2항의 대정신이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비상시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는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소 10년사』, 1998, 20~21쪽.

260)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261) 『부산일보』 1960. 5. 28; 양산읍사편찬위원회, 『양산읍사』, 2009, 261쪽.

262)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경상남도사』 5권, 경남신문, 2020, 273쪽.

263) 『항도일보』 1990. 1. 15.

264) 동면지추록편찬위원회, 『동면지』, 2009, 109쪽;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8. 8.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흥○○ 전화조사 악식조서(2009. 7. 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양○○ 진술조서(2009. 5. 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배○갑 진술조서(2008. 9. 11.)

265) 진실화해위원회,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23. 2. 7. 결정.

을 잃은 여성들은 남아 있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품팔이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적 고통을 입고 끝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예도 있었다.²⁶⁶⁾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재가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란 예도 있었다.²⁶⁷⁾

또한 유족들은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원조회 등 연좌제로 취업과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다-1372의 신청인 김○수는 양산시청 공무원으로 입직할 때 다른 합격자들이 발령받는 동안 한동안 발령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²⁶⁸⁾ 2다-7526의 신청인 김○화의 경우, 특무대에 근무하던 숙부 김○○(희생자 김○찬의 동생)이 다른 지방으로 전근하였고,²⁶⁹⁾ 2다-7506의 신청인 박○필의 숙부 박○○(희생자 박○표의 동생)도 외항선을 탈 수 없었다고 한다.²⁷⁰⁾

2다10069의 신청인 김○하의 경우, 둘째 외삼촌 박○○(희생자 박○생의 아들)가 우체국 공무원이었는데 사무관 승진을 못 했고, 다섯째 외삼촌 박○○(희생자 박○생의 아들)가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하였는데 신원조회 문제로 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²⁷¹⁾

이렇듯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죽음 이후 경제적인 궁핍을 겪으며 사회적 냉대와 국가의 감시 및 통제 아래 살아가야 했다. 이 사건의 진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70여 년간 이러한 고통과 차별을 견뎌야 했던 유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의 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266) 신청인 박○일 진술조서(2022. 1. 12.)

267) 신청인 김○구 진술조서(2022. 1. 25.)

268) 신청인 김○수 진술조서(2022. 1. 13.)

269) 신청인 김○화 진술조서(2022. 7. 14.)

270) 신청인 박○필 진술조서(2022. 7. 1.)

271) 신청인 김○하 진술조서(2022. 5. 1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 11. 16.)

III. 결론과 권고사항

1. 결론

- 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7~8월경 경남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양산경찰서 및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1950년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경찰서와 경남지구 CIC에 의해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에 대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 총 19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식(朴○植, 2다-1371), 김○도(金○道, 2다-1372) 박○수(朴○銖, 2다-1373), 김○준(金○俊, 2다-1376), 김○철(金○喆, 2다-3588), 강○문(姜○文, 2다-5761), 서○준(徐○俊, 2다-7505), 박○표(朴○杓, 2다-7506), 김○환(金○煥, 2다-7508), 유○줄(劉○茁, 2다-7510), 박○종(朴○鐘, 2다-7511), 박○희(朴○熙, 2다-7512), 박○옥(朴○鉉, 2다-7514), 유○달(劉○達, 2다-7519), 차○달(車○達, 2다-7522), 서○문(徐○汶, 2다-7523), 김○찬(金○贊, 2다-7526), 황○수(黃○壽, 2다-8227), 박○생(朴○生, 2다-10069)이다.
-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 라.**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 경남지구 CIC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 마.**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 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불임

〈불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양산면 (신청인 9명, 진실규명대상자 9명)						
1	1371	박○일 (1949)	박○식 (朴○植, 1926, 아버지)	2022. 1. 12. 양산시청 미팅룸 (3층)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박○식은 양산군 양산면 산막동 영동마을에 거주하였고, 양산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음. 1950년경 국민보도연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피신하였음. 모내기 철이 되어 양산에 올라와 아침에 일한 후 도랑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경찰에게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감금되었음. 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쌀 한 가마니 돈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할아버지에게 전달했으나 할아버지가 거절하여 나오지 못하였음. 어머니가 목화창고에 면회하려 가니 아버지가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 자식을 잘 키워라."라고 하였다고 함.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1950년 음력 7월 3일 사배고개에서 총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음력 7월 2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2	1372	김○수 (1948)	김○도 (金○道, 1924, 아버지)	2022. 1. 13. 양산시청 미팅룸 (3층)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고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김○도는 양산군 양산면 산막동 영동마을에 거주하였고, 농업에 종사하였음. 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얼마 후 경찰에게 연행되어 양산 북부동에 있는 목화창고에 갇혀있다가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고 들었음. 아버지는 국민보도연맹 때문에 잡혀갔다고 들었으며, 당시 김○준(김○혜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7837), 박○수(박○홍의 아버지, 2다-1373)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지내지 않음.
3	1373	박○홍 (1948)	박○수 (朴○銖, 1914, 아버지)	2022. 1. 13. 양산시청 미팅룸 (3층)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박○수(이명 '○수(○銖)')는 양산군 양산면 호계동 음지마을에 거주하였고, 농업에 종사하였음. 호계동 음지마을의 뒤편에는 천성산이 있어서 빨치산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진술인의 뒷집에는 경계를 서기 위한 초소가 있었음. 1950년 여름경 경찰이 마을에 찾아와 아버지, 황○조(황○수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8027), 강○수(강○길의 아버지, 2다-14953), 김○준(김○혜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7837)을 잡아가 목화창고에 가두었고, 박○득(박○택의 아버지, 2다-975)도 끌려갔다고 들었음. 어머니가 목화창고에 갇힌 아버지에게 밥을 갖다주러 간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아무래도 집에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였다고 함. 어머니가 목화창고에 갈 때마다 창고 안에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음력 6월 27일에 목화창고에 가니 창고가 비어있었다고 함.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날이 음력 6월 27일이기 때문에 그날 제사를 지내고 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4	1376	김○수 (1950)	김○준 (金○俊, 1924, 아버지)	2022. 7. 25. 양산시청 심리상담실 (2층)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고모, 고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김○준은 양산군 양산면 호계동 양지마을에 거주 했으며 직업은 잘 모르겠으나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 이상을 했다고 함.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함. 해방 후 한국에 귀국하여 부산에서 일하던 중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군에 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입을 권하였고, 아버지가 양산으로 와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함. 1950년 8월 초순 무렵 아버지가 양산군청 인근의 목화창고에 출두하였고 그곳에 구금되었다고 함. 그 후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트럭에 실려서 사송리 사배고개에서 사살된 후 묻혔다고 들었음. 큰외삼촌 박○○이 당시 양산면 명곡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진술인이 16살 ~ 17살 경 외삼촌이 아버지와 같이 목화창고에 있었는데 외삼촌은 돈을 내고 나왔다고 했음. 1960년 할머니가 유골 발굴에 참여하였음. 그 후로도 춘추원에 몇 년간 제사를 지내려 갔음. 당시 같은 마을에서 강○수(강○길의 아버지, 2다-14953)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김갑준과 함께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아버지가 나가신 날이 음력 6월 18일이라고 하여 그때 지냄.
5	7511	박○구 (1942)	박○종 (朴○鐘, 1931, 큰형)	2022. 4. 4. 부산시청 내빈실Ⅲ (1층) . 진술조서	목격 (연행, 구금, 면회) 전문 (어머니,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형 박○종은 마을에서 박달이라고도 불렸으며, 양산군 양산면 명곡동 양지마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함. 신청인은 큰형이 1950년 7월 ~ 8월경 집 밖에서 경찰서 사찰계 형사 조○○에게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였음. 연행 이후 소식을 듣고 목화창고에 밥을 싸서 형에게 가져다줬음. 목화창고 안에는 청년 100~200여 명이 있었고, 더운 여름이라 다들 삼베 옷을 입고 있어 창고 안이 하였음. 1950년 더운 여름날 도시락을 박○종에게 가져다주러 갔더니 목화창고가 텅 비었음. 잡혀간 후 10일~20일 정도 후에 발생한 일이며, 소문에 따르면 사배고개에서 사람들이 총살당했다고 함. 당시 같은 마을에서 김○○, 김○철(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10588), 박○희(4촌, 2다-7512), 박○옥(8촌, 2다-7514)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고 이중 김○○을 제외하고는 모두 희생되었음.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음력 7월 4일에 지냄.
6	7512	박○권 (1935)	박○희 (朴○熙, 1930, 형)	2022. 4. 4. 부산시청 내빈실Ⅲ (1층) . 진술조서	목격 (구금),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석자: 박○○(딸, 1963년생), 특이 발언 없음. 형 박○희는 양산군 명곡동 양지마을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함. 한국전쟁 발발 전 명곡동 읍지마을 사람이 청년들을 마을 당산나무에 앞에 모이라고 한 후 만세삼창을 시켜서 형도 그 자리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왔다고 함. 누군가 이를 신고했고 경찰서에서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모두 소환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음. 그 일로 박○희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함. 한국전쟁 후 어느 여름날, 형님이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간 후 돌아오지 않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진술인은 목화창고 인근 양산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등하교 시 목화창고에 있는 형을 목격하였음. 그 후 며칠 간은 목화창고에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서 배구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화창고에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음. 1951년 무렵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했는데 그 즈음해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트럭에 실어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땅을 파고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양지마을에서 김○○, 김○철(박○희의 친구,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10588), 박○옥(8촌, 2다-7514), 박○종(4촌, 2다-7511)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됨.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7월 불상일(음력)에 지내다가 현재는 명절에 제사를 모아서 지냄.
7	7514	박○종 (1961)	박○옥 (朴○鉉, 1928, 숙부)	2022. 7. 26. 양산시청 심리상담실 (2층) . 진술조서	전문 (아버지, 친 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부 박○옥은 양산군 양산면 명곡동 양지마을에 거주했으며 직업은 불명확하나 농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장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음. 박○옥은 한국전쟁 전후 누군가의 권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고, 가입 얼마 후 양산경찰서 인근 목화창고에 갇혔다고 함. 숙부가 목화창고에 갇혀있을 때 큰누나 박○○과 친척인 박○구(2다-7511의 신청인)가 함께 목화창고에 도시락을 가져다주었다고 함. 1950년 여름 어느 날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박○옥을 포함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트럭에 실려 양산 동면 사배고개로 끌려가 총살당했다고 함. 당시 양지마을에서 숙부를 포함해 김○○, 김○철(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10588), 박○종(4촌, 2다-7511), 박○희(2다-7512)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김○○을 제외하고 모두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돌아가신 날을 몰라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지냄.
8	8227	황○자 (1942)	황○수 (黃○壽, 1915, 아버지)	2022. 4. 6. 부산시청 내빈실Ⅲ (1층) . 진술조서	목격 (연행), 전문 (언니, 오빠, 어머니,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황○수는 양산군 남부동에 거주하며 농업과 여러 가지 업에 종사함. 아버지는 마을에서 자수성가하여 땅을 사서 기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미싱, 새끼 꾼 기계도 사서 나누어주는 등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음. 1950년 8월경 밤에 경찰관 2명이 총을 차고 와서 황○수 어디 갔어라고 했고, 할머니가 아버지가 보초 서고 있는 곳을 알려준 뒤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였음. 그 후 어머니가 밥을 지어가셨고 그 장소가 목화창고였던 것 같음. 1950년 음력 7월 15일 아버지가 트럭에 실려 가며 집 앞에서 '어머니'라고 세 번 외치는 것을 이웃이 들었다고 함. 아버지는 그날로 총살당했다고 함. 아버지가 희생당한 날, 총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시신에 표시를 해놨으니 가보라고 알려주어 그날 바로 어머니와 진술인의 외삼촌, 5촌, 8촌 아래가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멀지 않은 곳에 따로 묻어두었음. 3일 후 어머니가 급하게 묘를 만들어 진술인의 큰언니, 큰오빠, 진술인을 데리고 가서 제를 지냈음. 시신을 수습하였고, 음력 7월 14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9	10069	김○하 (1965)	박○생 (朴○生, 1908, 외할아버지)	2022. 5. 19.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지원 센터 (6층) · 진술조사	전문 (외할머니,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할아버지 박○생은 양산군 양산면 남부동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고, 당시 남부동의 구장이었다고 함. 외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가 1950년 7월경 양산경찰서에서 '회의'에 나오라고 하여 나간 후 돌아오지 못함. 당시 진술인의 어머니(박○○)가 집에서 외할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함. 당시 마을에서 외할아버지처럼 사라진 청년들이 있었고, 그들이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하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면회하러 목화창고에 갔다고 함. 외할아버지는 '나는 곧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음. 어머니는 밥을 해서 약 일주일간 목화창고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날렸다고 함. 그러던 어느 날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사배고개로 실려가 총살됐다고 들었음. 논에 벼 도구 칠 무렵(본 수확 1~2주 전, 9월 중순 무렵)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남동생 세 명이 동면 사배고개에 가서 외할아버지의 때문이 이와 모시 바지 접힌 모습을 보고 시신을 수습하여 동면 희락원 인근에 묘를 썼다고 함. 시신을 수습하고 온 날 외할머니는 뭐에 훌린 사람 같았고 벽만 보고 있었다고 함. 제사는 음력 7월 15일에 지내고 있음.
동면 (신청인 5명, 진실규명대상자 5명)						
10	3588	김○삼 (1944)	김○철 (金○喆, 1929, 형)	2022. 7. 14. 양산시청 심리상담실 (2층) · 진술조사	전문 (어머니, 이웃) · 목격 (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김○철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지당마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날 경찰 두 명이 집에 와서 형님을 옆집 6촌 형(김○○)의 집으로 데려가서 때렸음.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고 그날 이후로 형이 집에 돌아오지 못함. 옆집에 살았던 6촌 형 김○○의 여동생 남편 흥○○가 좌익단체의 우두머리라고 소문이 나서 석산리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소문이 돌았음. 당시에 석산리에서 형을 포함한 청년 여러 명이 잡혀갔다고 함. 어머니가 수소문해서 형이 목화창고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목화창고에 갇혔던 사람들을 대로 묶고 줄을 세워 춘추원 뒷산 골짜기, 사송리 사배고개로 데려가서 사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당시 같은 마을에서 김○규(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학생 확인), 김○복(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학생 확인), 월리마을 김○○의 큰아버지(성명 미상)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고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돌아가신 날을 몰라 음력 9월 9일에 지내다가 지금은 문중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지냄.
11	7506	박○필 (1946)	박○표 (朴○杓, 1922, 아버지)	2022. 7. 1.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실2 (6층) · 진술조사	전문 (할머니, 이웃)	<p>※ 동석자 : 박○○(1951 생, 박○필의 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박○표는 양산군 동면 석산리 지당 마을에 거주하였고, 농업에 종사하였음. 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후 동네 청년들 몇 명과 함께 어디론가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할머니가 수소문하여 아버지가 갇혀있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커서 사람들에게 들으니 아버지가 갇혀있던 곳이 '목화창고'라고 함. 할머니는 갇혀있는 어머니 밥을 해서 서너 번 가져다주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밥을 해서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없었다고 함. 그 후 갇혀있던 아버지와 사람들을 지경고(사배고개) 구덩이에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쐈다고 함. 진술인이 어린 시절, 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시던 모습을 보았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석자 진술 : 동석자가 국민학교 저학년쯤에(1960년 추정) 할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신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였음. 사람들이 종실당한 장소에서 유골들 속에 아버지 금이빨을 보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함. 당시 같은 마을에서 김○규(김○○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김○관(김○○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이○○의 아버지(성명 미상)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음력 6월 27일에 지냄.
12	7508	김○구 (1950)	김○환 (金○煥, 1927, 아버지)	2022. 1. 25.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실1 (6층) · 진술조사	전문 (고모, 이웃)	<p>※ 신청인의 실제 출생 연도 : 194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김○환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에 거주했으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빨치산에게 밥을 주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함. 한국전쟁 발발 후 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되어 양산경찰서에 구금되었고, 어머니와 고모가 면회했다고 함. 어머니가 장날에 아버지 면회하러 가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국회다리'(양산 춘추원 앞 다리, 현재 영대교라고 불림)에서 다른 사람 2~3명과 함께 종실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함. 아버지는 총 여러 방을 맞고 죽었다고 함.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음력 1월 7일에 지냄.
13	7510	유○상 (1950)	유○줄 (劉○茁, 1909, 아버지)	2022. 5. 19.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지원 센터 (6층) · 진술조사	전문 (어머니, 이웃) · 목격 (1960. 위령제)	<p>※ 신청인의 실제 출생일 : 1948. 7. 20.(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유○줄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어떤 사람이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음. 한국전쟁 발발 얼마 후 양산경찰서에서 석산리 국민보도연맹들을 한곳으로 모이라고 하여 아버지가 갔고, 후에 목화창고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음. 당시 마을 청년들이 아버지처럼 사라지고 있던 터라 어머니가 어디 좀 가 있으라고 하였으나 아버지는 내가 죄지었냐며 거절했다고 함. 아버지가 연행된 후 어머니가 5~6일간 도시락을 싸서 목화창고에 면회하였고, 어느 날 아버지가 '내일 나갈 거다.'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목화창고가 비어있었다고 함. 1960년 마을 구장이 가구마다 한 사람씩 모아 사배고개에 가 유골을 발굴했고, 어머니가 그곳에 다녀온 후 마룻바닥을 치며 서럽게 통곡하던 것을 목격함. 1960년 발굴한 유골로 춘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음. 같은 마을에 살던 김○오(김○○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이○우(이○○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홍○희(홍○훈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10587), 김○찬(김○화의 아버지, 2다-7526), 김○영(김○진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8347), 홍○희(홍○훈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과 유○달(유○자의 아버지, 2다-7519)도 창고에 갇혀있었다고 함.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목화창고가 빈 날이 1950년 음력 7월 3일이라고 하여 제사를 음력 7월 2일에 지내며, 마을에 30가구 정도가 그날 제사를 지냄.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14	7519	유○자 (1946)	유○달 (劉○達, 1919, 아버지)	2022. 7. 14. 양산시청 심리상담실 (2층) . 진술조사	전문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유○달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월리부락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월리부락에 빨치산들이 총을 들고 내려와 밥을 달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아버지가 빨치산들에게 밥을 주었는데 그 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함. 와삼촌이 아버지에게 김해에 가 있으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 계시는 데 아버지 혼자 놔두고 어디로 피하겠느냐.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함. 아버지가 소속 불명의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어머니가 수소문하여 아버지가 옛날 양산군청 옆에 있는 목화창고에 갇히신 걸 알았다고 함. 그다음 날부터 밥을 지어 목화창고에 보름 정도 가져다주었는데 1950년 음력 6월 23일에 아버지가 안 보였다 함. 어머니 말씀으로는 목화창고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밥을 가져가면 경찰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부르고 사람이 있으면 밥을 전해주는 식이었다고 함. 1950년 음력 6월 23일에 밥을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목화창고에 있었고 아버지만 없었다고 함. 마을에서도 6월 22일(음), 6월 27일(음), 7월 2일(음)에 제사를 지내는 등 제삿날이 조금씩 다름. 석산리 주민 중 유○줄(유○상의 아버지, 2다-7510), 김○찬(김○화의 아버지, 2다-7526), 김○오(김○○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흥○○의 아버지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고 함.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목화창고가 빈 날이 음력 1950년 6월 23일(음)이라 제사를 음력 6월 22일에 지내고 있음. 1960년 한 집에 몇 사람씩 나오라고 하여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에서 유골을 발굴하였음. 발굴한 유골을 집단으로 화장한 후, 춘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음. 진술인의 어머니, 진술인의 동생이 위령제에 참여하였는데 발굴한 유골들이 집채만 했다고 하였음.
15	7526	김○화 (1946)	김○찬 (金○讚, 1919, 아버지)	2022. 7. 14. 양산시청 심리상담실 (2층) . 진술조사	전문 (어머니) . 목격 (1960 위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김○찬은 양산군 동면 석산리 곡리마을(골말)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 골말 뒤 대밭에서 빨치산들이 총을 들고 내려와 밥을 달라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음. 그 후 마을 구장(이장)이 빨치산을 만난 집들을 모아서 '빨치산을 만나면 일을 못 하는데 도장을 찍으면 일하려 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함. 그때 모인 사람들이 김○찬과 김○환의 아버지(성명 미상), 이○우(이○○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이○진(이○○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흥○희(흥○○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흥○희(흥○줄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10587), 유○줄(유○상의 아버지, 2다-7510) 이었고 다 도장을 찍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함.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일을 시켜준다고 하며 도장 찍은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여 아버지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으며 그 후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셔서 어머니가 이장에게 물으니 아버지가 목화창고에 갔다고 함.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와 골말 국민보도연맹원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서 목화창고에 3일 정도 가져다주었고, 밥을 가져가면 앞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마을 이름도 불러서 그 안에 있으면 밥을 전달해 주었다고 함. 위에 언급된 친구들의 어머니가 다 같이 갔고 목화창고에 위의 사람들이 다 있어서 밥을 먹었음. 밥을 다 먹고 난 후 빈 그릇은 다시 가져왔다고 함. 1950년 음력 7월 3일경 목화창고가 비어있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동면 사송(사배)고개에서 구덩이를 파고 사람들을 일렬로 세운 후 총살했다고 함. 1960년 발굴한 유골들을 한 번에 화장하여 춘추원에서 비석을 세우고 합동위령제를 지냈는데 진술인의 어머니, 형님, 진술인이 같이 가서 절을 했음.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음력 7월 2일에 지내고 있음.
상북면 (신청인 4명, 진실규명대상자 4명)						
16	5761	강○문 (姜○文, 1946)	2022. 7. 26. 양산시청 심리상담실 (2층)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어머니,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강○문은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 구소석마을에 거주했으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아버지는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함. 음력 1950년 7월 3일경 같은 마을에 살던 김○률(1기 진실회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9024)과 같은 날 양산경찰서 상북지서의 소집을 받고 출두하였다고 함. 아버지가 김○률과 함께 상북지서로 가는 모습을 할머니, 어머니, 김○률의 아내가 보았다고 함. 이후 소문으로 아버지와 김○률이 양산경찰서로 이송된 후, 양산군청 옆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하여 김○○(김○률의 장남)이 목화창고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드리면서 목화창고에 있는 아버지를 봤다고 함. 김○○이 목화창고에 두 번째 갔던 음력 7월 2일~3일경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함. 강○문을 포함하여 목화창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마을에서 김○률(1기 진실회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9024), 김○한(1기 진실회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7829), 황○룡(2다-2614)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김○률과 아버지가 한날 같이 구금되었고, 김○한, 황○룡이 그 뒤 해에 소환된 것으로 암. 1960년 이후 유골 발굴 작업에 어머니 김○○이 3일 내내 참여하였고, 작은삼촌 강○○도 참여하였다고 함. 유골 발굴 후 춘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낼 때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였음. 5·16군사ク데타가 있고 얼마 후 진술인이 양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무렵 수업 중에 양산경찰서 사찰계에 가서 조사받았음. 경찰서에는 이미 김○○, 황○○(2다-2614 진실규명대상자 황일룡의 동생)이 조사를 받고 있었음.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음력 7월 3일에 제사 지냄.
17	7505	서○준 (徐○俊, 1948)	2022. 7. 26. 양산시청 심리상담실 (2층)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서○준은 양산군 상북면 좌삼리에 거주했으며, 농업에 종사하였음. '서○준'이라고 불렸음. 한국전쟁 발발 전후 밤이 되면 마을에 빨치산들이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경비를 섰고, 아버지가 이웃 서○문(2다-7523)과 경비를 서다가 빨치산을 만나 상북지서에 신고했다고 함.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후로 상북지서에서 아버지와 서○문이 빨치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시로 지서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함. 그 후 누군가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좋다. 그러면 지서에서 계속 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도장을 찍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함.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여름날 아버지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연행되었고 며칠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음. 친척들이 아버지에게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는 빨치산도 아니고 죄를 짓지도 않았으니 숨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숨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온 다음 날 경찰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연행해 가서 양산국민학교 인근 목화창고에 잡아 가뒀다고 함. 목화창고 부근에 살고 있던 큰어머니와 사촌 언니 서○이 도시락을 목화창고에 전달해 주었다고 함. 당시 앞집에 살던 서○문(서○순의 아버지)도 아버지와 함께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함. 1960년 양산 춘추원에서 한 합동위령제에 어머니가 서○순의 어머니와 함께 다녀왔다고 함.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날이 1950년 음력 7월 3일이라 음력 7월 2일에 제사를 지냄.
18	7523	서○순 (1952)	서○문 (徐○汶, 1917, 아버지)	2022. 4. 4. 부산시청 내빈실Ⅲ (1층)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할머니)	<p>※ 신청인 실제 생년 : 194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서○문은 양산군 상북면 좌삼리에 거주했으며, 농업에 종사함. 좌익세력들이 밤에 마을로 내려오던 시절에 동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섰고, 아버지는 뒷집에 사는 서○준(2다-7505)과 같은 조였음. 어느 날 두 사람이 경비를 서다가 좌익세력을 만났고 이를 경찰서에 보고했는데, 그 후 지서에 자주 불려다녔다고 함. 지서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안 불려 다닌다. 도장만 주면 조사받으려 안 와도 된다.'라고 하여 서○문이 경찰들에게 도장을 주었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됨. 아버지는 음력 1950년 7월 2일경 양산 상북지서에 연행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되었음. 할머니가 주먹밥을 해서 아버지 면회를 다녀왔다고 함. 어느 날 창고에 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있었다고 함. 그 후 창고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군용차로 실어 동면 사배고개 골짜기에서 구덩이를 파고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어머니가 1960년에 서○준의 부인과 유족회 제사를 다녀온 적이 있음.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음력 7월 2일에 지냄.
19	7522	차○순 (1950)	차○달 (車○達, 1926, 아버지)	2022. 4. 4. 부산시청 내빈실Ⅲ (1층)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차○달은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감결마을에 거주했으며, 농업에 종사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주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함. 그 후 아버지가 목화창고에 간혔다고 함. 할머니가 목화창고에서 아버지를 몇 번 면회하였다고 함. 아버지가 목화창고에 갇혀있을 때 돈을 조금만 쓰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 아버지는 '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있나?'라고 하였다고 함. 그 후 아버지를 포함한 양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1960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배고개에서 유골 발굴 작업을 했음. 사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음력 7월 2일에 지냄.

〈붙임(표) 2〉 피해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양산면 (참고인 10명, 진실규명대상자 9명)							
1	1371	박○식 (朴○植)	류○○ (柳○○ 남, 1931)	이웃 · 상북면 효종리	2022. 11. 17. 양산시 양주로 참고인 자택 · 진술조사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한국전쟁 별발 전후로 양산군 상북면 효종리에 거주하였고 효종리에서 개울 하나 건너면 영동마을이었음. 영동마을에 박○식과 김○도가 거주하였음. 한국전쟁 별발 전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마을 사람들 소를 몰고 가거나,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였음. 빨치산에게 식량을 뺏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음. 빨치산에게 식량을 주지 않으면 빨치산에게 두드려맞고, 식량을 어쩔 수 없이 뺏기면 식량을 주었다고 경찰에게 두드려맞았음. 한국전쟁 별발 전 똑똑한 사람, 주로 선생님, 이장들의 도장을 찍어갔다고 함. 그 후에 박○식, 김○도는 집에 있다가 양산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잡혀갔다고 들었음. 그 후 소문에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로 끌려가 총살되었다고 함. 당시 방위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다고 함. 소토리 주민이 사람들을 트럭에 태우고 동면 사배고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함. 당시에 국민보도연맹 관련으로 죽었다는 것은 '빨치산 짓을 하다가 죽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꺼렸음.
	1372	김○도 (金○道)					
2	1372	김○도 (金○道)	김○○ (金○○, 남, 1936)	6촌 · 상북면 소석리	2022. 11. 14.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참고인 자택 · 진술조사	전문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한국전쟁 별발 전후로 양산군 상북면 소석리에 거주하였고 김○도는 양산면 산막동 산막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음. 한국전쟁 별발 전으로 산에서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주민들의 곡식이며 기축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음.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식량을 뺏기면서 다음 날 군경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가 조사하고 했음. 좌남리에 23연대 군인들이 빨치산을 토벌 하려고 주둔해 있었음. 김○도가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서 사망했다고 진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중학생 때부터 들었음. 한국전쟁 별발 후, 국민보도연맹 관련으로 잡혀갔는지 지시에 출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 양산군 청 인근 목화창고에 갇혀있었다고 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목화창고에 다 구금했다고 했음. 그 후 어느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서 목화창고에 있는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들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3	1373	박○수 (朴○銖)	김○○ (金○○, 여, 1930)	조카 · 하북면 용연리	2022. 11.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고모,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양산군 하북면 용연리 용소마을에 거주하였고, 고모부 박○수는 양산면 호계동에 거주한 걸로 알고 있음. 고모부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때문에 순사에 의해 잡혀가셨다고 함. 이후에 고모(박○수의 처)가 밥을 싸서 고모부에게 몇 번 가져다줬다고 함. 거기가 어딘지는 확실히 모른다 사람이 많았다고 함. 어느 날 그 장소에 가니 고모부를 비롯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함.
			박○○ (朴○○, 여, 1944)	딸 · 양산면 호계동 읍지 마을	2022. 11.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참고인 김○○의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박○수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 누군가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도장을 찍었다고 함. 당시에는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고 함.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날 아버지가 양산 목화창고에 갔다고 함. 어머니가 밥을 싸서 매일 아침 아버지를 보러 갔었고, 목화창고에 다녀와 우는 모습을 봤음. 1950년 음력 6월 27일에 아버지가 목화창고에서 사라졌다고 함. 아버지가 사라진 날로 제사를 지냄. 어머니가 작은 방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았음. 황○조(황○수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8027), 강○수(강○길의 아버지, 2다-14953), 김○준(김○혜의 아버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7837), 박○득(박○택의 아버지, 2다-975)이 목화창고에 갔던 것을 어머니가 목격했다고 함.
4	1376	김○준 (金○俊)	안○○ (安○○, 남, 1935)	매부 · 물금면 교리 신주 마을	2022. 9. 29. 양산시청 심리 상담실 (2층) · 진술조서	목격 (구금) · 전문 (장모, 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군 물금면 교리 812-1 신주마을에 거주하였고, 김갑준은 양산면 호계리에 거주하였음.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형 안○원(다-2727)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하여 희생 확인되었음. 김○준은 진술인의 자형(누나 안○○의 남편)의 친구여서 진술인이 그 집에 자주 놀러 가며 가깝게 지냈음. 한국전쟁 발발 전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군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마을에 돌았음. 김○준의 아버지는 김○준이 일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는 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고 함. 한국전쟁 발발 후 음력 6월경,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양산경찰서로 출두하지 않으면 집을 풍비박산 낸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를 걱정한 김○준의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김○준에게 양산경찰서로 가라고 했다고 함. 후에 김○준의 어머니는 진술인에게 '그때 내가 아들을 불러들여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한탄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p>• 그래서 김○준이 부산에서 올라왔음. 1950년 음력 6월 18일경 김○준과 김○○(김○준의 동생)가 같이 집을 나와서 김○○는 양산국민학교에 가고 김○준은 양산경찰서로 갔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진술인의 형(안○○)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목화창고에 갇혀있었는데, 형에게 밥을 가져다줄 때 보니 김○준이 목화창고 안에 있었음. 진술인이 밥을 가져가면 형이 '○준씨 이리 와 보소'라고 하며 김○준을 불렀음. 목화창고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진술인의 어머니가 이후 밥을 더 많이 써주셨음. 창고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동안 진술인은 밖에 서 기다리다가 빈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오곤 했음. •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던 장소는 옛날 양산군청 옆에 있었던 목화창고이며, 진짜 신에 다닌 사람들은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고 무고한 사람들은 목화창고에 있었다고 함. 목화창고에는 철조망도 없이 새끼줄이 처져 있었고 정문에는 경찰 2명이 총을 두고 있었음. 후문에도 책상 하나 놓고 경찰 1명이 있었다고 함. 목화창고에서 사람들이 사라진 날(음력 1950년 7월 2일경) 약 3일 전부터는 목화창고 앞에 경찰과 군인이 한 명씩 자키고 있었음. • 음력 1950년 7월 3일경에 목화창고에 밥을 가지고 가니 창고가 비어있고 짚신짝 몇 개만 있었음. 밥을 주러 온 다른 가족들이 목화창고 앞에서 통곡하고 있으나, 동네 주민이 나와서 '어제 저녁 밤에 군인들이 차에 사람들을 제무시(GMC) 트럭으로 4차례에 걸쳐 실어 날랐다. 차에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위에 군인도 타 있더라. 부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였음. • 그 후에 들어보니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을 동면 사배고개로 싣고 가 구덩이를 파고 총살했다고 함. • 신주마을에서 최○영(2다-7524)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음. 동네에 '유○○'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종손이 유○○이라는 사람이었음. 유○○은 모스크바에서 유학했고 김일성보다 한 해 선배라고 했음. 유○○은 한국전쟁 발발 약 2년 전 월북했다고 함. 유○○ 집인사람들이 유○○ 때문에 많이 희생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유○주(2다-7517)도 있었음. 유○주는 유○○의 시촌인데 양산농업학교 선생님이었음. 유○주 집에 가서 진술인의 형이 공부해서 얼굴을 알고 있고, 유○주도 목화창고 안에 있는 것을 봤음. 박○우(2다-1551)도 목화창고 안에 있었고 가끔 밥을 같이 먹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5	7511	박○종 (朴○鐘)		친척 (6촌 또는 8촌) · 양산면 명곡동 양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옥, 박○희는 집안 8촌 형, 박○종은 8촌 또는 6촌임. 한마을에서 가까이 살았음. • 한국전쟁 발발 전 빨치산들이 총 들고 내려 와서 곡식을 가져가거나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이 있었음. 위 사람들도(박○종, 박○희, 박○옥) 빨치산에 안 잡혀가려고 진술인의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했음. • 한국전쟁 발발 전 마을 청년들이 국민보도 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함. • 한국전쟁 발발 후 여름경 양산경찰서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하여 박○종, 박○희, 박○옥이 양산경찰서로 갔고, 목화창고에 갇혔다고 함. •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옛 양산군청 인근 목화 창고에 갇혀있었음. 진술인은 당시에 양산중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목화창고에 있는 사람들을 봤음. 목화창고에는 사람이 꽉 차 있었고 박○옥, 박○희, 박○종이 목화창고 안에 있었음.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기도 했으나 자세히 보지 못함. • 목화창고 안에는 한국전쟁 발발 전에도 '빨치산 가족들'이 구금되어 있기도 했음. 그 후 어느 날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트럭 두 대에 태워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구덩이를 파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동면 사배고개 등지로 추정됨. • 한참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잡아들일 때 양산 경찰서 조○○라는 경찰관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7512	박○희 (朴○熙)	박○○ (朴○○, 남, 1936)	8촌 · 상동	2022. 11. 15.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참고인 자택 인근 · 진술조사	목격 (구금) · 전문 (이웃)	
	7514	박○옥 (朴○鉉)		8촌 · 상동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6	7512	박○희 (朴○熙)	박○○ (朴○○, 남, 1941)	4촌 · 양산면 명곡동 양지 마을	2022. 11.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5번길 참고인 자택	목격 (구금) ·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희와 박○옥은 양산면 명곡동에 거주하였고, 진술인의 집과는 50~100m가량 떨어져 있었음. • 박○옥은 한국전쟁 전후 경 국민보도연맹에 가입 하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했다고 함. • 얼마 후 양산경찰서 인근 목화창고에 간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당시에 진술인의 형 박○종(2다-7511)도 목화창고에 갇혀있어 진술인의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져다주라고 했음. 당시 진술인은 양산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도시락을 가져다주러 간 날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함. 진술인이 살던 명곡동에서 양산국민학교까지 걸어가면 목화창고, 양산군청, 양산경찰서를 다 지나감. 양산국민학교는 당시에 지금의 자리가 아닌 현재 양산호텔이 있는 자점에 있었음. • 목화창고는 2개의 건물로 도로를 기준으로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있었음. 바깥쪽에 있는 목화 창고에 사람들이 있었음. 일부는 신문지를 깔고 일부는 아무것도 깔지도 않고 앉아 있었음. 목화 창고 앞에 따로 지키는 사람이 있었음. 창고 안에 박○옥, 박○종, 박○희가 있었고 초배기 도시락(대나무 도시락)에 밥을 싸서 진술인과 박○○(9촌, 당시 9세)이 3~4차례 직접 전달했음. 진술인의 집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진술인의 어머니가 보리밥을 조금 섞은 쌀밥을 싸서 줬음. •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박○종, 박○옥, 박○희를 봤는데 많이 불안해 보였고 얼굴이 초췌했음. 진술인이 밥을 가져가면 밥을 가져온 줄 알고 위 사람들이 진술인의 앞으로 모이곤 했음. 사람들 말로는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당했다고 함.
				8촌 · 상동			
7	8227	황○수 (黃○壽)	박○○ (朴○○, 여, 1943)	이웃 · 양산면 남부동	2022. 11. 13. 부산광역시 진구 연지동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동은 양산의 중심지였음. 양산군청 앞에 빨치산들을 잡아서 세워놓은 했음. 당시에 백골부대라고 하는 군인들이 양산에 내려와 있었고 양산국민학교에 머물고 있었음. 양산국민학교는 지금의 자리가 아닌 양산군청 옆쪽에 있었음. • 황○수는 한국전쟁 빌발 당시 진술인의 앞집에 살고 있었고, 황○수의 딸 황○자와 진술인은 친구였음. 황○수는 농촌 계몽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고 새끼 꼬는 기계, 미싱을 사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주었다고 함. • 한국전쟁 빌발 후 어느 날 황○수가 끌려갔다고 들었음. 시간이 흘러 진술인이 중학생쯤 듣기로 황○수가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되어 어느 골짜기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8	10069	박○생 (朴○生)	이○○ (李○○, 여, 1951)	며느리	2022. 11.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번길 7 카페 킥스 진술조서	전문 (시어머니, 남편, 시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아버지 박○생은 한국전쟁 발발 후 여름날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베 남방을 입고 집에서 나갔다고 함. 그 후 시누(박○○, 신청인 김○하의 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어떤 창고에 갇혀있는 걸 알고는 밥을 해서 서너 번 가져다주었다고 함. 그려던 어느 날 창고에 갔더니 창고에 아무도 없었다고 함. 그 후 시아버지 형제들과 시어머니가 양산 어딘가에서 시아버지가 입은 삼베 옷을 보고 시신을 찾아 희락원 인근 약간 언덕에 묘를 만들었다고 함. 남편 박○○(박○생의 4남)가 시아버지 때문에 공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음.
			안○○ (安○○, 여, 1934)	며느리	2022. 11.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번길 7 카페 킥스 진술조서	전문 (시어머니, 시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아버지 박○생은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하여, 누군가 불러서 나갔다고 함. 그 후 시누가 어디에 갇혀있는 시아버지에게 밥을 가져다줬다고 들었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장소에서 구덩이를 팠던 보급대 사람이 시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며 시아버지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고 함. 그 장소가 희락원 인근이고 '끝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다고 함. 시아버지의 동생들 3명, 시어머니가 그 장소에 가서 땅을 팠다고 함. 시아버지 옷 입은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인 줄 알고 양산 희락원 인근에 묻었다고 함. 진술인의 남편(박○○, 박기생의 1남)이 짚었을 때는 시아버지 산소에 가서 성묘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함.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장소를 알려준 사람이 시아버지가 음력 7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하여 제사는 음력 7월 14일에 지내고 있음. 그 사람은 자기가 알려준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하고, 후일이 두려워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함.

동면 (참고인 5명, 진실규명대상자 6명)

9	3588	김○철 (金○喆)	김○○ (金○○, 남, 1933)	이웃 · 동면 석산리지당 마을	2022. 9. 29.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6길 참고인 자택	목격 (연행) ·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철은 진술인의 집 바로 위에 살았고, 박○표는 150m 정도 떨어져서, 유○줄은 진술인의 마을보다 위쪽에 거주하였음. 국민보도연맹이 당시에는 꽤 좋은 단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함. 한국전쟁 발발 후 한참 전쟁이 심할 때, 위 사람들이 산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던지 경찰서 형사들이 위 사람들을 한 번에 연행했다고 들었음. 그 후 양산군청 옆 목화창고에 가뒀다고 하고, 그 가족들이 밥도 가져다줬다고 함. 그 후 목화창고에 있는 사람들을 동면 사배고개에서 총살했다고 함. 김상철을 잡으러 갈 때 형사들이 진술인의 집을 지나서 올라가는 것을 봤음. 후에 얘기를 들으니 그 길로 형사들이 김○철을 연행했다고 함. 한국 전쟁 발발 전 마을 청년들이 아침 일찍 석산리 길가에 모여 '빛나는 보도연맹~'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 있음.
	7506	박○표 (朴○杓)		이웃 · 상동			
	7510	유○줄 (劉○茁)		이웃 · 상동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10	3588	김○철 (金○喆)	김○○ (金○○, 남, 1942)	모두 이웃 · 동면 석산리 곡리 마을	2022. 9. 27. 양산시 동면 곡리3길 곡리 새마을 쉼터 · 진술조사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발발 전후 밤에 빨치산들이 총을 들고 내려와 주민들을 위협하며 밥을 달라는 일이 종종 있었음. 그런 다음 날 낮에 경찰들이 식량을 뺏긴 집을 어떻게 알고 그 집에 찾아가서 ‘빨치산과 한때’라고 하며 잡아가 고문을 하였음. • 석산리는 연안 이씨, 청도 김씨 집성촌이었는데, 천석꾼 이○○의 조카 이○○이 동면 면장을 하였고, 한국전쟁 발발 전 마을 청년들에게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독려했다고 함. • 김○찬(2다-7526), 유○줄(2다-7510), 채○원(2다-2193-36)은 골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음. 김○찬은 진술인의 집과 약 300m 미만 떨어져 살았고, 유○줄은 약 100m 미만, 채○원은 약 150m 정도 떨어져 살았음. 매우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돌아가신 사정을 잘 알았음. • 위 세 사람은 진술인의 아버지 김○영(1기 진실회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8347), 숙부들 김○○, 김○영(1기 진실회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8347)과 함께 양산경찰서에 부역하러 간다며 농기구를 가지고 한날 나갔음. • 지당마을 김○철(2다-3588), 박○표(2다-7506), 석산리 김○환(2다-7508), 원리마을 유○달(2다-7519)도 국민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음. 지당마을은 골말에서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됐고, 원리마을도 골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임. 석산리가 당시 100호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38호 가정에서 청년들이 국민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셔서 ‘누구 집의 누구도 죽었고 누구 집의 누구도 죽었다’라는 말이 많이 돌았음. • 집을 나선 마을 청년들은 동면지서로 간 후에 양산경찰서 목화창고로 갔다고 함. • 진술인의 어머니, 채○원, 김○찬, 유○줄의 아내들이 모여서 밥을 주러 가는 걸 본 기억이 남. 희생자들의 아내들이 밥을 해서 가져다주면 목화창고를 지키는 간수가 받아서 사람이 안에 있으면 전달하는 식이었다고 함. 오늘 밥을 전달하면 다음 날 빈 도시락을 받아 왔고, 진술인의 어머니가 희생자들의 부인들과 목화창고에 다녀온 날이면 “잘 있고 그렇더라. 일도 안 시키고 그리고 있더라.”라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음. • 아버지와 숙부들은 음력 7월 2일에 목화창고에서 없어졌다고 함. 희생 장소는 사배부락, 남락부락, 녹동부락이라고 했으며, 사람들이 사라지고 약 10일 정도 후에 인근 주민들이 위 고개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함. 주민들이 확인하러 인근에 갔더니 경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다가오면 쏜다고 위협을 했다고 함.
	7506	박○표 (朴○杓)					
	7508	김○환 (金○煥)					
	7510	유○줄 (劉○茁)					
	7519	유○달 (劉○達)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11	7506	박○표 (朴○杓)	박○○ (朴○○, 남, 1956)	조카	2022. 11. 1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20 리버파크 반도유보라 · 진술조사서	전문 (할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오○○, 박○표의 어머니)와 오래 살아 할머니에게 큰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었음. 큰아버지(박○표)는 부산 초량역 인근에서 소방차 조수 일을 했다고 함. 한국전쟁 발발 후 당시 마을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났고, 큰아버지를 잡아가려고 경찰들이 여러 번 집에 왔었다고 함. 큰아버지가 안 잡혀가려고 숨어 있기도 했다고 함. 1950년 음력 6월 27일경 아침 할머니가 밥상을 가지고 가는데 경찰 2~3명이 와서 큰아버지를 막무내려 끌고 갔다고 함. 큰아버지가 목화창고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가 목화창고에 밥을 몇 번 가져다주었다고 함. 한번은 할머니가 밥을 해가니 목화창고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함. 소문에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트럭에 태우고 녹동고개 어느 골짜기에서 총살했다고 함. 큰아버지가 집에서 나간 날이 음력 6월 27일이라 제사를 그날 지냄.
12	7508	김○환 (金○煥)	김○○ (金○○, 남, 1943)	이웃 · 동면 석산리 곡리 마을	2022. 11. 14. 양산시 동면 석산리 참고인 자택 · 진술조사서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 발발 전 빨치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주민들의 곡식을 훔쳐 가는 일이 종종 있었음. 밤에는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다음 날에는 경찰들이 빨치산에게 밥을 줬다고 주민들을 괴롭히곤 했음. 김○환은 진술인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살던 이웃 주민임.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관련으로 김○환을 포함한 마을 청년들이 많이 잡혀갔다고 함. 마을에서 김○○, 흥○대의 아버지 등이 국민보도연맹으로 잡혀갔다고 알고 있음. 집현간 청년들이 양산군청 인근 목화창고에 갇혀있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남락고개에서 총살당했다고 함. 마을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간 날을 기준으로 제사를 지내고 어떤 사람은 목화창고가 빙 날을 기준으로 제사를 지냄.
13	7510	유○줄 (劉○茁)	김○○ (金○○, 남, 1937)	모두 이웃 · 동면 석산리 원리 마을	2022. 9. 27. 양산시 동면 곡리3길 곡리 새마을 쉼터 · 진술조사서	목격 (연행, 구금) ·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찬, 유○줄, 채○원, 유○달은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면사무소에서 위 사람들에게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였다고 함. 1950년 음력 6월 말경 경찰이 진술인의 아버지 김○○과 함께 위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일렬로 세운 후 양산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음. 부역하러 간다고 하고 나갔다고 함. 아버지가 양산경찰서 인근에 있는 목화창고에 있다고 하여 진술인이 학교 가기 전, 4km 거리를 걸어서 도시락을 가져다드렸고, 목화창고에 아버지와 김○찬, 유○줄, 채○원이 갇혀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후에 아버지가 목화창고에서 동면지서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동면지서에 있는 아버지께 밥을 가져다드리러 갔더니 아버지가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사败고개로 갔다'라고 하였음. 후에 소문으로 사람들을 사败고개에서 총살했다고 함.
	7519	유○달 (劉○達)					
	7526	김○찬 (金○瓊)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상북면 (참고인 7명, 진실규명대상자 4명)							
14	5761	강○문 (姜○文)	김○○ (金○○, 남, 1941)	이웃 · 상북면 석계리 구소식마을 (덕대골 부락)	2022. 9. 30.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 센터 (6층) · 진술조서	전문 (가족,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과 강○문이 살던 덕대골부락은 구소식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고 7가구 정도가 살았음. 신수석마을에 사는 누가 빨치산 두목이었는데, 마을 청년들을 포섭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덕대골부락에서만 7가구 중 5가구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음. 강○문은 진술인의 집에서 15m 정도 앞집에 거주하였음. 강○문은 진술인의 형인 김○한(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7829, 당시 26세)의 친구였고 나이도 비슷했음. 마을에서 김○률, 황○룡(2다-2614), 강○문, 김○한, 김○호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의에도 몇 번 참여했다고 하고, 진술인도 형이 밤에 담 넘어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음. 진술인의 형(김○한)의 경우, 1950년 음력 7월 3일 점심 먹을 무렵 형사들 두 명 정도가 집에 와서 형을 연행했고, 다른 사람들도 형과 비슷하게 연행되었다고 추측함. 나중에 보니, 김○률(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9024)의 제삿날이 음력 7월 2일이어서 진술인의 형(제사일 음력 7월 3일)보다 하루 먼저 나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경찰에 잡혀간 사람들이 목화창고에 갇혔다는 소문이 퍼졌고, 김○률(김○률의 장남)이 목화창고에 계시는 자기 아버지에게 밥을 가져다줬다고 함. 1950년 음력 7월 6일경에 밥을 목화창고에 가져가니 김○률이 '앞으로는 (밥을) 가져오지 마라'라고 했다고 함. 그 후 밥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1950년 음력 7월 7일에 사람들을 동면의 사방재(사배고개)로 데려가서 총살했다고 함. 이 중 김○호라는 사람은 그의 형이 정○○ 의원과 친해서 동면 사방재로 가는 차에 타려는 사람을 내리게 했다고 함.
			김○○ (金○○, 남, 1942)	이웃 · 상북면 석계리 구소식마을 (덕대골 부락)	2022. 9. 30.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 센터 (6층) · 진술조서	전문 (가족,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문은 진술인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살았음. 진술인은 당시 9세였음. 강○문은 한국전쟁 말발 전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이 됐다고 들었음. 그 후 음력 1950년 7월 2일경 진술인의 아버지 김○률(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9024)과 황○룡(2다-2614)이 양산경찰서 상북지서의 소집을 받고 지서로 출두하였다고 함. 다음 날인 음력 7월 3일에 강○문과 김○한(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7829)이 상북지서의 소집을 받고 지서로 출두하였다고 함. 이후 소식을 들어보니 출두한 사람들이 옛 양산군청 옆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하여 진술인의 형(김○동,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9024 신청인)이 목화창고에 있는 아버지(김○률)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줬다고 함. 김○동이 목화창고에 두 번째 갔을 때인가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함. 그 후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동면 사방고개에서 총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진술인의 아버지 김○률, 김○한, 황○룡, 강○문의 집은 한 마을에서 다 붙어 있었고, 동네 자체가 6~7가구로 작았기 때문에, 비록 진술인이 어릴 때였지만 위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상북지서의 통보를 받고 출두하였고, 그 후 목화창고에서 구금되었다가 동면 사방고개에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15	7505	서○준 (徐○俊)	서○○ (徐○○, 여, 1397)	조카 · 양산면 북부동 수문골	2022. 10. 1. 양산시 양주로 신청인 서○연의 자택 · 진술조사서	목격 (구금) ·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군 북부동 337-10번지 수문골(옛, 양산군청 인근)에 거주하였음. 서○준은 '서○준'이라고 불렸으며 1950년 여름날 어머니가 '작은아버지(서○준)가 목화창고에 집혀 있단다. 밥을 가져다줘라.'라고 하여 진술인이 삼베 보자기에 썬 도시락을 가져다준 적이 있음. 구운 두부조림, 오이무침 등 3가지 반찬이 든 도시락이었으며, 목화창고 앞에 문지기가 두 명이 있었음.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했음. 창고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듯했음. 목화창고 밖을 서성이고 있으니 문지기가 왜 왔냐고 물어 '작은아버지 밥을 가져다주려고 왔다'라고 하니 이름을 물어서 '서○준'이라고 하였음. 문지기가 '서○준'을 불러서 서○준이 밥을 받으러 나오려고 하니 지키고 있던 사람이 서○준에게 들어가라고 하고는 자기한테 밥을 주고 가라고 하여 문지기에게 밥을 주고 돌아왔음. 다음날 다 먹은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왔음. 두 번 정도 밥을 가져다드렸음. 동네 사람들 말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는데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목화창고에 갇혀 있는 거라고 했음.
			서○○ (徐○○, 남, 1943)	9촌 · 상북면 좌삼리	2022. 10. 1. 양산시 양주로 154 신청인 서○연의 자택 · 진술조사서	전문 (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삼리는 달성서씨 집성촌으로 약 70가구가 살았음.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밤에 빨치산들이 많이 내려와서 마을주민들에게 곡식과 기축을 내놓으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함. 당시 빨치산 활동이 주민들에게 매우 위협이 되었으며, 국민보도연맹도 빨치산들로부터의 피해를 피하려고 가입한 것이라고 들었음. 서○준은 진술인의 집에서 30~50m 떨어져 살았고, 진술인의 9촌 아재임. 진술인의 바로 옆집에 살았고 서○준과는 앞뒷집으로 살았던 서○문(2다-7523)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돌아가셨다고 들었음. 서○준이 돌아가신 후 그 집 농사를 도와주다가 서○준의 부인이 해준 얘기를 주로 들었으며,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미을 사람들이 빨치산에 짐꾼으로 잡혀가기도 했는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안 끌려가도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함. 그래서 서○준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고, 서○준이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서○준의 부인이 남편을 위해 도장을 찍었다고 했음. 서○문의 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음. 후에 진술인이 성인이 되어 들어보니 서○준, 서○문이 동면 사밧재(사배고개), 남락고개에서 사살됐다고 했음. 서○준이 집에서 사라진 후 서○준의 어머니가 '우리 준이가 올 때가 됐는데...'라고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남.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16	7523	서○문 (徐○汶)	서○○ (徐○○, 여, 1938)	동생 · 상북면 좌삼리	2022. 11. 14.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발발 전후 빨치산들이 내려와 주민들을 못살게 굴어 마을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섰음. • 오빠 서○문은 뒷집에 사는 서○준(2다 -7505)과 같이 경비를 섰음. 그러다가 상북지서에서 오빠와 서○준을 불러 두 사람이 지서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음. 가서 오래 있지 않아 금방 돌아왔음. • 1950년 음력 7월 2일경 여느 때처럼 지서에 두 사람이 있는데 오빠가 집에 오지 않아서 부모님이 지서에 갔음. 지서 경찰은 자기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국민보도연맹으로 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함. • 그 후에 소문이 나길 사배고개에서 오빠를 비롯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총살했다고 함. 제사는 오빠가 집을 나간 날짜인 음력 7월 2일에 지남.
17	7522	차○달 (車○達)	강○○ (姜○○, 남, 1955)	5촌	2022. 9. 28. 양산시청 심리 상담실 (2층)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차○달의 사촌 동생 차○○의 아들이고, 차○○, 차○○(차○○의 오빠), 차○○(차○달의 여동생)은 만나기만 하면 차○달의 이야기를 많이 했음. 진술인이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차○달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음. • 한국전쟁 발발 얼마 후에 해 질 무렵, 집에 젊은 사람들 몇이 와서 차○달에게 잠깐 보자고 했고, 차○달이 '잠깐 갔다 올게'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함. 잠깐 나가는 거라 신발도 하늘하게 신고 나갔다고 함. • 그 후 소식이 없어 사촌인 차○○은 차○달의 행방을 수소문하였고, 차○달이 어느 참고에 갇혀있는 걸 알게 됐다고 함. 당시에 차○○과 진술인의 어머니(차○○)는 같은 집에 살았는데, 차○○이 차○달을 면회하러 간다고 하여 어머니(차○○)가 먹을 것을 싸서 차○○ 편에 보냈다고 함. • 차○○이 차○달을 면회하러 가니 참고 안에 사람이 여럿 있었고, 참고 앞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참고 안에 있는 사람은 잠깐 나올 수 있었다고 함. 차○○이 차○달에게 도망가라고 하니 차○달은 '내일 아침 되면 다 보내준단다. 지금 가면 내가 진짜 죄인 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함. • 다음날 다시 가보니 참고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함. 그 후에 사람들의 행방은 알지 못함. 그 무렵 사바재(사배고개)에서 총소리가 여러 번 났다는 소문이 났다고 함. • 가족들이 모이면 차○○은 차○○에게 그때 차○달을 왜 더 적극적으로 빼내지 못 했냐고 하소연했음. 그러자 차○○이 위와 같은 상황을 얘기해 주었음.
			차○○ (車○○, 여, 1949)	5촌 · 상북면 소토리 감결 부락	2022. 11.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1길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차○달의 4촌인 차○○의 딸로서 차○달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임. • 5촌 이재 차○달은 국민보도연맹 관련으로 누군가에게 잡혀서 참고에 갇혔다고 함. • 아버지(차○○)가 달밤에 참고에 찾아가 차○달을 불러내 숨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함. 아버지가 '내일이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더라. 지금 도망가자.'라고 하였고, 차○달은 '내일 이면 보내준단다. 여태 내가 여기서 고생한 시간이 있는데 그냥 나가지는 않겠다.'라고 했다고 함. • 그다음 날 참고에 있던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가서 총살당했다고 함.

〈붙임(표)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피해 관련 신청인 및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양산면							
1	7514	박○옥 (朴○鉉)	김○○ (金○○, 남, 1927)	이웃 · 양산면 명곡리 양지 마을	2009. 7. 6. 양산시 명곡동 참고인 주택 · 진술조서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치산들이 젊은 사람들을 산으로 끌고 올라갔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자수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음. •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여 목화창고에 가뒀다고 함. 이후 목화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경찰이 세워놓고 총살했다고 함. • 명곡리 양지마을에서 박○옥이 국민보도연맹으로 끌려가 죽었음.
동면							
2	3588	김○철 (金○喆)					
	7506	박○표 (朴○杓)	안○○ (安○○, 남, 1927)	이웃 · 양산군 동면 석산리 월리 마을	2009. 7. 7. 양산시 동면 참고인 주택 · 진술조서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 전후, 동면 석산리에 좌익활동가가 몇 명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마을 지주집 사위인 이○○이었음. • 인민군이 충청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민군이 영천까지 내려왔을 즈음 양산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목화창고에 구금하였다고 들었음. 국민보도연맹원 가족들이 목화창고에 밥을 가져다주곤 했음. • 석산리에서 총 41명이 국민보도연맹으로 끌려가 죽었음. 월리마을에서 진술인의 종형 안○도(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최○식, 김○복, 박○학, 윤○주, 김○환, 홍○희, 지당골에서는 김○철, 김○창, 김○원, 김○복, 김○관, 박○포, 골말에서는 박○석, 이○우, 이○진, 김○화, 이○학, 홍○희 등이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되었음. • 당시 양산에 백골부대와 CIC가 주둔하고 있었음. CIC, 백골부대, 경찰 모두 빨치산을 소통하는 일을 했고, 양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죽인 것은 경찰임.
	7508	김○환 (金○煥)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3	7506	박○표 (朴○杓)	김○○ (金○○, 남, 1923)	이웃 · 동면 석산리 지당 마을	2009. 5. 12. 양산시 동면 석산리 참고인 자택 · 진술조사	목격 (구금) ·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당시 동산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음. 석산리에는 지당골, 곡리, 월리, 계석 등 4개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면사무소와 동면지 서는 내송리에 있었음. 석산리에 대지주 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 조카 이○○과 사위 이○○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죄악활동을 했었음. 동생 김○정(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은 빨치산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간 적이 있고 그때 때문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권유받았음. 빨치산에게 쌀을 준 것 등 모든 것을 무마시켜준다고 하면서 가입하라고 했음. 가입비 천 원만 내면 가입이 되었음. 인민군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낙동강을 건넌다고 할 때쯤(7월 말경) 국민보도연맹원들에게 삽 들고 일하러 나오라고 하여 사람들을 목화창고에 가두었음. 진술인은 밥을 갖다주려 목화창고에 가보았음. 예비검속 전 진술인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국민보도연맹원의 활동 정도에 따라 갑, 을, 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실제 죄악활동한 사람은 갑으로 분류되었는데 예비 검속할 때 갑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음. 석산리에서만 거의 40명이 가입해서 희생되었음. 석산리 지당골에서는 김○덕, 김○원, 김○구, 김○복, 우○주, 김○관, 박○포, 홍○현 등이, 골말에서는 김○찬, 김○오, 박○석, 이○우, 유○줄, 황○천, 이○진, 김○영, 김○영, 김○화, 이○학, 박○철, 홍○희, 최○원, 홍○희 등이, 월리에서는 이○태, 김○수, 홍○희, 이○위, 김○영, 윤○주, 최○식, 김○복, 박○학, 안○도, 유○달, 김○환, 고○진 등이 희생되었음. 그때 젊은 남자들이 다 끌려가 죽는 바람에 석산리에서는 모내기할 때 줄 잡을 사람도 없었음. 1950년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0일)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끌려 나가면서 누군가가 “이 놈들이 우릴 죽이려 끌고 간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인근 사람들이 듣고 날짜를 유족들에게 알려주었음. 유족 중 전씨가 시신을 찾아와 묘를 셨는데 그걸 알고 경찰이 와서 두들겨 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찾으려 가지 못했음.
	7508	김○환 (金○煥)					
	7510	유○줄 (劉○茁)					
	7519	유○달 (劉○達)					
	7526	김○찬 (金○贊)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4	7508	김○환 (金○煥)	박○○ (朴○○, 남, 1942)	이웃 · 동면 석산리 월리 마을	2009. 7. 15. · 전화약식 조서	전문 (이웃,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의 형 박○학(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의 처가 석산리 골말부락 홍씨집 안 출신인데, 그쪽 집안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 (홍○희, 홍○희)되어 형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함. 형은 전쟁 발발 이후 경찰에게 연행되어 양산 중학교 가는 길에 있는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동면 사배재(사배고개)에서 희생되었음. 석산리 월리에서 고○진, 김○영, 김○복, 김○환, 안○도, 유○달, 윤○주, 이○우, 이○희, 이○태, 최○식, 홍○희 등이 골말에서 홍○희, 홍○희 등이 함께 희생되었음. 형 박○○이 1960년 유족회 활동을 하였음.
	7519	유○달 (劉○達)					
5	7510	유○줄 (劉○茁)	홍○○ (洪○○, 남, 1943)	이웃 · 동면 석산리 곡리 마을	2009. 7. 14. · 전화약식 조서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의 아버지 홍○희(1기 위험회 미신청 희생 확인)는 전쟁 발발 이후 동네 차도 공사를 있다고 하여 소집 통보를 받고 삼을 들고 출두 하였으며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음력 7월 3일(양력 8월 16일)에 남락고개에서 희생되었음. 면에서인지 어디에서인지 국민보도연맹 모집책들이 마을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보도연맹원 명부를 만들어서 가입시켰다고 들었음. 석산리에서 50명이 넘게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고 골말부락에서 희생된 사람 중 기억 나는 사람은 김○영, 김○찬, 김○오, 김○영, 박○철, 박○석, 유○줄, 이○우, 이○진, 홍○희 등임. 진술인의 큰 누나(당시 중학생)가 학교 가는 길목에 목화창고에 밥을 넣어줬는데 음력 7월 4일에 가보니 목화창고에 아무도 없었다고 함. 수소문하니 지난밤에 사람들을 다 싣고 나갔다고 하여 제사를 음력 7월 3일에 지냄. 유골 발굴할 때 진술인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 참여하였으며, 양산 유족들 수백 명이 며칠 동안 사배고개에서 유골을 발굴했음. 유골이 시골의 작은 집채만큼 쌓였음. 유골을 화장하고 재를 모아서 춘추원에서 공동으로 매장하고 비석을 세웠음. 5·16군사쿠데타 후에 봉분과 비석을 모두 없애버렸음.
	7526	김○찬 (金○贊)					
	7510	유○줄 (劉○茁)	이○○ (李○○, 남, 1952)	이웃 · 동면 석산리 곡리 마을	2009. 7. 13. · 전화약식 조서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의 아버지 이○우(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가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되었음. 같은 마을 유○상의 아버지(유○줄)도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되었음. 아버지가 집에서 나간 날이 음력 7월 2일이어서 그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상복면							
6	5761	강○문 (姜○文)	김○○ (金○○, 남, 1936)	이웃 · 상복면 석계리 덕대골부락	2008. 4. 29. 부산 금정구청 4층 · 진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의 아버지 김○률(1기 진실화해위원회 희생 확인, 다-9024)은 1950년 7월경 상복지 서의 소집에 응하여 출두하였으며 이후 양산경찰서로 이송되어 목화창고에 구금되었다가 8월 16일경 행방불명되었음. • 동네 사람이 도장을 받으려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가입하라고 권유했으나 아버지가 도장을 안 찍어주고 지서에서 불러도 안가다가 나중에 결국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함. • 맨 먼저 아버지와 황○룡이 잡혀갔고, 하루 이틀 사이로 동네 어른인 김○한, 강○문 등 덕대골부락에서 총 4명이 잡혀갔음. 처음에는 상복지서로 출두하였고 그 후 양산경찰서로 이송되었음. • 그 후 양산경찰서 부근 목화창고에 구금되었음. 양산경찰서와 목화창고는 약 50m 떨어져 있고 목화창고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넓이는 약 30~40평 정도 되고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겉은 페인트칠을 한 창고임. 옆면은 '이다'(합판)를 대서 만들었고, 지붕은 힘석을 씌웠음. • 아버지가 밥을 드리러 목화창고에 직접 가보니까 창고 문도 열려 있고, 사람들이 창고 안과 밖에 사람이 다닐 수 있었음. 밥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이 직접 창고 밖으로 나가서 밥을 받아먹었음. •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출두한 복장 그대로 삼베옷을 입고 있었음. 가족들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음. • 아버지가 잡혀간 날부터 목화창고에서 최종적으로 없어진 날까지 기간이 약 15~20일 정도 걸렸음. 사망일시는 1950년 음력 7월 3일(양력 8월 16일) 새벽이며, 사망 장소는 동래와 양산의 경계에 있는 사배고개로 알고 있음. 7월 3일 목화창고에 가보니까 창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음. • 진술인의 동생이 1960년대에 경찰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가 신원조회 때문에 불합격된 적이 있음. 연좌제가 없어진 후에 시험을 쳐서 합격 하였음.
			김○○ (한자 불상, 남, 1926)	이웃 · 상복면 신전리	2009. 5. 8. · 전화약식 조사	전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률, 황○룡, 강○문이 국민보도연맹 때문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음. • 1950년 음력 7월 4일경(양력 8월 17일경) 상복지 서 경찰 2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한다고 하며 김○률을 연행해 갔음. • 연행 후에 돌아오지 않아서 뒤늦게 소식을 들어보니 부산과 양산 사이에 산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했다고 하는데 그때 죽었을 것으로 생각함.
7	7522	차○달 (車○達)	이○○ (李○○, 성별 불상, 1925)	이웃	2009. 5. 14. 양산시 상복면 소토리 감결마을 회관 · 진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빨차산이 와서 차○달 외 몇 명의 이름을 적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경찰에 잡혀가 죽었다고 들었음. 차○달은 당시 결혼해서 차○○이라는 어린 딸이 있었음. • 끌려간 사람들은 양산 면 창고에 갇혀있었다고 함. 잡혀간 사람들 어머니들이 매일 밥을 해서 며칠간 날랐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있었다고 한다.

〈붙임(표) 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성명 (생년) (1934)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1	정○○	2009. 5. 11. 양산시 중부동 양산향토사 연구회 사무실 · 진술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리에는 구장이던 박○○가 국민보도연맹 가입하라고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 찍으라고 권유하는 것을 진술인이 직접 목격하였음. 어곡리에서는 학동 오○만이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되었고 장○수, 장○욱 두 부자도 당시에 희생되었음. 좌익활동 하던 사람 중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정쩡하게 있던 사람들이 희생된 것임. 양산은 음력 7월 7일 전후 반장을 통해 훈련에 참여하라고 하며 소집했다고 함. 읍·면사무소에서 소집해서 목화창고로 이송했다고 함.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사찰계 형사들이 가서 연행해 왔다고 함. 연행된 사람들은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에 갇혀있었음. 유치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A급들이고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은 B, C급이었음. 희생 장소는 교리 춘추원 뒷산, 여락리 남락고개, 사배재 등으로 알고 있음. 양산에 CIC가 두 명인가 파견되어 양산경찰서 옆 병원 건물 2층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양산경찰서 사찰계와 협동으로 국민보도연맹 학살에 관여했다고 들었음. 당시 양산경찰서 사찰계 형사는 조○○라는 사람이었음. 이 이야기는 1948년부터 양산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하던 유○○에게 들었음.
2	이○○	2009. 5. 27. 양산시 북정동 참고인 자택 · 진술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은 당시 양산면 호계리(호계동) 양지마을에 거주하였음. 빨치산들에게 쌀이나 먹을거리를 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음. 자진 신고한 사람들에게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다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호계리에서 김○준, 김○준, 김○준, 박○문, 황○조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어느 날 밤 진술인이 논에 물을 대려 집 뒤편으로 갔는데 경찰이 황○조와 황○조를 끌고 앉음. 경찰이 진술인도 따라오라고 하여 같이 가다가 경찰이 김○준을 잡으러 가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리 밑에 대기하라고 하였음. 김○준은 잡지 못하였고 진술인과 황○조는 경찰서 밖에 있고 황○조는 안에서 취조당하였음.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음.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양산경찰서 옆 군 목화창고에 구금되어 있었음. 당시 면마다 청년회가 조직되어 경비를 서고 있었음. 어느 날 청년회 사람들이 양산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삽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음. 당시 진술인은 양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청년회 사람들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죽인 곳에서 구덩이를 판 것 같음. 며칠 후 진술인이 경비를 설 차례가 되었음. 양산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대라도' 건물 2층에 청년회 사무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경비를 서는데 새벽에 양산경찰서 쪽에서 사람이 가득한 트럭 몇 대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음. 트럭에는 총을 든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고 아침에는 빈 트럭이 돌아왔음. 그 후로 목화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 후인 1950년 8월 30일에 진술인은 입대하였음.
3	김○○	2009. 5. 28.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다빈치 커피숍 · 진술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당시 물금면 서남부락에 거주하고 있었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야산대가 내려와서 콩, 보리쌀이나 담배 같은 것을 가져가곤 했음. 그러면 낮에는 경찰이 와서 야산대에게 물건을 준 사람을 두들겨 패곤 했음. 경찰은 사람을 허공에 매달아 놓고 코에 물을 뿜는 식으로 고문을 했음. 경찰에 한 번이라도 불려갔다 온 사람들은 겁을 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음. 가입비가 1월 30전 정도였고 지금(2009년 기준) 돈으로는 만 오천 원 정도의 가치임. 가입비를 내고 도장을 찍으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음. 서남부락에서 국민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은 강○수, 흥○희, 우○주, 오○환, 이○우, 이○우의 형, 전○욱, 이○권의 아버지 등임. 강○수는 부산에 피신해 있다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국민보도연맹원들은 가끔 집합 연습을 했음. 지서에서 일제 강점기 때 사용하던 사이렌을 몇 번 울리면 논밭에서 일하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지서 앞마당에 뛰어갔음. 두 번 정도 그렇게 소집했다가 풀어줬는데 세 번째 소집했을 때 트럭에 다 싣고 양산 목화창고에 가두었음.

연번	성명 (생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남부락 사람들은 잡혀간 다음 날 새벽에 사배고개에서 다섯 명, 세 명씩 손을 묶어 세워놓고 총살했다고 함. 부산 금정구 팔송 아래 야산에서도 구덩이를 파고 총살했다고 함. 총살에 칼빈 총과 O3 기관총을 사용했다고 함. 마을 사람 전용호는 자기 아버지 전○○을 살리기 위해 소 판 돈으로 양산경찰서 조○○에게 청탁하였다고 함. 하지만 전○○은 죽고 전○○이라는 사람이 대신 풀려났다고 함. 이는 통신계에 있던 경찰 양○○에게도 들은 내용임. 사망 장소 정확히 모르고, 당시 경찰과 전투대원들이 입산 금지를 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을 수 없었음. 양산경찰서 경찰들이 총을 쌤으며 총 쏘고 온 경찰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충격을 받아 보름간은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고 함.
4	차○○ (1928)	2007. 8. 23. 부산시 북구 만덕 3동 신청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당시 결혼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 전 물금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결혼 후 휴직상태였음. 진술인의 오빠 차○○과 남동생 차○○은 1950년 7월 하순 무렵 여행되어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동면 팔송고개 인근에서 살해되었음. 좌익활동을 하던 큰오빠 차○○ 때문에 동생 차○○과 진술인까지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음. 진술인은 결혼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50년 7월 하순 무렵, 오빠 차○○과 남동생 차○○이 예비검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찾아왔음. 새벽 2시경 집으로 찾아온 지서 경찰 두 명에 의해 아이와 함께 물금지서로 여행되었는데 그제야 진술인이 양산군 국민보도연맹 물금지부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당시 진술인의 집을 지서 경찰 한 명이 늘 감시하고 있어서 진술인이 친정에 왔다는 정보가 바로 들어간 것 같음. 지서에 잡혀간 후, 경찰들이 잠도 안 재우고 빨치산 활동을 했는지 또 배후 조직을 불라고 하며 고문했음. 그리고 나서 물금국민학교 교실로 옮겨져서는 참나무 목도 5개가 부러지도록 맞았음. 그때 진술인을 고문한 사람은 물금지서 직원들이 아니라 CIC 대원들이었음. 진술인을 고문한 CIC대원들은 5~6명 정도 되었음. 물금국민학교에서 하루 낮 동안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쓰리쿼터 트럭에 실려서 양산 CIC 사무실로 연행되었음. 당시 양산CIC 사무실은 양산군 통도병원 이었음. CIC 양산 사무실에 갔다가 바로 양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음.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약 20일 정도 있었고 그 안에서 오빠 차○○과 남동생 차○○을 보았음. CIC 대원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은 없었음. CIC 양산본부에서 본 CIC 부관은 '고○○'이었고 계급은 중위였음. 유치장에는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제일 안쪽 방은 여자방이었고 여자들이 5~6명이 있었음. 그 뒤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자들만 따로 목욕탕에 수용했음.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죽었는지 유치장에 임자 없는 신발이 2가마가 넘고 보릿짚 모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음. 일주일 정도 후 오후 4시경 오빠와 동생이 손을 뒤로해서 철사줄에 묶여서 수용소로 갔음. 수용소는 양산군 내에 있는 창고라고 알고 있음. 며칠 뒤 새벽 4시경 '차○○, 차○○, 차○○'를 불렀음. 오빠와 동생은 이미 나간 상태였고, 진술인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목욕탕 나무 바닥을 붙잡고 힘을 다해서 쥐고 있었음. 그 사이에 진술인의 친척 권봉석이 밖에서 '양산 군민들아, 우리는 죽으려 간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음. 밖이 어수선하여 진술인을 더 이상 끌어내지 못하였음. 약 일주일 후 8·15 후에 그만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진술인은 새벽 2시경에 출감하였음. 출감 후 다시 CIC 사무실에 갔고, CIC에서는 진술인에게 빨치산 정보를 달라고 하며 여자들을 잔인하게 전기고문 하는 취조실을 보여주었음. CIC 대원이 좌익조직이나 좌익활동가 이름을 대라고 해서 양산군 교리의 좌익활동가 유○○의 사촌(이름 미상)이름을 썼음. 그 사람이 부산의 조선견적회사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썼더니 고○○ 부관이 진술인을 쓰리쿼터에 태우고 부산 견적회사에 사람을 잡으려 갔음. 사람은 결국 찾지 못했고 다음 날 양산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하며 도망 나왔음. 그 후 CIC는 진술인의 친정에 찾아와서 진술인을 찾아내라고 닦달했다고 함. 오빠와 남동생은 양산군 동면의 팔송고개 언덕에서 죽었음. 팔송고개 인근 주민들이 며칠 동안 총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잤다는 소문이 났음. 진술인이 나중에 교사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복직이 안 되었음.

연번	성명 (생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5	장○○ (1938)	2008. 12. 10. 부산 남구청 5층 체력단련실 ·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의 가족은 전쟁 발발 전 양산군 물금면 어곡리 311번지에 살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 진술인과 아버지만 양산읍 북부동으로 이사 와서 살았음. 진술인의 아버지 장○수, 형 장○육은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되어 양산에서 희생됨. • 아버지 장○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당시 양산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음. 양산경찰서 조형사가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왔었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집에 장독을 깨는 일이 있었음.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서 조형사가 아버지를 불순분자로 몰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 것 같음. 형은 아버지와 같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아버지가 국민보도연맹 간부를 하며 국민보도연맹 사무실에서 사무 일을 보았고, 양산경찰서 인근 목화창고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교육하였음. 국민보도연맹 사무실은 구 양산시장 옆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음. • 1950년 여름경 아버지와 형이 목화창고에 갔는데 형은 목화창고에서 잠을 잤고, 아버지는 아침에 목화창고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곤 했음. 그 후 아버지와 형이 1950년 7월~8월경 양산군 물금면 교리 춘추원 뒤 야산에서 총살당했음. 동면 남락재(남락고개)에서도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총살을 당했다고 함.
6	양○○ (1943)	2009. 5. 14.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신청인 자택 ·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당시 양산군 물금면 범어리 동중부락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양윤식이 1950년 8월경 양산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음. • 당시 마을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며 가입비도 있었다고 함. 가입비가 없어서 가입 못 한 사람들도 있었음. • 국민보도연맹 가입 후 물금장터나 범어국민학교에 국민보도연맹원을 집합시켜 조사했음. 아버지도 조사받았고 진술인도 아버지를 따라가서 옆에서 놀다가 같이 돌아오기도 하였음.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장날에 물금장터에서였음. 물금장터에서는 며칠 동안 울타리를 치고 명석을 펴놓고 노숙하면서 조사를 받았음. • 아버지와 같이 조사를 받은 흥○○, 안○○는 풀려났는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음. 아버지를 찾다가 (범어국민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하였음. 뒤쪽으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트럭에 실려 가고 있었음. 트럭에 실려 가는 사람들 가족들이 울면서 트럭을 쫓아갔음. • 국민보도연맹원들은 목화창고에 갇혀있었다고 함. 그 후 읍력 7월 7일 새벽에 대룡동 뒷산에서 학살되었음. 사송리 사배고개와 같은 곳임. • 양산경찰서 트럭을 운전하는 마을 사람 양성구가 말하길, 그의 형이 국민보도연맹으로 죽었는데 자기 형은 트럭을 양성구가 운전했다고 함. 트럭에 진술인의 아버지도 같이 있었다고 했음. 그 외에도 남락고개 연못에서도 국민보도연맹을 죽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신을 발굴해보니까 이미 시신이 다 썩어있었음. 또 녹동 부락에서도 죽었다고 함. 사배고개에 진술인이 가보았는데 2m 정도 너비의 구덩이에서 유골이 네다섯 구나 나왔음. • 1960년 4·19혁명 이후 유골 발굴에 참여하였음. 시신 발굴할 때 양산군수와 양산경찰서장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었음. 유가족들이 유골을 들고 양산군수를 때려죽인다는 소동이 있었음. 양산경찰서에서 화장용 기름을 제공해주어 유해를 관 다섯 개에 나누어 넣고 춘추원에 매장한 후 비석을 세웠음.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훼손시켰음.

〈붙임(표) 5〉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찰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성명 (당시 나이)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1	양○○ (28세)	원동지서 경찰	2009. 5. 23. (전화약식조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보도연맹은 前 좌익활동가, 농민조합 등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옳게 지도하기 위한 단체임. 당시 면장, 군수 등도 가입을 권유하였음. 읍면 단위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였는데 원동면 지역은 산악지대로 빨치산 관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보도연맹원도 많았음. 6.25 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경찰, 공무원 색출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처단하게 되었음. 국민보도연맹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것은 사찰계 형사로 당시 양산경찰서 사찰계 형사 조○○ 등은 이미 사망하였음.
2	문○○ (25세)	양산경찰서 경찰	2009. 7. 2. (전화약식조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전부터 김종원 부대가 양산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해 주둔하였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주둔하였음. 경찰이 빨치산을 잡으면 김○○ 부대에서 인계하여 처리하였음. 김○○ 부대로 인계되면 대부분 죽었을 것임. 전쟁 발발 이후 좌익경력자를 중심으로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였음.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음. 전쟁 중에 양산 국민보도연맹원 수십 명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3	오○○ (31세)	웅상지서 주임	2009. 7. 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325-1 (진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방 이후 경찰에 입직하여 몇 개월 후에 양산경찰서 유치장 간수로 근무하던 중, 양산경찰서장이 진술인의 출신을 듣고는 경사로 진급시켜주었음. 경사로 진급한 후 1947년~1948년경 동면지서 주임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1949년경 웅상지서 주임으로 근무하였음. 웅상지서에서 약 3년 8개월가량 근무하였음. 진술인이 웅상으로 간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이 만들어졌음. 국민보도연맹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부락민을 교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것임. 각 면마다 국민보도연맹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 면마다 빨치산 두목이 하나씩 있어 그 사람들이 국민보도연맹 간부를 맡았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각 면의 사람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키도록 했음. 자진해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없음. 국민보도연맹원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했는데 명부에는 국민보도연맹원 이름, 마을,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각각 도장이 찍혀있었음. 명부는 국민보도연맹 자체에서 관리했음. 웅상에 육군 대위가 한 사람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민보도연맹원을 관리, 감독하였음. 어느 날 양산경찰서 사찰 주임에게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해서 보내라는 전화가 왔음. 진술인이 '서창(웅상) 사람들 하나라도 끌고 가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라고 소리쳤음. 당시 웅상지서 관내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빨치산으로 몰아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음. 진술인은 전 서장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했고, 그 일 때문에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음. 진술인은 김종원과 일본군대에서 지난 친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으나, 당시 웅상을 제외한 나머지 양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범어사 뒤 골짜기에서 총살되었음. 김종원이 다 죽었다고 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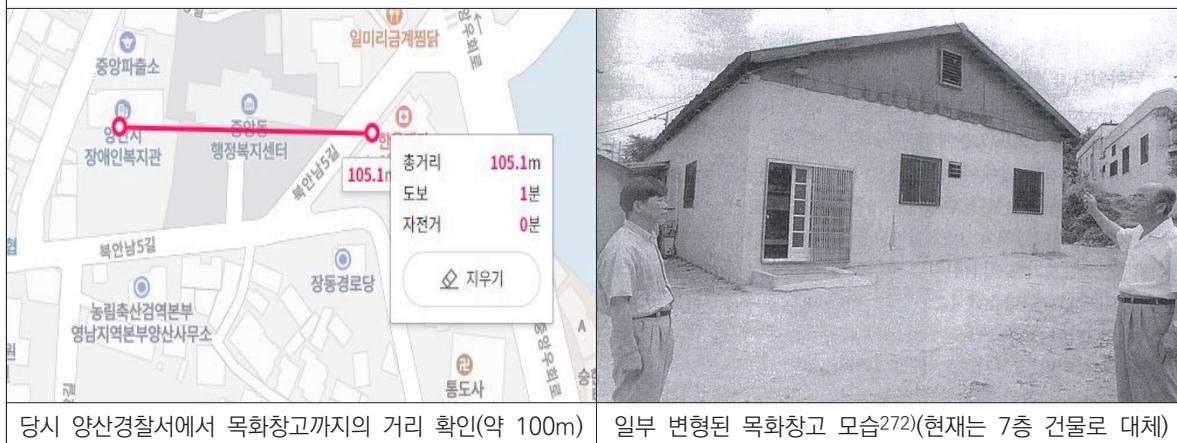
〈붙임(그림) 6〉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구금 장소와 희생 장소

○ 구금 장소 : 양산경찰서, 목화창고



※ 1950년 당시 양산경찰서와 목화창고의 위치

- 양산경찰서 : 양산시 북부동 331-2 (현,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 목화창고 : 양산시 북부동 318-3 (현, 세종빌딩)



272)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2002, 131쪽.

○ 희생 장소 : 동면 사배고개, 남락고개



- 사배고개: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56 등지 (북위 $35^{\circ}17'55.8668''$ 동경 $129^{\circ}4'43.7034''$)
 - 남락고개: 양산시 동면 여락리 304-10 등지 (북위 $35^{\circ}18'25.8965''$ 동경 $129^{\circ}5'17.2859''$)

○ 구금장소에서 희생장소까지의 거리

